

#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2015. 11. 12.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b>제2장 발명진흥법 체계의 현황</b> .....	5
제1절 발명진흥법의 의의 및 현황 .....	5
제2절 발명진흥법의 문제점 .....	21
제3절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의 기준 .....	24
<b>제3장 해외 주요국의 관련 입법현황</b> .....	35
제1절 일본 .....	35
제2절 미국 .....	57
제3절 유럽 .....	84
제4절 시사점 .....	100
<b>제4장 발명진흥법 법체계 논의 분석</b> .....	102
제1절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 관련 법체계 논의 .....	102
제2절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법체계 논의 .....	127
제3절 산업재산권 서비스 관련 법체계 논의 .....	156
제4절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련 법체계 논의 .....	175
제5절 소결 .....	194
<b>제5장 발명진흥법 법체계의 쟁점별 해결 기준 설정</b> .....	195
제1절 사업근거법으로서 발명진흥법 존재의 당위성 문제 .....	195

제2절 발명진흥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법률 명칭 및 목적의 개선 문제 .....	204
제3절 지식재산 기본법과의 조화 문제 .....	219
제4절 발명진흥법 구성내용의 분류기준에 관한 문제 .....	229
제5절 분법화 요인에 대한 대응 .....	235
<b>제6장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방안 .....</b>	<b>241</b>
제1절 현행 발명진흥법 체계의 개편 방안 .....	241
제2절 분법화에 대한 대응 방안 .....	269
<b>제7장 결론 .....</b>	<b>273</b>
참고문헌 .....	275
[붙임1] 발명진흥법 (법률 제13309호, 2015. 5. 18., 일부개정) .....	279
[붙임2]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304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발명진흥법」은 1994년 국민의 발명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발명진흥을 통해 국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존의 발명보호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대상이 되는 산업의 특성상 첨단 기술에 관한 발명 관련 산업의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따라 잦은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발명진흥법」이 따라가면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발명진흥법」의 본래 입법의도 및 목적과 실제 규정의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법체계 역시 정합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발명진흥법」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발명에 관한 국가의 시책 등에서부터 개별 사업의 근거 까지 그 범위의 다양성이 상당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각 규정된 사항에 관련된 이해관계 역시 매우 첨예하게 존재하여 「발명진흥법」이 갖는 중요도는 단순한 법률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고 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발명진흥법」의 중요성 및 시장에서의 비중이 늘어갈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발명진흥법」의 체계에 관한 다양한 변경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분법을 통한 개별 사업법화가 그것인데, 발명교육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 분법에 대한 논의가 종종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법 등과 같이 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현재 「발명진흥법」의 법체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이유로 인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미시적인 법체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발명진흥법」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전반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도 법체계에 대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 분야의 시장 외연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

1) 최근, 발명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발명교육 지원법안’이 2014년 11월 21일 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에 의하여 발의된 바 있다.

발명진흥법」이 아우르고 있는 여러 사업의 확장 역시 예상된다. 하지만 매년 개정을 통한 소위 입법적 해결만을 수단으로 한다면 「발명진흥법」이 갖는 법률로서의 가치가 다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의 「발명진흥법」이 만들어온 현실을 고려하고 향후 이의 확장을 고려한, 법적 정합성과 개방성 등을 갖춘 법체계로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행 「발명진흥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발명진흥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최근의 논의를 조사 및 정리하여, 현재의 법체계에서 문제로 작용하는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를 위한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확보된 정비 기준을 바탕으로 현행 「발명진흥법」의 법체계를 정비할 방안으로, 전체적 법체계의 정비방안과 분법이 이루어질 경우 대응방안으로서의 법체계 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및 향후 추진될 입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가 단순히 강학상의 논의에 그치는 것을 지양하고, 「발명진흥법」이 각 사업 근거법으로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사업 분야에서의 「발명진흥법」 관련 논의 및 「발명진흥법」 정비를 위한 주요 쟁점 등을 학계 및 실무 분야 전문가와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회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발명진흥법 정비 관련 전문가회의 추진 경과

구분	일자	참석대상	논의내용
제1차	2015. 05. 20.	실무분야 전문가	주요 사업 분야별 현황 및 쟁점
제2차	2015. 06. 04.	실무입법분야 전문가	해외 주요국 법체계 현황 검토
제3차	2015. 06. 08.	학계·실무·입법분야 전문가	현행 법체계상 문제 및 주요 쟁점의 개선방향 검토
제4차	2015. 10. 06.	입법분야 전문가	법체계 정비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제5차	2015. 10. 26.	학계·입법분야 전문가	법령외 소관사항 등의 처리문제 검토
제6차	2015. 11. 04.	학계·실무·입법분야 전문가	개선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의견수렴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발명진흥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최근의 논의 등을 검토하고 일반적인 법체계의 기본기준을 고려하여 총론적 차원에서 「발명진흥법」의 법체계 정비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일본, 미국 및 유럽 주요국 등을 대상으로 우리 「발명진흥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현행 「발명진흥법」의 주요한 내용인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하여 법체계 현황 및 관련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발명진흥법」의 법체계 정비 시 관련 사업 및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를 위한 각 쟁점 별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비에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근거법으로서 「발명진흥법」 존재의 당위성 문제, 「발명진흥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법률명칭 및 목적의 개선 문제, 「지식재산 기본법」과의 조화 문제, 「발명진흥법」 구성내용의 분류기준에 관한 문제, 분법화 요인에 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앞서 정립된 기준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발명진흥법」 법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발명진흥법」의 각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며, 법체계의 관점에서만 이를 다룬다.

## 제2장 발명진흥법 체계의 현황

### 제1절 발명진흥법의 의의 및 현황

#### I. 발명진흥법의 입법

발명품의 생산·수출·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1958년 제정되었던 발명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사문(死文化)화된 상태에 있었다. 이에 국민의 발명분위기를 진작시키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발명진흥을 통한 국내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994년 발명보호법을 폐지하고 「발명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다.

1958년 제정된 발명보호법은 총 4개의 장,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1조에서 발명품의 생산, 수출 및 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발명을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한국인의 발명과 고안’이라 정의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발명보호위원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조에서 발명에 관한 국가의 중요시책에 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발명보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며, 제4조에서 발명보호위원은 학계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한다고 하여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발명품의 장려에 관한 것으로, 제5조에서 우수한 발명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며, 제6조에서 우수한 발명품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하여는 그 생산에 있어 영업세, 소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에서 어느 발명품이 외국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국내에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발명가 보호에 관한 것을 규정하며 제8조에서 우수한 발명품의 생산 및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자재, 금융 등 발명가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발명품과 동일한 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발명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산제품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내 발명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었다.<sup>2)</sup>

1994년 발명보호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된 「발명진흥법」은 총 8개의 장 및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입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발명진흥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발명진흥연차대회의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장 발명의 진흥은 총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에서는 발명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수행, 학생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2절 직무발명의 촉진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공동발명의 승계,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 비밀유지의무, 직무발명의 출원유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공급의 효율화에서는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특허기술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에서는 선형기술조사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특허관리비용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에서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금융기관 등의 우선 자금지원,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의 운영, 시제품제작 지원, 각종 규격의 개정요청,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지식재산권 연구소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한국 발명진흥회의 설립 및 사업, 기금의 조성·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특허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8장은 벌칙 규정으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과태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발전되어 온 「발명진흥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근대 산업화-공업화를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Top Down & Push Drive’ 방식<sup>3)</sup>으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발명진흥법」은 산업화-공업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김시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각주 223.  
 3) 이러한 정책방식에 관하여 최근에는 비판적 견해도 많지만, 당시 척박한 산업환경에서 한정된 공적 재화를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 II. 발명진흥법의 개정 연혁<sup>4)</sup>

표 2 발명진흥법 개정 연혁

	법률 번호	개정일	개정유형	주요 내용
1	법률 제4977호	1995.11.22	타법개정	공업발전법 개정
2	법률 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행정절차법 시행
3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4	법률 제5790호	1999.2.5	일부개정	“발명의 날” 지정,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한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결산서의 승인제도 폐지
5	법률 제5825호	1999.2.8	타법개정	산업발전법 개정
6	법률 제5577호	1998.9.23	타법개정	실용신안법 개정
7	법률 제6024호	1999.9.7	타법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	법률 제6422호	2001.2.3	일부개정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체제 구축,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산업재산권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정비 등
9	법률 제6590호	2001.12.31	타법개정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10	법률 제6752호	2002.12.5	일부개정	발명평가 전문인력 양성, 평가기법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등
11	법률 제7120호	2004.1.29	타법개정	유아교육법 개정
12	법률 제7289호	2004.12.31	타법개정	의장법 개정
13	법률 제7796호	2005.12.29	타법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
14	법률 제7869호	2006.3.3	일부개정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 명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강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정비 등
15	법률 제8357호	2007.4.11	전부개정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4) 동 연구가 「발명진흥법」의 법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개정 연혁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11일 전면개정 이후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자세한 개정 연혁에 관하여는 김시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184-221면 참조.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 정리
16	법률 제8601호	2007.8.3	일부개정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17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18	법률 제9369호	2009.1.30	타법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19	법률 제9401호	2009.1.30	타법개정	국유재산법 개정
20	법률 제9509호	2009.3.18	일부개정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21	법률 제9685호	2009.5.21	타법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2	법률 제9986호	2010.1.27	일부개정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국내의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23	법률 제10357호	2010.6.8	일부개정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 고시 규정 사항을 법률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 마련
24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5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26	법률 제11960호	2013.7.30	일부개정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유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도적 기반 정비,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 마련 등
27	법률 제11661호	2013.3.22	일부개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법률상 기관으로 규정
28	법률 제13309호	2015.5.18	일부개정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 확대,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개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 1. 법률 제8601호, 2007. 8. 3., 일부개정

본 개정에서는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공공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요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다.

## 2. 법률 제9509호, 2009. 3. 18., 일부개정

본 개정에서는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폐지하였다.

## 3. 법률 제9986호, 2010. 1. 27., 일부개정

본 개정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며,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산권 정보의 규모 확대 및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분석·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청장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이 성장 및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산업과 관련된 창업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여 이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 해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4. 법률 제10357호, 2010.6 . 8., 일부개정

「발명진흥법」은 신속하고 효율인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절차와 합의가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상 미흡한 점이 다소 있어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기존까지는 특허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분쟁조정 거부 또는 중지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의 창출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5. 법률 제11661호, 2013. 3. 22., 일부개정

본 개정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법률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지도·감독 주체를 특허청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6. 법률 제11960호, 2013. 7. 30., 일부개정

본 개정은 종업원 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의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주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정의 및 육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가 관련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정부의 학생 발명 활동의 지원시책에 학생발명 교육기관 등의 설치·운영 지원, 발명교육 전문교원 양성 지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발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직접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및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인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 문화 확산을 위해, 사용자 등이 대기업인 경우 사전에 승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고,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였고,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다섯째, 산업재산권 정보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선행기술정보의 분석·제공 사업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정보의 생산·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 법률 제13309호, 2015. 5. 18., 일부개정

본 개정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며,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율을 제고하고, 그 밖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발명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폐지하였다.

둘째,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발명의 평가기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등록 또는 지정요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셋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을 추가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며,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에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과 영입비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 III. 지식재산 기본법과의 관계

### 1.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기본법은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로서,<sup>5)</sup> 국가의 가치나 정책의 이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간 역할을 한다.<sup>6)</sup> 이러한 기본법의 제정은 국가차원에서 그 분야의 정책이 중요하고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그 책무나 결의를 명확히 하여,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에 있다.

기본법의 기능으로는 크게 국가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추진, 국가정책의 체계화, 국가정책의 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기본법은 첫째, 국가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추진 기능을 갖는다. 기본법의 제정은 국가차원에서 그 분야의 정책이 중요하고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그 책무나 결의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그곳에서 제시된 방향성과 지침에 따라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sup>7)</sup> 둘째,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률의 증가, 무계획적인 입법, 법제도의 고도화·복잡화 등에 따른 법률 간의 모순·충돌을 기본법에 의하여 그 분야 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있는 정책 및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국가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셋째, 기본법은 국가정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국가정책의 일관성·계속성·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넷째,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가운데, 특히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발생한다. 이를 입법부가 기본법이라는 일정한 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행정부를 감시·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본법은 그 취지상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법적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본법이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성

5)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9면.

6) 양동수,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입법쟁점”,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 서울 공청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2014., 2면.

7)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24면.

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기본법이 개별법에 대해 우월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로는, 기본법은 초법률(Supergesetz)로서 국가적 행동의 종합·조정이며 국가의 일관된 행동에 대한 사인의 측으로부터의 예측가능성의 요청이므로 통상의 법률과 내용상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견해<sup>8)</sup>와 집행법은 당해 기본법의 내용·정신에 적합할 것을 그 제정의 취지로 하고 있는 이상 집행법의 규정은 될 수 있는 한 기본법의 목적·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이 요청되어야 한다는 견해<sup>9)</sup>가 있다. 그리고, 기본법의 개별법에 대한 우월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로는, 기본법이 장래의 국가·관계자의 행동방향 설정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반드시 상위규범으로 볼 수는 없으며, 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기본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의 복수 법률이 존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견해<sup>10)</sup>와 어떤 법률에 기본법이란 명칭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본법이라는 법률유형에 일반적이고 특수한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sup>11)</sup>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법의 개별법에 대한 우월적인 성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로는, 기본법과 개별법의 규정이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개별법의 규정이 법적으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법형식의 적용 내지 효력을 조정하는 “후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은 개별법에서 의도적으로 기본법과 다른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능한 개별법을 기본법이 규정하는 이념·원칙·방침 등과 조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sup>12)</sup>.

결과적으로, 기본법이 개별법에 대하여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우리 법체계 상 기본법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기본법 제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한 인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복잡하고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법의 역할에 의의를 두는 정도가 타당할 것이다.

8) Rüdiger Breur, 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 durch Programm und Plangesetze, DVBL, 1970, S.101.,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333면 재인용.

9) 菊井康郎, 基本法の法制上の位置づけ, 法律時報 1973.6 15면,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333면 재인용.

10) 長谷川正安, 憲法體系と基本法, 法律時報 1973.6, 10면,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 335면 재인용.

11) 홍준형,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상)”, 「고시연구」, 1997, 66면.

12)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336면.

## 2. 기본법에서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입법자는 완전히 자유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기존의 법률 내지 제도를 전제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동일 규범 또는 상이한 규범 간 규범의 구조나 내용,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으로서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적용된다.<sup>13)</sup> 기본법은 해당 분야에 있어서 지도법·지침법으로서 개별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대한 우월성을 규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명문화시킨 규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예를 들면,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관계 법률에 비해 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을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13) 입법의 원칙의 하나로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 또는 체계적 합성(Systemgemäßheit)이란 입법기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으로서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의 규범 상호간에는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이 없어, 결국 모든 규정의 내용과 체계가 상호 모순과 갈등 없이 그 본래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되고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면 개별 법률규정이나 개별법은 다른 법률규정 및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법령이 법체계 내에서 모순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입법자는 입법의 기능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저속을 배제하여야 하며 법령체계 가운데 조화와 균형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이 기존법령과 더불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법체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법제처, 2006.2, 86면.

이처럼 많은 기본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률과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른 법률의 적용, 적용배제, 준용, 우선적용 및 기본법의 우선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법률과 관련을 맺고 있는 기본법 하에서 각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 3.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2011년 5월 19일 자료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발명진흥법」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식재산 기본법」은 제5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다른 법률에 대한 「지식재산 기본법」의 우월성을 명시하면서 일부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월성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 특히 발명 등을 통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 역시 이 우월성 규정에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기존 「발명진흥법」의 입법 및 해석 원칙이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지식재산 기본법」은 제1조에서 본 법의 목적을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은 제1조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비교해보면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을 통한 국민 및 국가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중 ‘경제 발전’을 위한 측면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존재 유형 중, ‘발명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발명진흥법」에서 구체화된 사항을 규정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sup>14)</sup> 즉,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 중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특화된 법률로 볼 수 있다. 다만,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에 앞서

14) 김시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123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법이 갖는 체계상 및 실질상 우월성은 기본법 제정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법률이라도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지식재산 기본법」에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sup>15)</sup> 또한, 「지식재산 기본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진흥법」에 대한 「지식재산 기본법」의 우월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은 그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재산 기본법」과 현행 「발명진흥법」을 비교<sup>16)</sup>해 보면,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선언되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조문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 기본법」상 교육과 관련된 규정에는 지식재산 교육 강화의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관련 사항이 반영될 것, 지식재산 특성화 학교 육성, 지식재산 관련 강좌 및 학과의 개설, 평생교육기관에 지식재산 과정 포함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에서 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학생발명에 관한 사항 및 발명교실에 관한 사항이 주요한 내용이며, 간간히 개별적 사업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 즉, 「발명진흥법」에는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7)</sup> 동 사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발명진흥법」 제6조 제5호<sup>18)</sup>에 두고 있는데, 동 규정은 오히려 「지식재산 기본법」상의 규정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법과 집행법 간의 관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15) 박정훈,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조」 제58권 제12호, 법조협회, 2009, 300면.

16) 두 법률의 구체적인 비교는, 김시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123-148면 참조.

17) 김시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156면.

18)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생략)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생략).

이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기존의 독자적인 존재 목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던 체계 안에서 지금의 법 형태가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오던 것이었다면, 지금은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발명진흥법」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이 규정하는 사항의 효과적인 집행을 통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의 법체계 정비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sup>19)</sup> 다만, 해석적·실질적 측면이 아닌 법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지식재산 기본법」이 「발명진흥법」에 대한 체계적 우월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 역시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IV. 기타 관련 법률과의 관계

「지식재산 기본법」 이외에 「발명진흥법」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법률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변리사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과학기술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등이 있다. 「발명진흥법」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상기의 법률들은 대부분 「발명진흥법」이 지원하거나 적용되는 대상을 정의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갖고 있으며, 「발명진흥법」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유재산법」, 「개인정보 보호법」만이 해당한다.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정하는 경우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액 결정 시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sup>20)</sup>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소

득세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하도록 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특허청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산의 정보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 등이 신청하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9) 김시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2012.12, 156면.

20) 한기인, 「중소기업의 R&D인력 보상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9, 4면.

세계 지원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2조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동 규정에 따라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2절 발명진흥법의 문제점

「발명진흥법」이 오랜기간 잦은 개정을 거침으로 인하여 법체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잦은 개정으로 인해 「발명진흥법」의 법률 명칭과 입법 목적에 부적합한 신규 사업 및 제도를 도입되어 법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의 목적은 발명의 장려와 발명의 권리화·사업화 촉진에 있다. 즉, 발명의 ‘진흥’을 위한 지원이 「발명진흥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명진흥법」의 목적과 달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들이 추가되면서 법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발명진흥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통일된 입법 기준의 부재이다. 몇몇 사업은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발명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몇몇 사업은 사업의 근거만을 「발명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규범에 위임입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지식재산 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 및 산업재산권 진흥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및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항 역시 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법령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발명진흥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기본계획상의 과제 중에도 신지식재산 분야 및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에 관하여 「발명진흥법」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있어, 신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사항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넷째,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및 방법과 실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및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발명진흥법」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가 실제 현실에서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인데,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온전히 수행한 결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발명진흥법」이 추구하는 목적,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의 일관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각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예산은 1년 단위 용역에 대한 대금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하여는 지속성있는 사업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으며 용역의 발주자와 사업 수행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도 지속적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각 기관별 사업 수행에 있어 매년 사업 항목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 물론 시장의 변화와 관련 기술의 변화 등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큰 틀을 명확히 잡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이 움직여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에 따른 중장기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중국적으로는 발명관련 서비스의 일관성 저하 및 대국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여섯째, 지식재산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는 관련 근거규정이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발명교육에 관한 명확한 방향, 기준 및 발명교육 장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발명교육 시행에 관한 추상적인 근거만 제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으로서 교육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에는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현행 「발명진흥법」은 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교육의 내재적 의미가 불분명한 상태로 구성되어 법규정만으로는 어떠한 유형의, 어느 대상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등을 알기 어렵다.

일곱째, 「발명진흥법」 상의 규정범위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의 범위가 불일치하며,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하여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및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여덟째,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은 제22조에서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 중재 등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 및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은 현재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분쟁조정 신속성, 효율성, 제도이용자의 편의성, 전문성확보 및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아홉째, 「발명진흥법」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다. 「발명진흥법」이 입법될 당시 「발명진흥법」에 의한 조직은 한국발명진흥회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이 중요해지고 지식재산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특허청의 지원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지원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 부설기관에서 독립한 조직, 독립한 조직에서 다시 분리독립한 조직 등이 신설되었다. 이들 신설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신설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명진흥법」에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었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발명진흥법」의 전반적인 법체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의해 신설되다보니 관련 규정이 일정한 기준 없이 산재된 상태로 「발명진흥법」에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결국 소위 법률의 땀질식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오래 쌓이면서 점차 문제의 복잡성 역시 높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의 현재 문제는 크게 체계적 문제와 내용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체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규정의 이해관계자들과 상당히 오랜기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이끌어내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그 한계 상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 제3절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의 기준

#### I. 일반적 입법체계에서의 고려사항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입법은 공동체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를 동태적인 타협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sup>21)</sup>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법률 간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왔다. 따라서 법률생활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법률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정돈하여 이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체계를 정립하여, 하나의 체계 하에서 상호간 통일된 체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하여,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존재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의 합리적 행사,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보편적 원칙에 적합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에 의하여 한다는 것이 일반적 입법준칙이 되고 있는 것이다.<sup>22)</sup>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범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인 입법작용에 대하여 입법자에게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입법의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에 합치하고 개별 입법목적에 가장 적합한 입법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sup>23)</sup> 그러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라는 것은 그 개념이 다의적이고 불명확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기준과 한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 또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sup>24)</sup>

21) 이상희, “법령 체계와 입법 절차”, 법제처, 2009, 88면.

22) 안병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제처, 25면.

23) 임종수, “입법원칙과 규범통제”, 「법률행정논총」,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1. 6., 238면.

입법의 원칙에 대해서는 합헌성의 원칙, 실효성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sup>25)</sup> 다만 이러한 입법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공통하는 원칙이 있을 수 있고 법률의 특정 영역이나 개개의 법률에 특유한 원칙이 있을 수가 있으며, 시대적, 사회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sup>26)</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명진흥법」의 입법상 특수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각 개별법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입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체계 및 형식면에서의 입법원칙과 내용 면에서의 입법원칙으로 구분<sup>27)</sup>하여 검토한다.

표 3 입법의 원칙

구분	세부원칙
체계 및 형식 면에서의 입법원칙	사안적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체계적합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내용 면에서의 입법원칙	기본권존중의 원칙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의 존중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과소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24)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법제처, 2006.2., 80면.

25) 전원배, “법률안의 입안원칙”, 국회보, 411호, 2001. 1., 94-96면; 박영도,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28-87면; 임종훈/박수철/임송학/박강호,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0., 137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795면.

26) 김승환, 「입법학에 관한 연구 -입법의 주체·원칙·기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83면.

27)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법제처, 2006.2., 82면.

## 1) 체계 및 형식 면에서의 입법원칙

체계 및 형식 면에서의 입법원칙에는 사안적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체계적합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 사안적합성(Sach-gemäßheit)의 원칙이란 법규범은 규율하고자 하는 사회현상, 사실관계 등 규율사안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사안에 적합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sup>28)</sup> 법과 현실의 괴리는 법의 무기력화와 고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의 불신을 증대시키기 때문에<sup>29)</sup> 입법이 그 입법목적에 상응하는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규범대상인 사회현상 및 사실관계를 입법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규범의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인 가족제도, 지역사회, 민족구성, 경제관계, 근로조건, 기술의 발달정도 등과 같은 사회현상 및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준수할 수 있는 정도를 내용으로 하여 실효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법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회현상 및 사실관계 등을 법규범에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sup>30)</sup>

둘째, 보충성의 원리는 상부단위가 하부단위를 보충적으로만 간섭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원칙이다.<sup>31)</sup> 이는 사회적 기능단위에 있어서의 상부단위는 하부단위의 객관적인 활동영역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상위단위의 시각에서 하위단위와 전체단위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즉, 국가와 사회와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국가는 사회세력의 자율적인 기능이 전혀 존재치 않거나 아니면 충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체적 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sup>32)</sup>

28)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법제처, 2006.2., 82-83면.

29) 이영희, 『법사회학』, 법문사, 2003., 245면.

30)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

31) 황도연, “보충성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 『고서연구』, 1995. 12., 182면.

셋째,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 또는 체계적합성(Systemgemäßheit)이란 입법기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으로서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sup>33)</sup> 즉, 입법의 기능과 효용성을 도모하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저촉을 배제하며 조화와 균형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다.<sup>34)</sup>

넷째,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란 현대행정국가에서 특히 위임입법의 원칙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sup>35)</sup> 위임입법이란 의회입법원칙의 예외로서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그 위임에 근거하거나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정립하는 법규범을 의미하는데, 현대사회는 국가가 중요한 법률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사항 등은 위임입법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중요한 법률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위임입법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법률 그 자체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본다.<sup>36)</sup>

## 2) 내용 면에서의 입법원칙

내용 면에서의 입법원칙에는 기본권존중의 원칙,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의 존중,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 있다.

첫째, 기본권존중의 원칙이란 기본권간의 충돌이 예견된다거나, 헌법과 법률에 의

32)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마204 결정.

33) 허영, 『한국헌법론』, 2002., 박영사, 860면.

34)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122 결정.

35)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법제처, 2006.2., 88면.

36)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3헌바50 결정.

하여 정당화되는 기본권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sup>37)</sup>,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sup>38)</sup>는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법규범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이 된다.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과 같은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sup>39)</sup>

둘째,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의 존중이란 입법자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될 수 없으며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제도 등에 위반되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up>40)</sup> 헌법은 모든 법규범의 해석기준이며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sup>41)</sup> 따라서 입법은 헌법에 합치되도록 행해져야 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존제도는 모든 법규범의 입법기준이 된다.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 또는 해석상 유추되는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평화국가의 원리 등이 있으며, 기본제도로는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 언론제도, 교육제도, 군사제도, 사유재산제도, 가족제도 등이 있다.

셋째, 평등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입과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sup>42)</sup>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평등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법 앞의 평등이란 법 적용에 있어서의 평등(법적용평등설)만이 아닌 법 내용에 있어서의 평등(법내용평등설)까지도 요구하며 입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sup>43)</sup> 따라서 규제대상이 되는 사안이나 집단 간에 사실상의 평등 또는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넷째,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입법권의 한계를 포함하여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sup>44)</sup>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입법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충족될 때 국가의 입법작용은 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의 수인의무가 생겨난다고 하였다.<sup>45)</sup>

다섯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기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는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sup>46)</sup>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선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지는 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이 법률이나 제도 또는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의 정당성과 존속성에 대하여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sup>47)</sup> 신뢰보호는 기존의 입법을 새로운 입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지속되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기존에 보호받던 권리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받던 일정한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라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과 재산권 침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37)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48 결정.

38)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마24 결정.

39) 헌법 제37조 제2항.

40) 임종수, “입법원칙과 규범통제”, 『법률행정논총』,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1. 6., 238면.

41)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도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마47 결정.

42) 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43)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법제처, 2006.2., 94면.

44)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26 결정;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45)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46)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법제처, 2006.2., 98면.

47)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법제처, 2006.2., 100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일곱째, 명확성의 원칙이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그 요건과 내용에 있어서 수범자가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와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sup>48)</sup>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주어 야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범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sup>49)</sup> 특히, 법률이 형벌법규인 경우에는 더욱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률이 규정한 용어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보통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 보통의 이해력과 관행에 따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면, 그 적용대상자에게 가혹하고 불공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어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입법권을 법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sup>50)</sup>

## II. 발명진흥법 정비 시 고려할 특수사항

### 1. 발명진흥법의 입법 목적

우리의 법제에서는 입법실무의 관례 상 기본적으로 목적규정을 두는 경향이 있

48)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주어 야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범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1헌바91 결정.

49)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 결정.

50)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 결정.

다.<sup>51)</sup> 이러한 목적규정은 그 법률이 무엇인지를 간결한 방식으로 표현한 ‘제명’과 달리, 그 법률이 왜 제정되었는지 또는 입법자가 해당 법률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적규정은 그 법률이 추구하는 당위상태를 표현하게 되는데,<sup>52)</sup> 입법 취지를 언급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목적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하는 취지 등을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목적규정은 정의규정과 적용규정의 사례와 같이 사실관계에 직접 적용되기 보다는 입법의 실체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sup>53)</sup>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해석 방법 중 입법목적(ratio legis)을 강조하는 목적적 해석을 자주 사용한다.<sup>54)</sup> 우리나라의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사법적극주의, 판결의 정책성을 추구하면서 해석방법의 차원에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입법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적 해석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이 얼마나 명확한지 또 해석자가 이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sup>55)</sup> 즉, 특정 법률의 해석을 위한 기준준칙으로 활용되는 목적 규정은 그 법률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반영하여 그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발명진흥법」의 법체계 정비 시 현행 동 법의 목적이 실제 「발명진흥법」이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발명진흥법」이 명시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의 수단인 ‘발명의 장려 및 권리화’가 「발명진흥법」의 규정사항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의 입법목적을 벗어나 규정된 사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지식재산 기본법과의 일관성

기본법과 개별법간의 관계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이 「발명진흥법」에 대해 우월성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의 내용에

51) 박영도, “목적규정의 입법학적 고찰”, 「법제논단」, 법제처, 2014.12., 21면.

52) 박영도(역),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제도 -스위스의 이론과 실무, 한국법제연구원, 2005.6., 45면.

53) 박영도, “목적규정의 입법학적 고찰”, 「법제논단」, 법제처, 2014.12., 25면.

54) 오세혁,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세창출판사, 2013., 18면.

55) 오세혁,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세창출판사, 2013., 19면.

다른 실질적 우월성은 인정될 소지가 있다. 특히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에 비해 선행하여 존재하고 있어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과 「지식재산 기본법」 제5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우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체계 및 내용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과 상충되거나 정책 집행을 반하지 않아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이 추구하는 이념 및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의 법체계 및 내용이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시하고 있는 목적의 범위 및 내용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정비되어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법체계의 정합성

우리나라는 법체계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통일적 기준을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마련하여 법체계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법령 상호간 규범구조나 규범의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되며, 법률에서 명령에 수권하거나 정부에 수권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혹은 어디까지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율 밀도가 그것이다. 「발명진흥법」 역시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법체계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명진흥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히 잦은 개정과 이를 통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매우 많이 반영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의 입법목적과 법의 규정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그 체계가 일반적인 법체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

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의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sup>56)</sup> 그러나 「발명진흥법」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불 여지가 있는 것 까지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발명진흥법」의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동 법의 입법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추가된 내용 및 위임입법의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하여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 4. 정책 사업의 법적 근거

「발명진흥법」은 발명의 진흥 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정책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발명 및 산업재산권의 진흥 및 보호 등을 위해, 사업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 등 수행주체의 마련,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관련 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설정된 목적에서 벗어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개별 사업의 근거를 모두 법률에 규정할 경우,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대응하여 사업이 축소 또는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도입될 때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법률 개정에 소요되는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발생케 한다. 한 예로 현행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된 개정이 최근 5년 내에 3회가 있었을 정도로 잦았다는 점은 현행 관련 규정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정책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수는 없으므로, 「발명진흥법」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성격을 살펴보고 각각의 사업을 「발명진흥법」에 근거를 둘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임입법하여 하위법령에서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춘 법체계 정비

56) 안병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제처, 30-33면.

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관련 입법현황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의 성립 등에 관하여 각 권리별로 법률을 두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발명만을 특정하여 입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통합하여 입법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권리이전, 지식재산 정보화 및 서비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다른 법률 및 정책 등에서 관련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발명진흥법」의 주요내용 중 발명 및 산업재산 교육,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서비스,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등을 중심으로 일본, 미국, EU의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 제1절 일본

일본은 발명진흥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입법화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을 제정하고 동법에 기반한 「지식재산추진계획」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신사업창출촉진법(新事業創出促進法)」,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法)」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우리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을 제정하고, 동법을 통해 지식재산전략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며 그 시책으로 발명진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재산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지식재산 정책은 개별 정부부처마다 독립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개별 정부부처 간 이익이 서로 충돌되었고, 그 결과 국익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적재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동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것과 그 실현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에서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급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명진흥 관련 정책도 「지적재산기본법」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활력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법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와 관련하여 ① 기본이념 및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사항을 설정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대학, 사업자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며, ② 지적재산본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③ 지식재산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즉, 지식재산전략의 범위를 연구·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화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이 과학 기술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전개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장에서는 대학의 연구개발 촉진 및 대학으로부터 사업자에의 지식재산 이전의 원활화(제13조),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유효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19조), 지식재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제20조), 개인의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및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가의 육성(제22조) 및 교육의 진흥(제21조) 등 우리 「발명진흥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련 정책은 지적재산본부(제24조)를 설치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에 따라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가속화되고, 지식재산 및 발명진흥과 관련된 정책이 정비되었다. 「지식재산추진계획」은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과 정책 등에 관한 기본틀을 형성하면서 매년 추진계획을 보완해오고 있고, 동 계획에서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문제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 일부로서 발명진흥과 관련된 발명교육, 산업재산권의 정보화 및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기본법」 외에 발명진흥과 관련된 법률로, 과학기술이 국가와 인류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이며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의 집적이 인류의 지식재산임을 인식하여 연구자 및 기술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진흥하고자 하는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이 있다. 동법은 과학기술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재산권 정보화와 관련하여 청소년 및 국민들에게 과학기술 교육 진흥(제19조),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제공

(16조) 등이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工業所有權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조사기관 지정 및 정보처리기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산업재산권 정보를 다루는 공업소유권협력센터(IPCC), 일본특허정보기구(JAIPO), 공업소유권자정보센터(PAPC) 등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기술이전을 촉진하여 국가 산업 구조의 원활과 국민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사업자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大学等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の促進に関する法律)」,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의 재구축, 경영 자원재활용, 경영 자원 융합, 자원 생산성 혁신 등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 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 조치 법(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 기술, 인력, 기타 사업자원 등을 활용하여 창업 등 상품의 새로운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및 새로운 사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등 기업 설립 시 새로운 사업분야의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사업창출촉진법(新事業創出促進法)」, 발명·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공보·심사 및 심판에 관한 문헌,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의 수집·정리 및 제공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특허청의 직원 및 그 외 산업재산권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것 등을 업무로 하는 정보·연수관을 설립하고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法)」 등에서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 산업재산권의 정보화, 산업재산권 서비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I. 발명교육 관련 규정

일본은 1970년대에 철강·기계·화학 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기술혁신 성과를 도입하여 제반 설비를 갱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

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저변에 특허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1984년 일본 발명협회(一般社団法人発明推進協会)에서 발명 장려 계획을 세워 발명 상담이나 강습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여성과 아동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발명대회를 매년 개최하였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발명 전시회를 개최하고 초·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등 발명 장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발명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적재산기본법」을 비롯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력강화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적재산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민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제공하고, 대학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는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 지식재산 인재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발명경진대회 시행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슈퍼사이언스고등학교(スーパーサイエンスハイスクール, SSH)」를 지정 및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으로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과학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과학 원리를 이용한 발명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발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국가 정책적으로 발명교육은 이과교육과 밀접히 연관되어 실천되고 있다. 주로 과학기술 및 과학 과목에서 발명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만, 교과 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기술 및 생활과 관련된 창조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 내용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교육에 대한 공통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가용할 수 있는 물적·인적자원에 따라 특색에 맞게 발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sup>57)</sup> 일본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발명교육은 크게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이나 과학 과목에서 다루지는 발명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은 과학기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술 및 생활과 관련된 창조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내용에 반영되고 있다. 즉, 과학과 기술을 통합하고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있다.<sup>58)</sup>

둘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연계된 프로그램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발명 전문가들이 중학생들에게 발명 관련된 내용을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공계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사이언스 파트너십 프

로그램(Science Partnership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일반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 과학기술 현장의 자료를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특별강의 시간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연구원과 기술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주제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학교,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이 서로 연계하여 과학학습 프로그램을 혁신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이과과목 좋아하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과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고 발명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 일선 중학교와 대학이 제휴해 대학 내 개설된 과학과목을 수강하도록 한다. 정책 실행 초기에는 대학교수들이 중학교로 초청강의를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실험 기자재가 많은 대학캠퍼스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교토교육대학교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0개 강좌를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sup>59)</sup>

셋째, 일본은 지역 박물관들을 활용해 발명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내 발명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발명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박물관을 활용하여 2002년부터 산업기술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은 언제든 산업기술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수업시간에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다.

## 1.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sup>60)</sup>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은 지식재산에 대해 높은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학습 진흥 그리고 홍보 활동 등을 운영하여 지식재산 및 발명을 장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법 제21조<sup>61)</sup>에서 국민이 널리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59) 서혜애, 「공교육차원의 발명영재교육 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2., 39면.

60) 동법은 일본 내외의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로 활력있는 경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이념과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국가, 지방 공공 단체, 대학 등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추진 계획의 작성에 대해 정함과 동시에 지식재산전략분부를 설치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61) 第二十一条 国は、国民が広く知的財産に対する理解と関心を深めることにより、知的財産権が尊重される社会を実現できるよう、知的財産に関する教育及び学習の振興並びに広報活動等を通じて知的財産に関する知識の普及のため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57) 이병욱, 「창의발명인재 육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특허청, 2012., 78-79면.

58) 김두선, 「선진국 발명교육 사례의 연구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한국학교발명협회, 2002., 47-51면 참조.

와 관심을 높임으로써 지식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 및 학습의 진흥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sup>62)</sup>에서 지식재산 전문 인재 양성을 도모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및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재의 확보, 양성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 1) 2014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의해 추진되는 「2014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에 따르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식재산 인재의 양성 및 확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대학 등의 이공계 학과 또는 법학과, 예술학과 또는 경영학과 등 장래의 지식재산 전문인재 또는 지식재산 창출인재, 관리인재를 육성하는 학과 등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대학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한다.

## 2) 각종 발명경진대회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발명행사는 발명경진대회와 발명전시회로 나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발명경진대회는 일본발명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명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살펴보면 ‘학생과학 발명대회(学生科学発明大会)’가 있다. 동 발명대회는 미래의 일본을 짊어질 젊은 학생들이 발명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회이다. 1941년부터 매년 3월에 개최되는 본 대회는 마이니찌 신문사가 공동주관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제특허기구(WIPO)에서는 뛰어난 작품을 선보인 학생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올라온 학생들 중 천황상을 수여한 학생에게 포상금을 수여한다.

62) 第二十二條 國は、知的財産の創造、保護及び活用を促進するため、大学等及び事業者と緊密な連携協力を図りながら、知的財産に関する専門的知識を有する人材の確保、養成及び資質の向上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세계 어린이 발명전시회(世界の子供発明展)’는 1972년부터 개최되었는데 전 세계로부터 관찰력과 창의성이 우수한 학생의 발명품을 전시하고 있다. 본 행사를 통해 일본 초·중등학생들은 발명활동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높이게 되고, 전 세계로부터 참가한 학생 상호간에 국제적 우정을 쌓으며 교류하는 장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단위별로 발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이는 일본발명협회 지역지부에서 지역단위별로 실시하는 전시회이다. 이러한 전시회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개발한 발명품을 전시하게 되며 지역의 산업체·기업체와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니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지원하며 지역의 대중매체를 통해 발명품을 소개하여 지역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전시회이다.

한편, 일본의 특허청에서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지식재산권과 발명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특허 경연대회(パテントコンテスト)’를 개최하고 있다. 본 경연대회의 주요목적은 지식재산권과 발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과학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사이에서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2006년까지 일본발명협회가 사무국이었지만, 이듬해인 2007년부터는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이 본 경연대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지역의 교육 기관에 특허 콘테스트를 홍보하여 교사와 학생들 나아가 부모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2.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sup>63)</sup>

과학기술의 진흥에 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경제사회의 발전과 국민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에서는 정부가 청소년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의 진흥 및 과학기

63)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되었다.

술에 관한 개발 및 지식 보급에 있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과학기술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19조64).

## 1)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科学技術基本計画)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인재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하여 대학원 교육의 개혁 및 강화를 추진하고, 대학이 육성한 인재가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교육위원회와 대학이 연계하여 전과제도 또는 특별 비상근 강사 제도를 활용하여 이공계학과 또는 대학원 출신의 교직 활동을 촉진하고, 현직 교사연수 또는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과학기술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 관련 인재 육성을 목표로 슈퍼사이언스고등학교(슈퍼사이언스하이スクール, SSH)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슈퍼사이언스고등학교의 성과 등을 대학 입학시험 평가 방안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재적 중 대학의 자연과학계 과목이나 전공과목 이수 등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과정을 추진한다.

## 2) 슈퍼사이언스고등학교(スーパーサイエンスハイスクール, SSH)<sup>65)</sup>

2002년 문부과학성은 과학기술 및 이과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고등학교 26개를 “슈퍼사이언스고등학교(SSH)”로 지정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이나 수학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또한 각 분야에서 권위있는 연구자나 기술자 등과의 교류, 첨단 기술과의 만남, 전국의 슈퍼사이언스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상호교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슈퍼사이언스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 목적은 관찰과 실험을 통한 체험학습과

64) 第十九条 国は、青少年をはじめ広く国民があらゆる機会を通じて科学技術に対する理解と関心を深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学校教育及び社会教育における科学技術に関する学習の振興並びに科学技術に関する啓発及び知識の普及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65) 관련 홈페이지: <https://ssh.jst.go.jp/>

문제해결학습,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선진적인 수학 및 과학교육 실시, 학습지도요령에 의거하지 않고 교육과정 편성에 의한 수학과 과학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설립된 슈퍼사이언스 고등학교는 일본 전역의 2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25개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1개의 공업계 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공업계 슈퍼사이언스 고등학교는 동경공업대학교 부설 공업고등학교로 동경공업대학교 교수들이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대학생들이 수강하는 대학수업을 화상기기를 통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학교 자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과학기술입문과목을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수업을 통해 교사와 교수, 학생들은 과학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해 로봇과 프로그램 개발 등 과학 원리를 이용한 발명품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

## 3. 연구개발력강화법(研究開発システムの改革の推進等による研究開発能力の強化及び研究開発等の効率的推進等に関する法律)<sup>66)</sup>

연구 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자 육성이 중요하므로, 「연구개발력강화법(研究開発システムの改革の推進等による研究開発能力の強化及び研究開発等の効率的推進等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에 중사하는 교사의 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연구원 등의 활용 등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동법 제9조<sup>67)</sup>).

## 4. 산업기술력강화법(産業技術力強化法)

66) 연구개발력강화법의 정식명칭은 「연구 개발 시스템의 개혁의 추진 등에 의한 연구 개발 능력 강화 및 연구 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이며, 미국의 「경쟁력강화법」, 중국의 「과학기술진보법」 등 여러 국가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법적 정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국가의 연구개발력의 강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연구개발시스템 개혁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67) 第九条 国は、科学技術に関する教育の水準の向上及び卓越した研究者等の育成が研究開発能力の強化に極めて重要であることにかんがみ、科学技術に関する教育に従事する教員の能力の向上、科学技術に関する教育における研究者等の活用等による科学技術に関する教育の水準の向上を図るとともに、先導的な科学技術に関する教育への支援その他の卓越した研究者等の育成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등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sup>69)</sup>

일본의 산업기술력의 저하를 방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업기술력의 강화와 기술경영력의 강화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의 책무와 자금지원, 특허료의 감면과 국가연구성과물의 수탁자 귀속규정 등 산업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환경정비를 위한 법률인 「산업기술력강화법(産業技術力強化法)」에서는 연구자 및 기술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연구자 및 기술자의 확보, 양성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sup>68)</sup>).

## II.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

일본은 산업재산권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정보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과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法)」 등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에서는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국제적인 정보의 공유 등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法)」에서는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연수관(情報·研修館)을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 또는 활용 촉진을 위한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비를 통해 정보의 양적확대와 수요 증대로 그 이용 또는 활용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권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정비, 아카이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이용조건의 명확화 및 상담·권리처리 창구기능의 정비, 아카이브 간 연계를 통해 검색시스템 등의 아카이브를 효과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나 아카이브의 기록·보존에 관련된 기술 등 디지털 아카이브를 뒷받침하는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각 아카이브 간 연계를 위하여 데이터 정비, 다른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접근이 가능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의 통일화 작업

68) 第八条 国は、研究者及び技術者の創造性が十分に発揮されることにより、産業技術力の強化が図られることにかんがみ、研究者及び技術者の確保、養成及び資質の向上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 1.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서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20조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 조사 및 분석을 행하여 필요한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작성을 수행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를 도모하여 사업자, 대학 등 기타 관계자에게 인터넷 및 기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sup>70)</sup>).

### 2.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 제16조<sup>71)</sup>에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의 보급 등 정보 제공 및 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국제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자국의

69) 일본 특허청(JPO)은 산하기관으로 공업소유권협력센터(IPCC),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 공업소유권전자정보센터(PAPC) 등을 두고 본 기관을 통해 정보 수집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기관들은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공업소유권협력센터(IPCC)는 산업 재산권 관련 조사 및 관련 인프라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자국의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등록 조사 기관으로서 특허 심사에 필요한 선행 기술 조사, 특허 출원에 대해 국제 특허 분류(IPC) 부여 등 조사 사업과 산업 재산권 정보의 분류 및 분류 부여에 관한 기술의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는 특허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및 특허 정보의 처리에 관한 조사, 연구개발 및 이들의 성과의 제공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특허청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실시한다. 세계특허정보검색서비스(Japio-GPG), 중소기업 등 특허 선행 기술 조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업소유권전자정보센터(PAPC)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절차 등의 정보 처리 업무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기술을 조사·연구·개발함으로써 특허 관련 절차 등을 원활하게 제공하여 산업 기술 진흥 및 경제 활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서면 및 심판 서류를 전자 정보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관련 정보의 전자 정보화의 촉진을 지원하며, 전자 정보화 처리를 위한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을 수행한다.

70) 第二十条 国は、知的財産に関する内外の動向の調査及び分析を行い、必要な統計その他の資料の作成を行うとともに、知的財産に関するデータベースの整備を図り、事業者、大学等その他の関係者にインターネットその他の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の利用を通じて迅速に情報を提供できるよう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71) 第十六条 国は、研究開発の成果の活用を図るため、研究開発の成果の公開、研究開発に関する情報の提供等その普及に必要な施策及びその適切な実用化の促進等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과학기술을 진일보시키기 위하여, 연구자 등의 국제 교류, 국제 공동 연구개발, 과학기술 정보의 제공 등 국제 교류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동법 제18조<sup>72)</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 3.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法)<sup>73)</sup>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獨立行政法人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法)」에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수행하는 정보·연수관(情報·研修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sup>74)</sup>). 정보·연수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 및 관련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산업재산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산업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동법 제11조<sup>75)</sup>). 또한 편리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4.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工業

- 72) 第十八条 国は、国際的な科学技術活動を強力に展開することにより、我が国の国際社会における役割を積極的に果たすとともに、我が国における科学技術の一層の進展に資するため、研究者等の国際的交流、国際的な共同研究開発、科学技術に関する情報の国際的流通等科学技術に関する国際的な交流等の推進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 73) 동법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공보 심사 및 심판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실시함과 동시에 특허청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 등을 통해 산업재산의 보호 및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의 목적,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74) 第三条 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以下「情報・研修館」という。)は、発明、実用新案、意匠及び商標に関する公報、審査及び審判に関する文献その他の工業所有權に関する情報の収集、整理及び提供を行うとともに、特許庁の職員その他の工業所有權に関する業務に従事する者に対する研修を行うこと等により、工業所有權の保護及び利用の促進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 75) 第十一条 情報・研修館は、第三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次の業務を行う。
- 一 発明、実用新案、意匠及び商標に関する公報、見本及びひな形を収集し、保管し、及び陳列し、並びにこれらを閲覧させ、又は観覧させること。
  - 二 審査及び審判に関する図書及び書類その他必要な文献を収集し、及び保管し、並びにこれらを閲覧させること。
  - 三 工業所有權の流通の促進を図るため必要な情報の収集、整理及び提供を行うこと。
  -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工業所有權に関する情報の活用の促進を図るため必要な情報の収集、整理及び提供を行うこと。
  - 五 工業所有權に関する相談に関すること。
  - 六 工業所有權に関する情報システムの整備及び管理を行うこと。

### 所有權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工業所有權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은 정보 처리 조직의 사용 등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절차의 원활한 처리 및 산업 재산권 정보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의 특례 규정이다. 동법 제36조<sup>76)</sup>에서는 특허 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조사 중 그 특허 출원에 대한 발명과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명으로 정하는 것 및 출원 공개 시 필요한 조사 중 서류에 첨부 한 요약서의 기재가 「특허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sup>77)</sup>에서는 기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편집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처리기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Ⅲ. 산업재산권 서비스 관련 규정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서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의 창출 및 해당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산업재산권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 지식재산정책비전을 통해,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환경변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산업의 창출 환경 및 플랫폼 형성 추진 등의 산업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가치창출의 기회 및 역할을 교육 및 홍보하고

- 76) 第三十六条 特許庁長官は、その登録を受けた者(以下「登録調査機関」という。)に、特許出願の審査に必要な調査のうちその特許出願に係る発明と同一の技術の分野に属する発明又は考案に関するものであって政令で定めるもの及び出願公開の際に必要な調査のうち願書に添付した要約書の記載が特許法第三十六条第七項の規定に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のもの(以下「調査業務」という。)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登録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区分ごとに、調査業務を行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行う。
- 77) 第九条 特許庁長官は、その登録を受けた者(以下「登録情報処理機関」という。)に、第六条第三項若しく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ファイルへの記録、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磁気ディスクへの記録又はこれらの記録に必要な情報の入力(入力のための準備作業を含む。)、編集若しくはこれらに類する処理(以下「情報処理業務」という。)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 2 特許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り登録情報処理機関に情報処理業務を行わせることとしたときは、当該情報処理業務を行わないものとする。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情報処理機関が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磁気ディスクへの記録を行う場合における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特許庁長官に対し」とあるのは、「登録情報処理機関に対し」とする。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법에서는 기술이전을 포함한 산업재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기술이전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大学等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の促進に関する法律)」,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 「산업기술력강화법(産業技術力強化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法)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1.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서는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유효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조<sup>78)</sup>에서 국가는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의 창출 및 해당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적절한 평가방법의 확립, 사업자에 참고가 될 경영상의 지침의 책정, 기타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유효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2014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4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환경 정비, 지역 혁신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과학기술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기업이 정신향양, 자본전략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78) 第十九条 国は、事業者が知的財産を活用した新たな事業の創出及び当該事業の円滑な実施を図ることができるよう、知的財産の適正な評価方法の確立、事業者に参考となるべき経営上の指針の策定その他事業者が知的財産を有効かつ適正に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環境の整備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및 종합적인 활동환경 정비와 인재육성, 시장화, 자본, 지식재산 전략을 포함한 종합 비즈니스 전략 구축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별 강점이나 특성을 살려 자립적으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공공단체, 산학연 등이 연계·협력하고 연구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연속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낸 지역 클러스터가 해당 지역의 자율적 성장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추진과 함께 네트워크 형성, 인재 양성 및 확보, 지식재산 활동 등에 대한 중점적 지원을 실시한다.

## 2.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法)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法)」에서는 정보·연수관을 설립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동법 제11조 제5호<sup>79)</sup>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기술혁신 금융지원제도

일본의 기업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제도 중 특히 정부로부터의 융자 등 금융지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주요한 금융지원 시책은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도인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중소기업기술혁신 제도는 「신사업창출 촉진법(新事業創出促進法)」에 근거하여 1999년도에 마련되었으나, 「신사업창출 촉진법」이 2005년에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79) 第十一条 情報・研修館は、第三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次の業務を行う。  
五 工業所有権に関する相談に関すること。

법률(中小企業の新たな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로 개정되어 현재는 개정된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신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보조금·위탁비 등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보조금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자를 위한 지출목표액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의 특별대출 제도나 특허료 경감 등의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1)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는 100% 정부출자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법(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에 근거하여,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을 보완하고, 일본과 국제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낮은 고금리, 장기대출 등을 실시하고, 정부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향상하기 위해 ‘투명성·공정성·신속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 산업혁신기구(産業革新機構)

산업혁신기구(産業革新機構)는 「산업 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에 따라 2009년 설립되었다. 동 기구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자원 이외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생산성이 전망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 또는 새로운 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활동 중 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②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③ 사업형태의 혁신성을 가지는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특정사업활동에 필요한 장기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고, 리스크 머니 공급이외에 조인 등의 경영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확장을 지원한다.

## 4. 기술이전 서비스

일본은 연구성과에 대한 이전에 대해, 「지적재산기본법」에서 대학에서의 연구성과를 이전하여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이전을 위한 체제 정비, 절차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나서서 강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大学等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の促進に関する法律)」에서는 공공기술 이전 사업을 정부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 및 국가 시험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전전문기구를 설치하고 TLO 설립과 자금지원 근거 및 특정시설정비법에 따른 산업기반정비기금 지원범위를 기술이전으로 확대하여 TLO 실시에 필요한 자금조달 지원, 연구성과의 민간이전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 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에서 기업의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양도 및 이전 등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력강화법(産業技術力強化法)」에서 기업도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험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상호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연구성과의 이전에 대하여 선언적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에서 ‘국가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그의 보급에 필요한 시책 및 적절한 실용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연구성과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국가의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다.

### 1)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 제13조<sup>80)</sup>에서는 대학에서의 연구성과가 새로운

80) 第十三条 国は、研究開発の効率的な推進を図るため、科学技術に関する情報処理の高度化、科学技術に関する

사업분야의 개척 및 산업 기술의 향상 등에 유용한 점에 비추어 대학 등에서 해당 연구성과의 적절한 관리 및 사업자에의 원활한 이전이 행하여지도록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재를 활용하여 체제의 정비, 지식재산권에 관계된 설정의 등록 기타 절차의 개선, 시장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大学等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の促進に関する法律)<sup>81)</sup>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기술이전을 촉진하여 제정된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大学等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の促進に関する法律)」에서는 연구성과를 민간 사업자에게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학 기술이전 사업실시에 대한 지침을 문부과학성에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sup>82)</sup>). 기술이전 사업실시에 대한 지침에는 ①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 적인 방향, ② 대학 기술이전 사업을 실시 등을 관할하는 자의 요건에 대한 사항, ③ 대학 기술이전 사업 내용 및 실시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조<sup>83)</sup>에 따르면, 대학 기술이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해당 대학

データベースの充実、研究開発機関等間の情報ネットワークの構築等研究開発に係る情報化の促進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81) 대학교에 기술이전전담기관이 없어서, 대학의 연구성과가 민간부분으로 이전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98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대학 및 국립시험연구기관에서의 연구성과의 민간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 기술의 향상,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구조의 원활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학술의 진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승우, 과학기술 법령체계 현황 및 개편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118면.

82) 第三条 文部科学大臣及び経済産業大臣は、特定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効率的な移転を促進するため、特定大学技術移転事業の実施に関する指針（以下「実施指針」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実施指針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 一 特定大学技術移転事業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方向
- 二 特定大学技術移転事業を実施する者の要件に関する事項
- 三 特定大学技術移転事業の内容及び実施方法に関する事項
- 四 大学における学術研究の特性その他特定大学技術移転事業の実施に際し配慮すべき事項

3 文部科学大臣及び経済産業大臣は、実施指針を定め、又は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関係行政機関の長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文部科学大臣及び経済産業大臣は、実施指針を定め、又はこれを変更し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83) 第四条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は、特定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を促進するため、承認計画

기술이전 사업 실시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문부과학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계획서에는 ① 대학 기술이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사항, ② 대학 기술이전 사업 내용 및 실시 방법, ③ 대학 기술이전 사업 실시 시기, ④ 대학 기술이전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특정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계획과 관련된 특정 대학기술이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차입에 채무의 보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sup>84)</sup>).

## 3) 산업 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

「산업 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은 한시법으로 제정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의 적용범위의 확대, 기한연장을 거쳐 2009년 동법으로 개명되었다. 동법 제55조<sup>85)</sup>에서는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은 기업에 의한 사업재구축, 벤처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새로운 사업으로의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고등전문학교·대학공동이용기관의 당해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 및 이전 등 민간사업자에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연구성과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に係る特定大学技術移転事業の実施に必要な資金を調達するために発行する社債（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七十五号）第六十六条第一号に規定する短期社債を除く。）及び当該資金の借入れに係る債務の保証の業務を行う。

84) 第六条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は、特定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を促進するため、承認計画に係る特定大学技術移転事業の実施に必要な資金を調達するために発行する社債（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七十五号）第六十六条第一号に規定する短期社債を除く。）及び当該資金の借入れに係る債務の保証の業務を行う。

85) 第五十五条 文部科学大臣及び経済産業大臣は、事業者による事業再構築、経営資源再活用、経営資源融合及び資源生産性革新並びに創業及び中小企業者による新事業の開拓の円滑化に資するため、大学、高等専門学校及び大学共同利用機関（以下この項において「大学」という。）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について、当該研究成果に係る特許権及び特許を受ける権利についての譲渡その他の行為により、民間事業者に対し移転を促進するための施策を積極的に推進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大学における学術研究の特性に常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산업기술력강화법(産業技術力強化法)<sup>86)</sup>

국가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험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법인 및 대학이 상호 보완에 의하여 산업기술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간의 연구성과 이전을 촉진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고 「산업기술력강화법(産業技術力強化法)」 제12조<sup>87)</sup>에서 규정하여 각 기관간의 교류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 IV. 지식재산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관련 규정

일본은 「지식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을 2002년에 제정한 이후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왔으며, 이후 2005년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2004년 제정된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개정하면서 민간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간분쟁해결절차 업무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다.<sup>88)</sup>

한편, 1998년에 설립된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는 민간 ADR기관으로서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일본 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설립당시에는 명칭이 ‘공업소유권중재센터(工業所有権駐在センター)’였으나, 2001년 업무범위를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서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함으로써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로 개칭하였다.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는 초창기에 상담, 조정, 중재의 업무만 수행하였으나, 2000년 JP도메인명 분쟁 처리를 시작으로, 2004년 침해 및 무효 판정, 2006년 특허권의 권리주체판정 업무, 2011년 사업 적합성 판단 업무를 개시하게 되어, 2013년 「재판외

86) 일본의 산업기술력 강화에 관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산업기술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일본의 지속적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적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년에 제정되었다.

87) 第十二条 国は、国及び地方公共団体の試験研究機関、産業技術研究法人並びに大学における研究及び開発の成果が事業活動において活用されることが産業技術力の強化に重要であることにかんがみ、当該成果の事業者への移転の促進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88) 하홍준,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65면 참조.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 1.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sup>89)</sup>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은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데 적합한 절차의 선택을 쉽게 하여 국민 권익의 적절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법의 기본이념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분쟁해결절차업무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효중단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그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sup>90)</sup>

동법 제3조<sup>91)</sup>에서는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를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 위한 절차로서, 분쟁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의 노력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게 그리고 적정하게 실시되며, 동시에 전문적인 지견을 반영하여 분쟁의 실정에 입각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기본이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민간분쟁 해결 절차의 업무인증을 위해서는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업으로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법무장관의 인증을 받아서 민간분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조<sup>92)</sup>). 또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할 전망이 없는 것을 이유로 절차 당사자가 해당 분쟁해결절차를 종료했을 경우, 해당 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한 당사자가 그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때에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해당 분쟁해결절차의 청구 시에 소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제25조<sup>93)</sup>).

89)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재판외에 적합한 절차의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판외 분쟁해결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과 동시에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주체에 대한 국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재판외 분쟁해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송법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시창, “한국에서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방안”,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70면.

90) 김상찬, “일본의 ADR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 132면.

91) 第三条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は、法による紛争の解決のための手続として、紛争の当事者の自主的な紛争解決の努力を尊重しつつ、公正かつ適正に実施され、かつ、専門的な知見を反映して紛争の実情に即した迅速な解決を図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92) 第五条 民間紛争解決手続を業として行う者(法人でない団体が代表者又は管理人の定めのあるものを含む。)は、その業務について、法務大臣の認証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93) 第二十五条 認証紛争解決手続によっては紛争の当事者間に和解が成立する見込みがないことを理由に手続実施者が当該認証紛争解決手続を終了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認証紛争解決手続の実施の依頼をした当該紛争の当事者がその旨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一月以内に当該認証紛争解決手続の目的となった請求について訴えを提起

## 제2절 미국

### 2. 일본변리사회회칙(日本弁理士会会則)

민간 기관인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는 「일본변리사회회칙(日本弁理士会会則)」 제153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일본 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한 분쟁의 법률 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53조 제2항).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는 변호사연합회와 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조직 구성, 운영 및 모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합의하여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3조<sup>94)</sup> 제3항). 또한 조정 및 중재 절차, 판정 등에 대한 규정은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의 자체 규칙에서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 산업재산권 정보화, 산업재산권 서비스 등 발명의 활용 및 진흥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에 대응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발명진흥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이 개별법으로 각 법에서 산발적으로 입법화되어 있으나 그 내용 또한 관련 시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sup>95)</sup>. 따라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의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 관련 법률은 없다. 또한 미국의 발명진흥 및 과학기술의 정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법제화가 아닌 정책을 통한 운영이다. 과학기술 및 발명에 대하여 정책 프로그램 또는 행정조치 등으로 국가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식재산 및 발명의 정책에 있어서도 창출보다는 기존의 발명을 사업화 하는 지식재산 활용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과학기술 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한 법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식재산 관련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돌법(Bayh-Dole Act OF 1980)」,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등은 모두 기술이전과 관련된 규정이며, 발명교육,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과 관련된 분야의 법은 실질적으로 없다.

미국의 발명진흥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연방정부차원의 하나의 독립적인 과학기술 전담 부처에 의해 수립되지 않고, 독자적인 행정임무를 담당하는 여러 연방 부처들에 의해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된다. 미국 상무부는 하위기관으로 혁신 및 기업가정신국(Office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OIE)을 설치하고(15 U.S.C. § 3720)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을 상품과 기술로 바꾸는 데 집중하여 혁신적인 미국 경제를 촉진하기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Office of Under Secretary and Director의 하위 기관으로 Office of Education and Outreach을 두고 학생, 교육자, 청년 발명가 등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 및 outreach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는 부처 간 정책조정 및 과학기술

したときは、時効の中断に関しては、当該認証紛争解決手続における請求の時に、訴えの提起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94) 第153条 1 本会は、この会則で定める事業として、日本弁護士連合会と共同して、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を設置する。

2 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は、知的財産に関する紛争につき、公正かつ迅速な手続による紛争の法的解決を目的とする。

3 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の組織及び運営その他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に関し必要な事項は、日本弁護士連合会と協議して、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基本規程で定める。

95) 미국은 전통적으로 법원(法院)에 의한 판례법이 법원(法源)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 오늘날 실정법의 제정으로 많은 영역에서 성문법이 존재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과는 다르게 영미법계인 미국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산발적·부분적으로 입법을 하고 있으며 법조문도 아주 상세히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시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91면 참조.

분야의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NSTC), 그 사무국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조정 및 예산 조정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과학기술 관련 이슈 및 역할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독려하는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를 대통령직속 산하기관으로 설치하고, 국립아카데미연합(National Academy Complex, NAC)과 산업연구협회(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IRI) 등에서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관련 정책이 수립된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법의 일부에서 발명교육,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Pro-IP Act)」을 제정하여 백악관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을 설치하고, 각 부처별로 개별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해서 조정 및 관리하고 있다. IPEC의 출범으로 인해 미국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sup>96)</sup>

또한, 미국은 특허개혁 및 미국 기업들의 발명품을 신속히 사업화하고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규정된 「미국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에서는 중소기업과 발명자를 위한 특허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원활한 발명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조항을 추가 개정된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을 통해 중소기업혁신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정부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장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발명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에 근거하여 발명증진 및 과학기술이 우수한 기업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공동연구센터(Cooperative Research Centers)를 설립하여 기술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고등 교육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장려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AM)

교육을 확대하고 백악관 과학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등 발명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허제도의 품질 강화 및 혁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치(executive action)를 통해 개인 발명가 및 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서비스 전략을 펴고 있다.

## I. 발명교육 관련 규정

미국에서의 발명교육은 정부측면에서 학교 정규 교육 정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발명교육 프로그램은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과학기술투자를 위해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는 환경, 천연 자원 및 지속 가능성, 국토 안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과학기술 등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재단법(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에 의해 설립된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sup>97)</sup>을 통해 과학 정책과 학습의 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특허상표청에 Office of Education and Outreach을 설치하여 학교, 교사, 부모 등에게 지식재산, 혁신 및 발명 관련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기반의 발명 및 혁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outreach program 등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전략계획 2014-2018에 따르면, ‘지식재산 정책·보호·국제적 집행 개선을 위한 자국내 및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하여 ‘자국내 및 국제적인 교육, 훈련 및 지원을 증대하기 위한 교육 제공’을 실행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일반 대중 및 지식재산 관련 업계에 걸쳐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기술 활용을 통하여 확대된 원격교육과 연방, 주, 기타 이해관계인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내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해외 비즈니스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 소외계층,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국가지식재산권법 집행조정위원회(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ion Council, NIPLECC)에서 발행하는 “지식재산의 집행과 보

96) David Switzer,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Georgetown University (2003), 신지연, 「지식재산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20~21면 재인용.

97)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1590년 국립과학재단법(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 정부의 독립연방기관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 과학 및 공학(S&E : Science and Engineering)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기초 연구, 교육 및 사회기반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호 조정에 관한 대통령 및 의회를 위한 보고서(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on Coordi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nd Protection)”를 통해 ① 전국 기업들에 대한 계몽 홍보, ② 공중의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소비자 교육 서비스에 대한 산업재산권 서비스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업의 홍보를 위해 매년 약 1,300명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대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홍보활동을 펼친다.

한편, 최근 백악관은 과학박람회(White House Science Fair)를 개최하고 학생 발명가들을 격려했다. 동 행사는 학생 발명가들의 발명 활동을 고무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30개국 이상에서 온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STEM) 분야의 성과물을 전시하였다. 또한 학생 발명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발명활동을 하도록 돕고, 발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아카데미(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GIPA)에서는 주로 특허, 상표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sup>98)</sup>.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발명과 관련된 학교 정규교육과정은 주 교육부 및 지방 교육청의 과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각 학교별로 학습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sup>99)</sup>. 미국의 발명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술교육(Technology Educat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과정은 5학년까지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며,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기술교육의 세부 영역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을 중심으로 STEM 교육<sup>100)</sup>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중학교 기술 교과서에 STEM 교과 통합교육 체제로 단원을 구성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과학, 수학, 공학 내용이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학문이 공학과 연계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술 교육과정은 없지만, 국제기술교육협의회(ITEEA)는 전 미국인들에게 표준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내용의 틀을 제시하는 표준기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기술교육협의회의 STEM 센터(STEM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sup>101)</sup>

98) 오승택, 「글로벌 IP 이터닝 센터 설립을 통한 IP 교육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2010., 73면 참조.

99) 김두선, 「선진국 발명교육 사례의 연구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한국학교발명협회, 2002., 80면.

100) STEM 교육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를 의미하는 과학예술융합교육으로서, 수학, 과학, 기술, 공학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문 간 동등 핵심 요소 중심으로 교육하며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타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미래형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방법이다.

한편, 미국 정부에 의한 발명교육 이외에 발명과 관련된 민간 재단에서 발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발명가협회(United Inventors Association of America)는 비영리 교육 재단으로서,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발전시키고 보호하며 자금 확보 및 상업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창업기업을 위한 트레이드쇼 등을 개최하는 등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발명가들의 의견을 정부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sup>102)</sup> Lemelson 재단의 경우 미래의 발명가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에 투자하고 있는데,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에 자질을 갖춘 어린이,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Oregon MESA (Mathematics, Engineering, Science, Achievement)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중·고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MIP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The Lemelson-MIT Program)을 개최하여 아이디어를 실제 동작하는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타 발명 관련 NGO와 연계하여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제공하며 대학생들에게 실험 관련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sup>103)</sup> 뿐만 아니라, 동 재단의 경우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 1. 국립과학재단법(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sup>104)</sup>

「국립과학재단법(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 제34조<sup>105)</sup>(42 U.S.C. § 186o-6)에 따르면,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과학 정책과 학습의 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 할 때,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 1) 어린이·청소년 발명

101) 이병욱, 「창의발명인재 육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특허청, 2012., 71면.

102) 관련 홈페이지: <http://www.uiausa.org>.

103) 관련 홈페이지: <http://www.lemelson.org/our-programs/us-programs/education>.

104) 「국립과학재단법(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은 미국 상무부 산하의 정부기관인 국립과학재단의 목적, 운영방법 등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105) Sec. 34(Research on innovation and inventiveness) In carrying out its research programs on science policy and on the science of learning, the Foundation may support research on the process of innovation and the teaching of inventiveness.

미국은 미국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내에 ‘USPOT KIDS’ 페이지<sup>106)</sup>를 직접 운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발명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2014년부터 ‘National Summer Teacher Institute on Innovations, STEM and IP’ 를 개최하여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발명,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 등에 관한 발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107)</sup>

## 2) 대학생 발명

또한, 미국 특허상표청은 Patent Experience Extern Program (PEEP)를 운영하여 미국 특허상표청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및 법학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약 2개월간의 학교 외에서의 연수인 학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허 심사관이나 특허 관련 전문직의 업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특허상표청은 Student Volunteer Program (SVP)을 운영하여 엔지니어링 이나 법학 전공자 이외의 학생들에게도 「상표법」, IT, 국제업무 등 제한된 범위에서 학외연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Office of Education and Outreach(OEO)

미국 특허상표청 산하의 Office of Education and Outreach(OEO)는 학생, 교육자, 학부모, 청년 발명가 등 모든 연령층에 지식재산권, 창의 및 발명에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여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창의 및 발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 4) 캠프발명(Camp Invention)<sup>108)</sup>

캠프발명(Camp Invention)은 1990년에 미국 특허상표청과 대학 발명가 경진대회(Collegiate Inventors Competition)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국의 학교 중 본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에 한하여 과학, 수학, 역사와 예술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각 주별로 코디네이터들이 있어 캠프를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매년 1,200 학교에서 약 8만 명의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80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운영인원과 학생 비율은 1:8 정도이며 팀워크와 선별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름방학 중 1주일 동안 진행되며 매일 약 90명의 학생들이 5-6개 주제의 교과과정에 참여하게 된다.<sup>109)</sup>

2015년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Illuminate 과정’, 의학, 로켓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혁신과 발명에 대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Inducted 과정’,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직접 발명품을 설계하고 만드는 ‘Design Studio: Illuminate 과정’, 게임을 통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배우는 ‘I Can Invent: Next Level Gamers 과정’, 팀을 구성하여 자신만의 카트를 만들고 경주를 통해 협동심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KartWheel 과정’, 팀별 운동을 통해 협동심과 첨단 과학 기술의 이해를 돕는 ‘Motion, Obstacles, Variety, Excitement(M.O.V.E.) 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방과 후 클럽발명(Club Invention Afterschool)<sup>110)</sup>

방과 후 발명클럽(Club Invention Afterschool)은 학교 정규과정 내 STEM 등의 분야를 재미있게 구성하여 학생들이 발명 활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되는 발명교육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학교의 정규과정 이후 약 1시간 동안 창의적인 놀이를 통해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창의성, 문제 해결능력, 협동심 등을 배우게 된다. 현재 4,300명의 교사가 있으며, 82,000명의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

동 프로그램에는 도시의 건물과 건축을 통해 배우는 ‘Bolder Builders 과정’, 중

106) 관련 홈페이지: <http://www.uspto.gov/kids/index.html>.

107) 관련 홈페이지: <http://www.uspto.gov/kids/teachers.html>.

108) 관련 홈페이지: <http://campinvention.org/>

109) 임부영, 「차세대 창의발명교육 모델구축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102면 참조.

110) 관련 홈페이지: <http://campinvention.org/parents/parents-afterschool-program/>

세의 환경에서 놀이를 통해 과학을 배우는 ‘Castles, Catapults, and Coats of Arms 과정’, 과학 잡지를 가지고 직접 만들고 출판 및 배송까지 경험하는 ‘E.Z. Science 과정’, 3차원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미래의 비행기술을 배우는 ‘Flight Sight 과정’, 우주 환경에서 발명 도구를 이용해 우주선을 복구해 지구로 돌아오는 ‘Passage to Planet ROG 과정’, 게임 속 경쟁을 통해 물리학에 대해 알아보는 ‘Ed: Physics in Motion 과정’,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통해 생물학을 배우는 ‘SOS: Endangered Earth 과정’, 학생들이 슈퍼 히어로가 되어 대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문제 등을 배우는 ‘Echo and Axon: A Prototyping Adventure 과정’ 등 총 9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6) 대학 발명가 경진대회(Collegiate Inventors Competition)<sup>111)</sup>

대학 발명가 경진대회(Collegiate Inventors Competition)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수백 명의 학생들을 격려하고 보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원 자격은 대회에 지원서를 내기 전, 미국과 캐나다 대학생이 팀 내 적어도 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수학, 공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정보기술, 재료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창적인 아이디어, 아이디어 실현 과정, 기술에 대한 이해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매년 대학원과 대학교 부문에서 12명의 결승전 출전자가 선발되며 이들은 워싱턴 D.C로 초대되어 발명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발명품을 보여주고 전시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을 지원받는다.<sup>112)</sup>

## 2. 공동연구센터(Cooperative Research Centers)

기술 혁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에 근거하여 공동연구센터(Cooperative Research Centers)를 설립하고, 기술 혁신 과정을 통해 개인 훈련 및 교육을 시행한다. 즉, 협동 연구 센터를 통해 발명, 기업이 정신, 혁신 등 교육과정 개발 등을 수행한다.

111) 관련 홈페이지: <http://collegiateinventors.org/>.

112) 임부영, 「차세대 창의발명교육 모델구축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108면.

## II.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

미국은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해 「발명자 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에서 특허·상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에서는 정보 생산을 위하여 기술 등의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연방 기관에서 정보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술응용실(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Office)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사항은 지식재산 전략 계획 등을 통해 현실화 하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전략계획 2014-2018을 통해 모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IT기술을 활용하여 특허출원서 위치추적 및 모니터링 시스템(Patent Application Location Monitoring, PALM)을 만들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를 구축하고, 특허·상표 등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적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가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의 정보 수집·검색의 집중화 및 운영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자동화틀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미국 특허상표청의 정보 관리를 위한 전략은 대통령 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Integrity and Efficiency, PCIE)의 데이터 및 정보의 관리에 대한 중요 지적, 데이터 무결성 등에 대한 원칙 설정을 기반으로 하며, 표준화된 데이터를 각종 정보시스템과 연동하고 민간부분의 조직들과 유기적인 전자데이터를 교환함으로써 정부 및 민간의 지식재산권 데이터 활용확산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운영은 미국 특허상표청 정보시스템간의 공유성을 촉진하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외 및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또는 민간부분 조직과의 전자데이터 교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 고객과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려는 방침들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국 특허상표청은 생산된 특허정보의 보급, 활용을 통한 사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용자에게 특허 및 상표 사본, 통계, Bulk-Data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한다는 정보보급 정책의 거시적인 기초를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Patent and Trademark

Resource Centers Program(PTRCP)을 통해 미국 전역의 공공 및 주립도서관 그리고 학교 도서관 등을 산업재산권 자료 센터로 지정하고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검색 센터인 Public Search Facility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산업재산권 자료를 제공하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검색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 1. 발명자 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sup>113)</sup>

「발명자 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제42조(i)(2)(35 U.S.C. § 41(i)(2))<sup>114)</sup>에서는 전자 특허 상표 데이터의 자동화된 검색 시스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허, 상표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 검색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미국 특허상표청의 전략계획 2014-2018

지난 2014년에 발표된 미국 특허상표청의 전략계획 2014-2018에서 고도로 숙련된 다양한 인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특허·상표심사를 신속히 제공하고, 자국내외의 지식재산 정책을 선도하며, 전 세계에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여 자국내의 혁신과 경쟁력 및 경제 성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 지식재산 정책·보호 및 국제적 집행 개선을 위한 국내외 리더십 발휘, 조직적 탁월함 달성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를 위해 ①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 ②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효율성 및 특허 심사역량 강화, ③ 국제적인 협력 및 업무공조

확대, ④ 지속적인 특허품질 제고, ⑤ 모든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보장, ⑥ 이해관계인 및 대중에 대한 지원활동 지속·강화, ⑦ 적시에 고품질의 판결 제공을 위한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능력 유지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 제고’를 위해 ① 상표의 평균 최초 심사결과통지(First Action, FA) 기간을 2.5~3.5개월로, 상표 평균 심사기간을 12개월로 유지, ② 상표의 고품질 유지, ③ 모든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④ 이해관계인 및 대중에 대한 지원활동 지속·강화, ⑤ 상표심판항소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식재산 정책·보호 및 세계적 집행 개선을 위한 국내외 리더십 발휘’를 위해 ① 지식재산 정책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제공 및 리더십 발휘, ②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 및 정책에 대한 교육 제공 및 리더십 발휘를 계획하고, ‘조직적 탁월함 달성’을 위해서는 ① 미국 특허상표청의 임무 달성을 위한 정보기술 투자 확대, ② 유연하고 다양한 고용 인력의 지속적인 창출 및 유지, ③ 대내외적 관계 강화, ④ 수수료를 납부한 고객 및 대중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펀딩(funding) 확보, ⑤ 위성 사무소(Satellite Offices) 설치 및 지역적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중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해 정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허·상표의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서 위치추적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기존의 IT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검색 시스템을 개선하며, 타국 특허청과의 업무 공조 및 데이터 교환 등을 위한 IT 활용 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정보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 3. 정보품질 가이드라인(Information Quality Guidelines)

미국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연방 정부의 각 기관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 정보를 배포할 때, 품질, 유용성, 객관성, 신뢰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예산관리처 가이드라인에 맞게 자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품질법(Information Quality Act)은 각 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에 대해 품질, 객관성, 유용성, 신뢰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

113) 「발명자 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은 1999년에 제정된 미국 특허 일부 개정법으로서, 발명자의 권리강화, 수수료의 조정, 선사용자의 항변(First Inventor Defense) 및 당사자제 제심사(Optional Inter Partes Reexamination Procedure)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중시(Pro-Patent)정책을 반영한 강력한 특허제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14) Sec. 42(Patent fees; patent and trademark search systems) (i)(2) (2) AVAILABILITY OF AUTOMATED SEARCH SYSTEMS.— The Director shall provide for the full deployment of the automated search systems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 that such systems are available for use by the public, and shall assure full access by the public to, and dissemination of, patent and trademark information, using a variety of automated methods, including electronic bulletin boards and remote access by users to mass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

방정부 각 부처는 예산관리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1년 이내에 부처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각 부처에서 배포한 자료 중 오류자료를 찾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이러한 결과를 예산관리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4.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에서는 제6조(15 U.S.C. § 3704a)<sup>115)</sup>에서 정보센터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보 센터는 생산성, 기술, 혁신에 대한

115) Sec. 6(Clearinghouse for State and Local Initiatives on Productivity, Technology, and Innovation) (a) Establishment

There is established within the Office of Productivity, Technology, and Innovation a Clearinghouse for State and Local Initiatives on Productivity,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 Clearinghouse shall serve as a central repository of information on initiatives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American business through the stimulation of productivity,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Federal efforts to assist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competitiveness.

(b) Responsibilities

The Clearinghouse may—

- (1)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and multistate organizations of such governments, which carry out such initiatives;
- (2) collect information on the nature, extent, and effects of such initiatives, particularly information useful to the Congress, Federal agencie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egional and multistate organizations of such governments, businesses, and the public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 (3) disseminate information collected under paragraph (2) through reports, directories, handbooks, conferences, and seminars;
- (4)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and advice to such governments with respect to such initiatives, including assistance in determining sources of assistance from Federal agencies which may be available to support such initiatives;
- (5) study ways in which Federal agencies, including Federal laboratories, are able to use their existing policies and programs to assist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and multistate organizations of such government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American business;
- (6) make periodic recommendations to the Secretary, and to other Federal agencies upon their request, concerning modifications in Federal policies and programs which would improve Federal assistance to State and local technology and business assistance programs;
- (7) develop methodologies to evaluate State and local programs, and, when requested, advis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and multistate organizations of such governments, as to which programs are most effective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American business through the stimulation of productivity,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 (8) make use of, and disseminate, the nationwide study of State industrial extension programs conducted by the Secretary.

(c) Contracts

In carrying out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may enter into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nature, extent, and effects of initiatives.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 기관 및 각 주, 각 지역의 기업 및 단체 등의 공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컨퍼런스 및 세미나, 핸드북, 보고서 등의 형식으로 수집된 정보를 제공 및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각 연방 집행 부서 또는 기관은 민간 부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연방 정부 지원의 연구개발 활동, 국가 과학기술 정보, 엔지니어링 정보 등을 제공 및 이전 하도록 한다(동법 제9조(15 U.S.C. § 3704b-2)<sup>116)</sup>).

한편, 각 연방 기관은 「스티븐슨-와이들러법」 제15조(15 U.S.C. § 3710)<sup>117)</sup>에 의해 연방 연구소에 연구기술응용실(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Office)을 설치하고, 연방 정부가 소유하거나 각 주 및 지역 단체의 기술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방 연구소의 연구기술응용실은 중앙 정보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116) Sec. 9(Transfer of Federal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The head of each Federal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shall transfer in a timely manner to th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unclassified scientific, technical, and engineering information which results from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r dissemination to the private sector, academia,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Federal agencies. Only information which would otherwise be available for public dissemination shall be transferred under this subsection. Such information shall include technical reports and information, computer software, application assessments generated pursuant to section 3710 (c) of this title, and information regarding training technology and other federally owned or originated technologies. The Secretary shall issue regulations within one year after February 14, 1992, outlining procedures for the ongoing transfer of such information to th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117) Sec. 15(Utilization of Federal technology) (b) Establishment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Offices

Each Federal laboratory shall establish an Office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Laboratories having existing organizational structures which perform the functions of this section may elect to combine the Office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within the existing organization. The staffing and funding levels for these offices shall be determined between each Federal laboratory and the Federal agency operating or directing the laboratory, except that

≈

(c) Functions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Offices

It shall be the function of each Office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 (1) to prepare application assessments for selec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which that laboratory is engaged and which in the opinion of the laboratory may have potential commercial applications;
- (2) to provid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on federally owned or originated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having potential application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ivate industry;
- (3) to cooperate with and assist th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the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 and other organizations which link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ources of that laboratory and the Federal Government as a whole to potential users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industry; ≈

### III. 산업재산권 서비스 관련 규정

미국의 경우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산업적 정책이 있기보다는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과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을 통해 기업 정책적 차원에서 개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경쟁정책적 성격이 크며 그 하위에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가 포함된다. 또한, 지식재산금융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및 자문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과학자, 발명가에게 수여하는 국립기술혁신메달(Nat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Medal),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 품질관리가 우수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말콤 발드리지 국가품질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등의 수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발명가의 창의성과 발명 전신 및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973년 발명가 명예의 전당(The National Inventors Hall of Fame)을 미국 특허상표청과 지식재산법률협회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의해 설립하여, 발명가들의 창조성과 상상력을 일반인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 동안 발명품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발명 관련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권법 집행조정위원회(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ion Council, NIPLECC)에서 발행하는 “지식재산의 집행과 보호 조정에 관한 대통령 및 의회를 위한 보고서(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on Coordi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nd Protection)”에서는 전국 기업들에 대한 계몽 홍보, 공중의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소비자 교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법률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변호사 협회의 국제법, 위조 및 지식재산권 침해방지연합 분과(American Bar Association's Sec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Coalition Against Counterfeiting and Piracy)와 공동으로 미국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산업계의 지식재산 관련 사안 및 특정국가에 대한 법적 지식이 있는 자원 봉사 변호사로 하여금 당해 국가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방안을 배울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무료상담을 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1.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옴브즈맨 프로그램(Patent Ombudsman Program)을 제공하도록 제28조<sup>118)</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허상표청 내에 특허 옴브즈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를 위한 특허출원과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2조<sup>119)</sup>에서 전국의 지식재산권법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2.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 1) 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SBIC)

동 프로그램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근거하여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 설립되어, 그 산하인 투자부(Investment Division)에서 관리하고 있다. SBA는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SBIC에 투자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만 간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SBIC 프로그램은 ‘펀드의 펀드’라고 할 수 있다.

SBIC 프로그램은 소규모 혁신기업들의 초기 창업 및 성장 단계에서의 자본 수요와 전통 자본시장에서의 공급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 금융 프로그램이다. 주로 신기술을 보

118) SEC. 28. (PATENT OMBUDSMAN PROGRAM FOR SMALL BUSINESS CONCERNS) Using available resources, the Director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in the Office a Patent Ombudsman Program. The duties of the Program's staff shall include providing support and services relating to patent filings to small business concerns and independent inventors.

119) SEC. 32. (PRO BONO PROGRAM) (a) IN GENERAL.—The Director shall work with and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s across the country in the establishment of pro bono programs designed to assist financially under-resourced independent inventors and small businesses.

(b) EFFECTIVE DATE.—This sec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장기용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SBA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산업에 전문적인 투자 경험이 있는 유자격 투자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회사(SBIC)에 정부 지불보증 형태의 투자를 하여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SBA는 특정산업을 타겟으로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공채발행(지불보증)을 통해 SBIC를 지원하기 때문에 SBIC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없다. 즉, SBIC 공채를 발행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예산을 배당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SBIC는 SBA의 인가를 받은 민간 벤처투자 펀드로 민간 전문가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는 민간 벤처투자회사라고 볼 수 있다.

## 2) 중소기업혁신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혁신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근거한 연방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NASA, 국방부 등 11개의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후원하는 제도이다. SBIR은 1억 달러 이상의 R&D 예산을 보유한 연방정부 기관 및 산하 기관이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신기술 개발, 사업화, 판로 개척 등에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개발타당성 조사, 사업화 잠재력 제고, 상업화 등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기술개발의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6개월 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되고,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사업화 잠재력 제고를 위해 2년간 최대 75만 달러까지 지원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제품 상업화를 위한 목적으로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 3) 중소기업개발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

한편,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근거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개발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를 통해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에게 경영, 기술지도, 금융 및 창업보육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3. 국가기술정보서비스(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기술이전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국가기술정보서비스(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를 제공할 것을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 제7조(15 U.S.C. § 3704b)<sup>120)</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술정보서비스는 기술이전 시 계약, 합작 투자, 기타 거래 등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한다. 또한 동법 제10조(b)(3)(15 U.S.C. § 3705(b)(3))<sup>121)</sup>에서는 공동연구센터(Cooperative Research Centers)를 설립하고, 기술지원과 중소기업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우수기업 수상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 제20조(15 U.S.C. § 3711)<sup>122)</sup>에서

120) Sec. 7(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a) Powers

(1) The Secretary of Commerce,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Director") is authorized to do the following:

(A) Enter into such contracts, cooperative agreements, joint ventures, and other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all relevant provisions of Federal law applicable to such contracts and agreements, and under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as may be necessary in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th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Service").

(B) In addition to the authority regarding fees contained in section 2 of the Act entitled "An Act to provide for the dissemination of technological, scientific, and engineering information to American business and industry, and for other purposes" enacted September 9, 1950 (15 U.S.C. 1152), retain and, subject to appropriations Acts, utilize its net revenues to the extent necessary to implement the plan submitted under subsection (f)(3)(D) of this section.

121) Sec. 10(Cooperative Research Centers) (b)(3)

(b)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the Centers shall include, but need not be limited to— ≈

(3) technical assistance and advisory services to industry, particularly small businesses; and ≈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혁신메달(Nat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Medal)은 과학자, 엔지니어, 발명가에게 수여하는 명예 훈장으로서, 미국 특허상표청이 수여한다. 메달 수상자는 공공분야와 민간기관을 대표하는 저명인사로 구성된 독자 위원회에서 선발하며, 미국 경제·환경·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 인정받는 명예를 얻게 된다.

또한 동법 제21조에<sup>123)</sup>서 규정하고 있는 말콤 발드리지 국가품질상(Malcolm

122) Sec. 20(Nat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Medal)

(a) Establishment

There is hereby established a Nat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Medal, which shall be of such design and materials and bear such inscriptions as the President, on the basis of recommendations submitted by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ay prescribe.

(b) Award

The President shall periodically award the medal, on the basis of recommendations received from the Secretary or on the basis of such other information and evidence as he deems appropriate, to individuals or companies, which in his judgment are deserving of special recognition by reason of their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promotion of technology or technological manpower for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environmental, or social well-being of the United States.

123) Sec. 21(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a) Establishment

There is hereby established the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which shall be evidenced by a medal bearing the inscriptions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and "The Quest for Excellence". The medal shall be of such design and materials and bear such additional inscriptions as the Secretary may prescribe.

(b) Making and presentation of award

(1) The President (on the basis of recommendations received from the Secretary), or the Secretary, shall periodically make the award to companies and other organizations which in the judgment of the President or the Secretary have substantially benefited the economic or social well-being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their goods or services resulting from the effective practice of quality management, and which as a consequence are deserving of special recognition.

(2) The presentation of the award shall be made by the President or the Secretary with such ceremonies as the President or the Secretary may deem proper.

(3) An organization to which an award is made under this section, and which agrees to help other American organizations improve their quality management, may publicize its receipt of such award and use the award in its advertising, but it shall be ineligible to receive another such award in the same category for a period of 5 years.

≈

(d) Criteria for qualification

(1) An organization may qualify for an award under this section only if it—

(A) applies to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in writing, for the award,

(B) permits a rigorous evaluation of the way in which its business and other operations have contributed to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and

(C) meets such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as the Secretary, after receiving recommendations from the Board of Overseer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2)(B) and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ection.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C) with respect to any organization,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hall rely upon an intensive evaluation by a competent board of examiners which shall review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organization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은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관리 실적이 탁월한 기업에 국가가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을 수상하는 기업은 350명의 전문가들이 4단계의 서류 및 현장 실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수상 기업은 5년 간 기업 경영의 기법과 비결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5. Experimental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Technology<sup>124)</sup>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 제5조(c)(1)(15 U.S.C. § 3704)<sup>125)</sup>에 의해, 관련 주무 장관은 Experimental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Technology 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의 질과 전달력을 향상하기 위한 무선 디지털 기술 획득과 이러한 기술 사용의 증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d, through a site visit, verify the accuracy of the quality improvements claimed. The examination should encompass all aspects of the organization's current practice of quality management, as well as the organization's provision for quality management in its future goals. The award shall be given only to organizations which have made outstanding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their goods or services (or both) and which demonstrate effective quality management through the training and involvement of all levels of personnel in quality improvement.

(2)

(A)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hall, under appropriate contractual arrangements, carry out the Director's responsibilities under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1) through one or more broad-based nonprofit entities which are leaders in the field of quality management and which have a history of service to society.

(B) The Secretary shall appoint a board of overseers for the award, consisting of at least five persons selected for their preeminence in the field of quality management. This board shall meet annually to review the work of the contractor or contractors and make such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ward process as they deem necessary. The board shall report the results of the award activities to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each year, along with it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the process.

124) 미국 연방 차원에서 지급되는 연구 및 개발 보조금을 다른 주 보다 적게 받은 주들을 위한 정책들 중 하나로, 이러한 주들을 minority라 부르면서, 이러한 주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 기술들을 장려 내지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125) Sec. 5(EXPERIMENTAL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TECHNOLOGY) (c) MINORITY SERVING INSTITUTION DIGITAL AND WIRELESS 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

(1) IN GENERAL.—The Secretary shall establish a Minority Serving Institution Digital and Wireless 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 that awards grants, cooperative agreements, and contracts to eligible institutions to enable the eligible institutions in acquiring, and augmenting the institutions' use of, digital and wireless networking technologies to improve the quality and delivery of educational services at eligible institutions.

## 6. 자본시장접근개혁법(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

「자본시장접근개혁법(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의 주된 목적은 신성장기업의 신규기업공개를 촉진하고, 자금조달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경감하여 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히는데 있다. 동법에서는 기업공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과거 재무정보의 양을 줄이고(제102조 (b)), 에널리스트의 당해 기업에 대한 보고서(research report) 발행에 대한 제한을 경감하며(제105조 (a)), 인수금융기관이 기관투자자를 접촉할 수 있는 방식과 범위를 확대하고(제105조 (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서류를 검토(제106조 (a))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공개 요건을 완화하여,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하여 상장을 검토하게 되는 신성장기업들의 경우에도 손쉽게 기업을 공개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 7. 기술이전 서비스

미국은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에 의해 기술이전을 연방정부의 임무로 규정한 이래 각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돌법(Bayh-Dole Act)」에서는 정부 R&D 성과를 연구주체에게 이양하는 것을 규정하고,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에서 연방연구기관과 민간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참여한 연구원이 사업화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이전진흥법(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을 제정하여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경우 계약기업에게 독점실시 권한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26)</sup>.

126) 이길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제도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6-29면 참조.

## 1)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 제15조<sup>127)</sup>에 의해 연방기술이용센터를 설립하고, 연방 연구소에 연구기술응용실(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Office)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술이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보의 공유 및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2) 바이-돌법(Bayh-Dole Act)<sup>128)</sup>

127) Sec. 15(Utilization of Federal technology)

(a) Policy

(1) It is the continuing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ensure the full use of the results of the Nation's Federal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this end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strive where appropriate to transfer federally owned or originated technology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the private sector.

(2) Technology transfer, consistent with mission responsibilities, is a responsibility of each laboratory science and engineering professional.

(3) Each laboratory director shall ensure that efforts to transfer technology are considered positively in laboratory job descriptions, employee promotion policies, and evaluation of the job performance of scientists and engineers in the laboratory.

(b) Establishment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Offices

Each Federal laboratory shall establish an Office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Laboratories having existing organizational structures which perform the functions of this section may elect to combine the Office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within the existing organization. The staffing and funding levels for these offices shall be determined between each Federal laboratory and the Federal agency operating or directing the laboratory, except that

(1) each laboratory having 200 or more full-time equivalent scientific, engineering, and related technical positions shall provide one or more full-time equivalent positions as staff for its Office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and

(2) each Federal agency which operates or directs one or more Federal laboratories shall make available sufficient funding, either as a separate line item or from the agency's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to support the technology transfer function at the agency and at its laboratories, including support of the Offices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Furthermore, individuals filling positions in an Office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shall be included in the overall laboratory/agency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 so as to ensure that highly competent technical managers are full participants in the technology transfer process.

128) 「바이-돌법(Bayh-Dole Act)」은 연방지원연구개발과제에서 산출된 발명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80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연방지원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기관과 민간부분의 협력을 조장하며,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기업이 이루어낸 발명이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상업화 및 공중이용을 촉진하며, 연방지원발명과 관련하여 정부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또한 발명의 남용으로부터 공중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권리를 정부가 획득하도록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과제 결과로 창출된 발명·특허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35 U.S.C. § 200)<sup>129)</sup>. 또한 대학 및 비영리 단체의 협력을 촉진하고, 소기업의 발명을 활성화하며, 발명의 미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정부자금에 의한 발명에 대하여 대학, 비영리기관 및 중소기업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부수탁을 통한 민간운영방식인 정부운영연구소(Government-Owned-Contractor-Operated Facility)의 특허에 대한 배타적 실시권을 설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35 U.S.C. § 203)<sup>130)</sup>, 정부자금에 의한 발명된 제품을 미국 내 제조에 합의한 자에게만 배타적 권리 부여하도록 하고, 다만 미국 내 제조에 합의한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미국 내 제조가 불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미국 내 제조가 아니어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35 U.S.C. § 204)<sup>131)</sup>. 또한 비영리기관이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

129) 35 U.S.C. §200(Policy and objective) It is the policy and objective of the Congress to use the patent system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inventions arising from federally supported research or development; to encourage maximum participation of small business firms in federally support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to promote collaboration between commercial concer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cluding universities; to ensure that inventions made by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mall business firms are used in a manner to promote free competition and enterprise without unduly encumbering future research and discovery;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and public availability of inventions made in the United States by United States industry and labor;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 obtains sufficient rights in federally supported inven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Government and protect the public against nonuse or unreasonable use of inventions; and to minimize the costs of administering policies in this area.

130) 35 U.S.C. §203(March-in rights) (a) With respect to any subject invention in which a small business firm or nonprofit organization has acquired title under this chapter, the Federal agency under whose funding agreement the subject invention was made shall have the right,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s as are provided in regulations promulgated hereunder to require the contractor, an assignee or exclusive licensee of a subject invention to grant a nonexclusive, partially exclusive, or exclusive license in any field of use to a responsible applicant or applicants, upon term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and if the contractor, assignee, or exclusive licensee refuses such request, to grant such a license itself, if the Federal agency determines that such—

(1) action is necessary because the contractor or assignee has not taken, or is not expected to take within a reasonable time, effective steps to achiev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subject invention in such field of use;

(2) action is necessary to alleviate health or safety needs which are not reasonably satisfied by the contractor, assignee, or their licensees;

(3) action is necessary to meet requirements for public use specified by Federal regulations and such requirements are not reasonably satisfied by the contractor, assignee, or licensees; or

(4) action is necessary because the agreement required by section 204 has not been obtained or waived or because a licensee of the exclusive right to use or sell any subject invention in the United States is in breach of its agreement obtained pursuant to section 204.

131) 35 U.S.C. §204(Preference for United States industry)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no small business firm or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receives title to any subject invention and no assignee of any such small business firm or nonprofit organization shall grant to

대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소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35 U.S.C. § 202(c)(7)(D))<sup>132)</sup>.

### 3)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sup>133)</sup>

「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Act)」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에서는 연방연구기관과 민간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참여한 연구원이 사업화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동법 제12조(b)(4))<sup>134)</sup>, 연방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해 기술이전을 의무로 부여하여 근무 평정항목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a)(3))<sup>135)</sup>. 또한 기술이전 연방연구소 컨소시엄(Federal Laboratory Consortium)의 설립과 정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e))<sup>136)</sup>.

any person the exclusive right to use or sell any subject invention in the United States unless such person agrees that any products embodying the subject invention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the subject invention will be manufactured substantially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individual cases, the requirement for such an agreement may be waived by the Federal agency under whose funding agreement the invention was made upon a showing by the small business firm, nonprofit organization, or assignee that reasonable but unsuccessful efforts have been made to grant licenses on similar terms to potential licensees that would be likely to manufacture substantially in the United States or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domestic manufacture is not commercially feasible.

132) 35 U.S.C. §202(Disposition of rights) (c) Each funding agreement with a small business firm or nonprofit organization shall contain appropriate provisions to effectuate the following: ≈

(7) In the case of a nonprofit organization, ≈

(D) a requirement that, except where it is determined to be infeasible following a reasonable inquiry, a preference in the licensing of subject inventions shall be given to small business firms; and ≈

133)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은 모든 연방연구소 연구자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의무화하고 기술이전의 의무를 연방연구소 연구자의 근무평정항목으로 하는 것, 연방기술의 발명자에 대한 실시분배원칙 설정, 정부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발명에 관한 소유권과 라이선스에 관하여 중소기업, 대기업과 사전의 계약을 연구소가 맺는 것이 허락되는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34) Sec. 12(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b) ENUMERATED AUTHORITY.- Under agreements entered into pursuant to subsection (a)(1), a Government-operated Federal laboratory may(subject to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

(4)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any applicable agency requirements and standards of conduct, permit employees or former employees of the laboratory to participate in efforts to commercialize inventions they made while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135) Sec. 4(UTILIZATION OF FEDERAL TECHNOLOGY) (a) RESPONSIBILITY FOR TECHNOLOGY TRANSFER.-Section 11(a) of the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of 1980(15 U.S.C.3710(a)) is amended- ≈

(3) Each laboratory director shall ensure that efforts to transfer technology are considered positively in laboratory job descriptions, employee promotion policies, and evaluation of the job performance of scientists and engineers in the laboratory.

#### 4) 국가기술이전진흥법(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sup>137)</sup>

「국가기술이전진흥법(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에서는 연방연구소와 민간의 공동연구개발(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관하여 사전에 교섭한 이용분야는 민간계약자에게 전용실시권 취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4조(b)<sup>138)</sup>). 또한 연방

136) Sec. 3(ESTABLISHMENT OF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 (e) ESTABLISHMENT OF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

(1) There is hereby established the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ortium') which, in cooperation with Federal Laboratories and the private sector, shall-

(A) develop and (with the consent of the Federal laboratory concerned) administer techniques, training courses, and materials concerning technology transfer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Federal laboratory employees regarding the commercial potential of laboratory technology and innovations;

(B) furnish advice and assistance requested by Federal agencies and laboratories for use in their technology transfer programs(including the planning of seminars for small business and other industry);

(C) provide a clearinghouse for requests, received at the laboratory level, for technical assistance from States and units of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s, not-for-profit organizations including universities, Federal agencies and laboratories, and other persons, and ≈

137) 「국가기술이전진흥법(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은 협동연구 장려와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민간부문으로의 이전 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38) Sec. 4(TITLE TO INTELLECTUAL PROPERTY ARISING FROM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b) Subsection (b) of section 12 of the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of 1980 (15 U.S.C. 3710a(b))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b) ENUMERATED AUTHORITY-

(1) Under an agreement entered into pursuant to subsection (a)(1), the laboratory may grant, or agree to grant in advance, to a collaborating party patent licenses or assignments, or options thereto, in any invention made in whole or in part by a laboratory employee under the agreement, for reasonable compensation when appropriate. The laboratory shall ensure, through such agreement, that the collaborating party has the option to choose an exclusive license for a pre-negotiated field of use for any such invention under the agreement or, if there is more than one collaborating party, that the collaborating parties are offered the option to hold licensing rights that collectively encompass the rights that would be held under such an exclusive license by one party. In consideration for the Government's contribution under the agreement, grants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explicit conditions:

(A)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irrevocable, paid-up license from the collaborating party to the laboratory to practice the invention or have the invention practiced throughout the world by o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In the exercise of such license, the Government shall not publicly disclose trade secrets or commercial or financial information that is privileged or confidential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52(b)(4)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or which

연구소 연구자에 대해서 기술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명이 상업화된 경우에는 먼저 발명자에게 2,000달러를 주고, 로열티 수입의 15%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sup>139)</sup>).

#### IV. 지식재산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관련 규정

미국에서는 매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은 오랜 기간의 경과와 높은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체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1993년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중재 조항을 포함하게 되었다<sup>140)</sup>. 한편,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에서는 파생특허 무효심판(derivation proceeding), 보충적 심사(Supplemental examination), 당사자제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과 같은 소송외적인 방안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would be considered as such if it had been obtained from a non-Federal party.

(B) If a laboratory assigns title or grants an exclusive license to such an invention, the Government shall retain the right--

(i) to require the collaborating party to grant to a responsible applicant a nonexclusive, partially exclusive, or exclusive license to use the invention in the applicant's licensed field of use, on term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or

(ii) if the collaborating party fails to grant such a license, to grant the license itself.

(C) The Government may exercise its right retained under subparagraph (B)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only if the Government determines that--

(i) the action is necessary to meet health or safety needs that are not reasonably satisfied by the collaborating party;

(ii) the action is necessary to meet requirements for public use specified by Federal regulations, and such requirements are not reasonably satisfied by the collaborating party; or

(iii) the collaborating party has failed to comply with an agreement containing provisions described in subsection (c)(4)(B).  
This determination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appeal and judicial review under section 203(2)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139) Sec. 5(DISTRIBUTION OF INCOME FROM INTELLECTUAL PROPERTY RECEIVED BY FEDERAL LABORATORIES)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2) and (4), any royalties or other payments received by a Federal agency from the licensing and assignment of inventions under agreements entered into by Federal laboratories under section 12, and from the licensing of inventions of Federal laboratories under section 207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or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law, shall be retained by the laboratory which produced the invention and shall be disposed of as follows: (A)(i) The head of the agency or laboratory, or such individual's designee, shall pay each year the first \$2,000, and thereafter at least 15 percent, of the royalties or other payments to the inventor or coinventors.

140) Blessing, Marc, Arbitr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12 No2(1996), pp. 191~193.

## 1. 미국 특허법

미국 「특허법」에서는 특허 또는 어떠한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에 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의 발생에 대한 분쟁의 중재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5 U.S.C. § 294)<sup>141)</sup>. 이러한 조항이 부재할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 2.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선출원 특허가 후출원 특허의 파생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파생특허 무효심판(derivation proceeding)을 규정하고 있다(35 U.S.C. § 135)<sup>142)</sup>. 보충적 심사(Supplemental examination)는 특허권자가 특허정보변경 등을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서, 추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심사 요청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행하고 추가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35 U.S.C. § 257)<sup>143)</sup>.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은 재심사제도를 대체하는

141) 35 U.S.C. §294(Voluntary arbitration) (a) A contract involving a patent or any right under a patent may contain a provision requiring arbitration of any dispute relating to patent validity or infringement arising under the contract. In the absence of such a provision, the parties to an existing patent validity or infringement dispute may agree in writing to settle such dispute by arbitration. Any such provision or agreement shall be valid, irrevocable, and enforceable, except for any grounds that exist at law or in equity for revocation of a contract.

142) 35 U.S.C. §135(Derivation proceedings) (a) Institution of Proceeding.—  
(1) In general.— An applicant for patent may file a peti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o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in the Office. The petition shall set forth with particularity the basis for finding that an individual named in an earlier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derived such invention from an individual named in the petitioner's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and, without authorization, the earlier application claiming such invention was filed. Whenever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a peti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demonstrates that the standards for instituting a derivation proceeding are met, the Director may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143) 35 U.S.C. §257(Supplemental examinations to consider, reconsider, or correct information) (a) Request for Supplemental Examination.— A patent owner may request supplemental examination of a patent in the Office to consider, reconsider, or correct information believed to be relevant to the patent, in accordance with such requirements as the Director may establish. Within 3 months after the date a request for supplemental examination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is received, the Director shall conduct the supplemental examination and shall conclude such examination by issuing a certificate indicating whether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request

것으로서, 선행기술의 존재를 이유로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절차이다. 신청기간인 등록일 또는 재등록일로부터 9개월 또는 등록 후 재심(Post-Grant Review) 절차의 종료일 중 늦은 날 중 특허·간행물에 근거한 신규성, 비자명성 결여 등의 신청사유로 진행된다(35 U.S.C. § 311)<sup>144)</sup>.

raises a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144) 35 U.S.C. §311(Inter partes review) (a) In Genera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person who is not the owner of a patent may file with the Office a petition to institute an inter partes review of the patent. The Director shall establish, by regulation, fees to be paid by the person requesting the review, in such amounts as the Director determines to be reasonable, considering the aggregate costs of the review.

≈

(c) Filing Deadline.— A petition for inter partes review shall be filed after the later of either—  
(1) the date that is 9 months after the grant of a patent; or  
(2) if a post-grant review is instituted under chapter 32, the date of the termination of such post-grant review.

### 제3절 유럽

EU는 다른 연합국가보다 일찍이 회원국 간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시스템을 정비해온 바 있다. EU는 각 회원국들 간에 상이한 법령을 적용하는 것에서 오는 실무상·절차상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이에 유럽 공동체 전역에서 실시 가능한 단일시스템, 공동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EU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회원국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별 전략 및 지침들을 제안함으로써, 유럽 각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입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일본의 지적재산추진전략,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기본계획 등과 같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필요에 따라 1-3년의 단기의 실행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sup>145)</sup>. 따라서 발명에 관련된 법제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주로 정책으로서 발명 또는 과학기술을 촉진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EU에서는 유럽산업의 과학기술 및 발명을 활성화하고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꾀할 목적으로 연구·기술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 일환으로 「혁신을 위한 활동 계획(The Action Plan for Innovation in Europe)」을 책정하고 실행해오고 있다. 동 계획은 EU의 혁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① 혁신 문화 진흥, ② 혁신에 필요한 제도 정비, ③ 연구개발과 혁신의 연계를 기본으로 하는 방침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혁신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 훈련, 연구자·발명가·사업가의 교류 증진, 경제와 사회에서 혁신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한다. 혁신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위해, 특허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단순화해야 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유럽의 자본시장과 기술지향형 성장기업의 보호, 기술혁신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등 투자시장의 환경정비 및 조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에 대한 연구개발의 기여를 중시하여 연구개발과 그 성과물의 이용에 대해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책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의 투

145) 김시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113-114면.

자를 촉진하고 기술지향형 기업을 지원,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상호협력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개별 국가 중 영국은 연구개발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법(Science and Technology Act)」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공공연구소, 대학, 기업 등의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등 분야의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영국의 발명진흥정책은 ‘Realising Our Potential, ROP’ 를 통해 과학기술 및 발명을 촉진하여 영국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ROP에서는 영국의 과학·공학·기술의 우위성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과학·공학계, 산업계, 연구지원재단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및 발명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이를 위해 대중의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청(OST) 산하에 과학·공학·기술대중화팀(Public Under standing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Team)을 두고 있다. 영국정부의 과학·공학·기술대중화팀은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 및 공학적 공정,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과학·공학·기술의 역할 등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오는 각종 편익과 함께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결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발명진흥 또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기술 및 발명진흥은 자유경쟁을 통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가가 특별히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및 발명에 대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주정부 협의체(BLK)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교육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법정기관이다. 과학, 발명, 연구에 관한 모든 결정은 동 협의체를 통해야 하며, 과학연구 및 이와 관련한 정책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독일의 과학기술 및 발명 정책은 2000년대 들어 연구개발 및 혁신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하나는 사회적 수요와 시민 참여를 핵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증장기 연구개발과제 기획프로그램’ 인 ‘FUTUR’ 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산학연관 및 노조 등 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로부터의 혁신과제 도출 및 실행 프로그램’인 ‘Partner für Innovation’이다. ‘FUTUR’는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발족한 새로운 과학기술혁신과제 도출 및 기획프로그램으로 기존의 기술중심적 기술예측방법론에서 과감히 탈피한 참여적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의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비전을 도출하는 한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과학기술혁신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Partner für Innovation’은 독일 연구개발 및 혁신관련 산학연관 최고위급 대표들이 합의하에 추진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독일을 혁신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대책과 함께 독일경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분야와 업종의 단기적 연구개발·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한 위로부터의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 I. 발명교육 관련 규정

발명교육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은 EU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및 개별국가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WIPO는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WIPO 산하에 지적권교육기관으로 WWA(WIPO World wide Academy)를 설치하였다. WWA는 인터넷 및 기타 멀티미디어를 통한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심포지움 개최, 세계 각국 대학과 연계한 공동학위과정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1. WIPO 발명교육 정책

WIPO는 발명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지만, 과학·정보기술, 혁신과 창조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방식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부터 산하 지적권교육기관인 WWA를 통해 창의성 및 혁신을 증대할 목적으로 발명가, 사업가, 지식재산 관련 기관 종사자, 학생 및 교사, 일반 대중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개발 프로그램, 교육기관 프로그램, Summer school, 원격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전문개발 프로그램(Professional development)은 매년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인식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각 국가의 정부 대학, R&D 기관 관계자 및 지식재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 고급 교육과정, 특허 절차에 대한 교육과정 등 총 17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기관 프로그램(Academic Institutions Program)은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재산 고등 교육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특정국의 대학원 내에 정식 교과과정으로 채택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WIPO는 그 국가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의 후 대학교에 정식 교과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교과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을 한다. 따라서 학생, 연구자, 교사, 정부 관계자 등은 본 프로그램의 정식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받게 된다. 교과과정은 개설된 대학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 또한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은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존하며, 사례연구, 그룹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과과정 중 특정 지역의 지식재산 기관 또는 민간기업과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각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활용 및 이해를 통한 지식재산의 장려를 목적으로 개설된 Summer school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 및 지식재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의, 사례 연구, 그룹 토론 및 아이디어 공유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학생 및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각국의 지식재산 비교 연구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원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온라인 교육은 일반과정과 고급과정으로 나뉘어 최대 7개 언어로 제공되며, 저명한 지식재산 교수들과 온라인의 피드백 등을 통해 쌍방향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역사, 정의 및 보호 범위, 지식재산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까지 40여 개국에서 약 350,000명이 수강하였다.

## 2. 개별 국가

영국의 발명교육은 국가교육과정평가원(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 QCA)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반적인 교육제도 아래, 발명교육은 단순히 수학이나 과학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단계별로 디자인과 기술(Design & Technology)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디자인과 기술(Design & Technology) 과정은 일주일에 3~4시간 진행되며 학교 전체 시간표의 약 10%를 차지한다. 디자인과 기술(Design & Technology) 과정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현안을 학생들이 정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해결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직접 실험 크기의 모형을 제작하고 친구들과 교사들의 평가를 통해 추후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환한다.<sup>146)</sup>

정부차원에서는 영재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발명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발명으로만 그치지 않고 창업으로 연결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교육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발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 관리 및 지식 교류를 증진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영국의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신규 기업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Fast Forward Competition’을 개최하고, 대학생의 지식재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지식재산 경연대회(Students IP Enterprise Awards)’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에게 지식재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4~1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Cracking Ideas competition)’를 점토애니메이션의 제작사인 Aardman Animations社와 함께 개최하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기상천외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연령별로 나누어 시상한다. 이처럼 영국은 영국 지식재산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명경진대회를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에서 특허청(DPMA)을 하나의 교육관청으로 하여 발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대학생, 전문가 대상의 전국단위 발명교육을 수요자의 수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워크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수년간 독일 특허청은 ‘발명

에서 특허까지(From the invention to patent)’라는 워크숍을 학생 및 전문가에게 제공하고 있다. 동 워크숍은 피교육자의 구체적 요구사항과 사전 지식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대학이나 특허정보센터에서 개최되며 주로 대학생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교육 대상자의 수준을 더욱 하향 조정하여 중·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세미나를 지방 교육청과 협력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중·고등학교 고학년 학생 및 교사를 염두에 두고 교육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다. 동 세미나는 독일 특허청의 강사파견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교육과정에 따라 주관기관인 독일 특허청, 특허정보센터, 지방정부 교육청 또는 중·고등학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독일 특허청은 특히 각 교육과정에 특허청의 직원을 자비로 파견하고 있다. 워크숍의 내용은 발명의 기본 개념, 심사절차, 특허정보 검색 및 권리의 보호로 이루어지고, 도우미의 조력으로 개별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실무에서 경험할 실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II.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

유럽 특허청(EPO)에서는 국제특허문헌센터(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 IPADO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 검색을 제공 및 관리하고 있다. 국제특허문헌센터의 설립 근거는 「유럽 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은 국제특허문헌센터 자체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다. 국제특허문헌센터는 약 40개국 이상에서의 특허 정보 및 출원 정보,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럽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정보화 정책은 기술 문헌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즉 완전성, 정확성, 신속성, 적시성, 관독성, 문서 인식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경우 국제적 연합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주요 업무형태별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으며, 데이터 관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관리지원 서비스실(Office of 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s and General Assembly Affairs)에서 언어서비스와 공개공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146) 이병욱, 「창의발명인재 육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특허청, 2012., 76면.

## 1. 개별 국가

영국은 영국 지식재산청 공동계획(UKIPO Corporate Plan)을 통해,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를 보다 강력히 구축하여 지식재산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시대에 맞춰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에서 정보 수집 및 활용 등 정보화 구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특허정보센터(Patentinformationszentren, PIZ)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기술 정보, 정보 검색 관리 등 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허정보센터에 대해서는 「특허법(Patentgesetz, PatG)」 제35조에서 제시하고, 「PatInfoZBek(Bekanntmachung der zur Entgegennahme von Patent- und Gebrauchsmusteranmeldungen befugten Patentinformationszentren)」공고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허정보센터는 전국의 주요 도시 25곳에 위치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출원절차 등 포괄적인 정보제공과 문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특허정보센터의 운영은 대학, 상공회의소 등에서 이루어지며, 독일 특허정보센터사업협회(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Patentinformationszentren e. V., PIZnet)로 편제되어 있다.

## III. 산업재산권 서비스 관련 규정

EU는 창의적인 기업이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술혁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제도는 Horizon 2020이다. EU는 세계 금융 위기로 초래된 저성장 경제와 실업률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3대 목표<sup>147)</sup>와 7대 전략<sup>148)</sup>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성장동력 정책인 ‘유럽2020전략’을 발표하였고, 7대 전략 중 혁신연합은 EU가 직면한 기후 변화 에너지 등의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147) Smart, Sustainable, Inclusive Growth.

148) 유럽의 디지털과제, 혁신연합, 청년교류확대, 자원효율적인 유럽 세계화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 새로운 기술과 고용을 위한 의제, 빈곤대책을 위한 유럽 플랫폼이다.

과 혁신 정책에 대한 것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 혁신연합 내에 포함되어 ‘연구중심의 Framework Programme 7(FP7)’, ‘혁신중심의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CIP)’,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EIT)’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3개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의 필요성과 구성원이 명칭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오며 따라, 3개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으로 2014년부터 통합하고 연구에서부터 혁신에 이르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원하는 유럽투자자기금(EIF) 및 JEREMIE 프로그램이 있으며, 매년 사회·경제기술 분야에서 진보를 이끌어낸 발명가에게 수상하는 유럽 발명가 상(European Inventor Award)을 시상하고 있다.

## 1. EU Horizon 2020

EU 집행위원회는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전략인 EU ‘Horizon 2020-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약 800억 유로를 투자하여, ① 과학기술의 탁월성 확보, ② 산업 리더십 창출 및 경쟁력 제고, ③ 사회적 현안 해결의 3대 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탁월성 확보’ 분야는 유럽 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에 150억 유로를 투입하여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등 과학 기반의 탁월성 확보에 총 278억 유로(미래 신기술에 35억 유로, 마리퀴리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65억 유로, 유럽 연구 인프라 구축에 28억 유로 등)를 지원한다. ‘산업 리더십 창출 및 경쟁력 제고’ 분야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리더십을 창출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203억 유로(역량 및 산업 기술 리더십 창출에 156억 유로, 금융구제에 40억 유로, 중소기업 혁신에 7억 유로)를 배정하면서 중소기업 주도의 연구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사회적 현안 해결’ 분야는 EU의 정치적 결속을 다지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와 관련 유럽의 주요 6가지 현안<sup>149)</sup>을 해결하는 데 359억 유로를 투입한다.

Horizon 2020은 유럽의 연구·혁신 자금지원 정책에 접근하고 있으며, 연구자·기

149) ① 보건, 인구지리적 변화 및 웰빙. ② 식품 안전, 지속가능 농업, 해양 연구 및 바이오 경제. ③ 안전하고 청결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④ 친환경 스마트 통합교통. ⑤ 기후 변화, 자원 효율성 및 원자재. ⑥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사회

업체에 전 범위에 걸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참여 및 확산에 대한 규칙(Rules for Participation and Dissemination)’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의 연구부문 우수성을 강화하고, 국제 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유럽의 대외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에 걸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 1) 유럽 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

유럽 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는 EU에 의해 설립되어 선진적인 연구를 위한 최초의 재정지원기구로서, 매년 유럽을 기반으로 한 5년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국가와 나이의 제한 없이 창의적이며 최고 수준의 연구원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5년 현재까지 유럽 연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4,500명 이상의 연구원을 지원하였으며, EU 연구 및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 따라 1천 3백만 유로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유럽 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POC)<sup>150)</sup>을 통해 발명을 제품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POC 연구보조금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동 보조금을 통해 많은 연구원들이 기술 개발을 활성화 하고 개발 상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게 하며, 다른 발명과의 경쟁 촉진 및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 내고 있다.

## 2. 기술혁신 금융지원제도

EU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업무는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 EIF)과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등 두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두 기관은 유럽투자은행 그룹(European Investment Bank Group, EIBG)을 형성하고 있으며, EIBG는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용 정책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 중요한 임무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이다.

150)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概念證明)이란 제품, 기술, 정보 시스템 등이 조직의 특수 문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다는 증명 과정을 말하며,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을 위해 사용된다., 정보통신용어사전(<http://word.tta.or.kr/terms/terms.js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1) 유럽투자기금(EIF)

유럽투자기금(EIF)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업무와 벤처캐피탈에 대한 모태펀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투자기금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선별해 시장원리에 의한 간접지원, 초기단계 벤처투자 지원하여 경제성과 수익성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EIF는 중소·벤처기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반드시 금융중개자(벤처캐피탈 혹은 은행)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스스로 중소기업을 심사·선별하지 않으며, 보증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부 판정은 민간은행이 수행한다. EIF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펀드와 창업보육 펀드를 선별하여 이들 펀드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역할을 수행한다. EIF의 모태펀드는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럽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운용하여, 공공 지원과 영리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며 신용보증 업무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업무 모두에서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다.

## 2)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and Medium Enterprises(JEREMIE)

JEREMIE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EU 집행위원회와 EIB, EIF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럽 지역 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구조기금을 포함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중소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공급망 상의 중소 업체들 역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 3. 유럽 발명가 상(European Inventor Award)

EU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가 공동 주최하고, EPO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매년 사회·경제·기술적 진보에 기여한 발명가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수상 후보자는 유럽연합 회

원국의 특허청, EPO 심사관, 그리고 일반 대중의 추천을 통해 선발되고, 최종 수상자는 저명한 국제 심사위원단(prominent international jury)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매년 개최되는 본 발명가 상은 평생업적 부문, 산업부문, 중소기업 부문, 연구부문, 비유럽국가 부문으로 나누어 경쟁한다.

#### 4. 기술이전 서비스

유럽연합(EU)은 경쟁법과 관련된 기술이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이전을 장려하고자 기술이전포괄면제규칙(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 TTBER)과 그 가이드라인(Technology Transfer Guidelines)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이전포괄면제규칙은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1조에 의해 기술이전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 EU기능조약 제101조는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관점에서 시장 내 경쟁을 보호하고자 경쟁제한 협약(Anti-competitive Agreements)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때 지식재산권법이 권리의 배타적 사용을 승인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술 등 지식재산권 이전이 TFEU 제101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 이전이 불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두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촉진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EU는 포괄면제규칙(Block Exemption Regulation, BER)상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이전에 대해 제101조 적용을 면제하여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고 있다.

#### 5. 개별 국가

영국은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스핀오프 기업(research-based spin-offs)<sup>151)</sup>을 육성하기 위해 University

151) 스핀오프 기업이란 벤처기업, NTBFs(New Technology - Based Forms),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범주에 속하며 주로 연구소, 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 연구부문으로부터 스핀오프되기 때문에 공공 스핀오프 기업(public spin - offs)이라고도 한다. 국가혁신시스템에 있어서 연구기반 스핀오프 기업이 갖는 의미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기초과학 성과의 상업적 활용을 증대시키고 공공부문의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기업에 확산시키는 데 있다. 기업에 라이선스나 지적재산권을 이전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비해 스핀오프방식은 연구자에 내재되어 있는 암묵적 지식을 연구자 자신이 직접 기업화하기 때문에 효과적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제에 있어서 지식집약도를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Challenge Fund를 설립하고 각 대학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각 대학은 이들 자금을 활용하여 스핀오프기업 형성에 있어서 기술의 시장성검토, 사업화를 개시함에 있어서의 시드머니 등에 활용하게 된다. 각 대학의 학부, 연구소 등의 취합된 연구활동단위별로 연구업적을 평가하고, 이 평점에 의거하여 자금이 각 대학에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처음에는 순수한 학술연구만을 평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산학연계활동자세를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UK High Technology Fund와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를 통해 발명을 통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지원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UK High Technology Fund는 무역산업부(DTI)가 발간한 백서를 근간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영국정부의 최초 기업투자 펀드(equity fund)이다. 주로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와 해외의 벤처캐피탈을, 정부가 공동 출자금형태로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첨단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초기 및 창업단계의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는 Fund of Fund 방식으로 투자되며, 모태펀드로서 초기단계의 기술기반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유형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자금을 투자한다. 투자수익 배분 시 정부에 할당되는 투자 수익률을 제한하여 민간 투자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금 유치를 도모한다.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는 또한 무역산업부(DTI)의 백서를 근거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50만 파운드 이하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요하는 초기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부족을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정부 및 민간부문의 투자와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으로서, 단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치 않은 중소기업에게 벤처캐피탈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벤처캐피탈 펀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소규모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중소기업투자에 의한 수익실현을 경험하게 하여 민간부문의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장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온라인 특허정보 및 문서 서비스(on-line patent information and document service, Ipsum)’ 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는 공개된 특허출원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준수기간 및 등록된 특허의 라이선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공개된 특허출원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Ipsum 서비스

서 대학 및 공공 연구소의 연구원이 직접 기업을 창업하는 스핀오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핀오프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성과를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기술이전 메커니즘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를 통해 출원된 특허에 대해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적으로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인 성명 등의 세부정보를 포함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절차적인 면에서 더욱 간단해진다. 특허권이 부여되어 라이선스가 체결된 날짜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상에 표시하여, 특허권자가 누구에게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며, 동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명확하게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가 가능함을 알 수 있어 특허권자에게 문의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협상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 경제노동부(BMWA) 산하의 KfW(정책금융기관)에서 European Recovery Program을 통해 기금을 창업단계의 개인을 비롯한 기존의 기업에까지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과 같은 부분에 자금을 공급한다. 은행이나 벤처캐피탈과 같은 민간투자자들에게 리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술혁신기업들에게 융자나 자본참여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비즈니스 엔젤이나, 은행, 벤처캐피탈, 투자회사와 같은 민간 투자자로 한정되며 KfW의 허가된 업체로 제한된다. 또한 「PatInfoZBek(Bekanntmachung der zur Entgegennahme von Patent- und Gebrauchsmusteranmeldungen befugten Patentinformationszentren)」공고에 의해 설립된 특허정보센터(PIZ)에서 발명가들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 및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V. 지식재산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관련 규정

EU에서의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관련된 법규에는 2008년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민사 및 상사 조정의 특정 측면에 대한 지침(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하 ‘EU 조정지침’ 이라 함)과 2013년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에 대한 협상상의 증재/조정제도가 있다.

##### 1. 2008년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민사 및 상사 조정의 특

#### 정 측면에 대한 지침(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EU 조정지침은 조정의 사용을 장려하고 조정과 사법절차의 균형적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대안적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 지침 전문 (7)). 동 지침의 적용대상은 관련 적용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제량에 맡겨져 있지 않는 권리의무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경 간 민사상 분쟁이다(동 지침 1(2)조). EU 조정지침 4(1)조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수단을 통하여 조정자와 조정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한 자발적 행위규약의 개발과 동 규약에 대한 지지를 장려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조정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효과적인 질의 통제장치를 장려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보호 분야에서 유럽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관여하는 법원 이외의 기관이 그들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질적 기준을 확립하는 권고를 채택하였다. 조정자나 동 권고의 범위 내에 있는 기관은 그 원칙들을 존중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동 권고의 원칙들을 존중하는데 고려할 법원 밖 제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여야 한다(동 지침 전문(18)).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조정의 사용을 권유할 수 있다. 즉, 법원의 모든 판사는 적절하다고 고려하면 사법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당사자들로 하여금 조정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동 지침 5(1)조). 더욱이 법원은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당사자들이 조정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물론 조정의 개시에 대한 결정은 분쟁당사들에게 달려 있다(동 지침 전문 (13)). 한편, 회원국에서 집행력이 있는 조정의 결과인 합의의 내용은 적용가능한 공동체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에서 승인되고 집행가능하다고 선언되어야 한다(동 지침 전문 (20)).

##### 2. 2013년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에 대한 협상상의 증재/조정제도

한편, EU에 통합특허법원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에 의하여 통합특허법원의 부설로 특허중재조정센터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중재조정규칙을 제정하게 된다(동 협정 제35조 제3항). 또한 동 협정 제35조 제2항과 제79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통합특허법원에서의 소송절차 중에 그들의 사건을 합의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으며 그 합의는 법원결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동 협정에서는 합의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특허는 합의의 방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고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통합특허법원절차규칙(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제1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합의의 조건을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특허의 취소 또는 특허의 제한에 합의하도록 의무지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WIPO 중재조정센터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94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이라는 믿음으로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설립하였다. 이후 중재조정센터는 분쟁해결 및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중재, 조정, 신속중재, 전문가 결정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여 지식재산, 기술,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국제적이고 중립적이며 지식재산에 특화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식재산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중재조정센터는 분쟁당사자들이 사전에 WIPO 조항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현존하는 분쟁을 WIPO 절차에 회부하도록 도우며, 중재조정센터가 보유하는 지식재산 분쟁에 정통한 1000여명의 중립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당사자들이 조정인 또는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분쟁당사자와 중립인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번역, 통역, 비서업무 등의 보조 서비스를 주선한다.

### 4. 개별 국가

영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운영형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민간 대체적 분쟁해결기구가 창설되어 민관협동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헌법부(Department of Constitutional Affairs, DCA)의 관할 하에 정부출연 기관으로 국가조정지원라인(National Mediation Helpline, NMH)을 설치하였는데 여기에 민간협력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2년 정부지출심의백서(the Government's 2002 Spending Review White Paper)에 의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헌법부의 중요한 전략적 임무가 되면서 활성화되었다.

영국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민사절차법(Civil Procedure Rules, CPR)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새로운 절차법으로서 법원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최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① 당사자들이 동등한 선상에 있을 것을 보장하는 것, ② 비용을 절감하는 것, ③ 다음에 비례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 ④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을 보장할 것, ⑤ 다른 사건에 자원을 배분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법원 자원의 적절한 몫을 배분할 것 등을 포함한다(동법 1). 법원은 당사자들이 조정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재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만약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의 조정을 거절하는 경우 급전적인 패널티를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동법 1.4(2)).

독일은 분쟁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사법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당사자들에게 부과하지 않는데 2000년 발효된 민사소송시행법(Act introducing the Code of Civil Procedure, EGZPO) 15a에 따라 특정 유형의 분쟁의 경우 공식적인 법원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적 조정을 이용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또한 동법 278(5)에 따라 조정절차가 성공하지 못하면, 동 절차는 소송절차로 전환된다. 한편, 독일에는 전통적인 소송외의 분쟁해결제도로 화해제도가 있는데, 변호사화해제도의 활용도가 높다. 법원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 외에도 행정기관이나 민간에 의하여 주도되는 형태로 조정이나 화해도 활용되고 있다<sup>152)</sup>.

152) 박노형, 「유럽연합의 대체적분쟁해결(ADR)제도에 대한 연구」, 법제처, 2008., 66면.

## 제4절 시사점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 제정 당시, 발명품에 대한 재산화가 쉽지않아 발명을 하더라도 집안이 망하고, 만약 발명품을 상업화하기 위해 시제품을 만들고 상품화를 하면 극단적으로 본인, 친가, 외가 등 3족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발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sup>153)</sup> 따라서 일단 발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요한 정책 중 하나였으며, 발명의 진흥을 통한 양적인 확장을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였다. 이에 발명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기술경쟁사회에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장 여건에 부응하여, 발명의 진흥을 통해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의 발명분위기를 진작시키고,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발명성과의 신속한 권리화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을 제정하였다.<sup>154)</sup>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은 대부분 18세기 전후로 「특허법」을 제정하였기에<sup>155)</sup>, 오랜 기간 발명에 대한 인식이 쌓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적 발전 역시 상당히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은 발명을 통한 재산적 가치 확대가 어렵지 않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발명을 위한 환경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특히 발명은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기술·물질·기구 등에 대한 창조이기에 발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 주요국은 발명 자체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의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좀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구 주요국에 비하여 산업발전이 늦었던 일본의 경우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도입·흡수 및 응용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일본의 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외국에서의 기술도입 보다는 자체적인 능력을 갖춘 첨단과학기술에 바탕한 신산업 창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학기술 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56)</sup> 즉, 해외 주요국의 발명 관련 환경은 직접적으로 발명의 진흥을 도모하기 보다는 발명에 선제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규 및 정책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 및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사업화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아

무리 좋은 기술 및 발명이 존재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업화를 거쳐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기술 및 경제적 환경과 해외 주요국의 환경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각국의 관련 법제의 체계와 정책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외 주요국의 경우 발명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각각의 기술적 발전의 요구가 정책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발명진흥을 위한 통합적인 법률의 제정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발명진흥법」의 각 규정의 내용이 「발명진흥법」 제정당시에 비하여 발명 자체의 활성화가 갖는 비중이 낮아지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화 및 서비스화 등 발명의 산업화 영역에 해당하는 규정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의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법적 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153) 발명진흥법안 소관위 회의록,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1994.2.), 30면 참조.

154) 발명진흥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1994.2.), 2면.

155) 송영식 외6인 공저,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87면 참조.

156) 정성훈,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49면 참조.

## 제4장 발명진흥법 법체계 논의 분석

### 제1절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 관련 법체계 논의

#### I. 교육 관련 규정 현황

##### 1.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은 발명품의 생산·수출·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1958년 제정되었던 발명보호법이 폐지되고 1994년 새로이 제정된 법으로서, 「발명진흥법」상의 교육은 발명에 대한 교육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 1) 발명 교육

발명 교육에 관한 조문으로, 제6조 제5호는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발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되고 있으며, 제7조는 발명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9조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 발명 교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3조 제1항 제4호는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 교육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되고 있다.

제6조는 발명에 대한 인식향상과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되고 있는데, 동조 제5호는 발명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명시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발명 관련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다.<sup>157)</sup>

157)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제7조 제1항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대중화 촉진 정책<sup>158)</sup>이 일반 국민에 대하여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을 인지하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과 생활화를 증진시키는 교육, 즉,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기술개발 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발명교육 활성화 및 기술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시책에 ① 발명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③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 지원, ④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⑤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⑥ 그 밖에 발명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정부는 학생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각 급 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9조는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발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인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발명교육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리, 지도 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53조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동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34면.

158) 특허청은 '지식재산 대중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발표함. '지식재산 대중화'란 지식재산이 일부 전문가 또는 대기업의 영역에 한정된 문제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모든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창출·활용하는 등 지식재산이 국민의 일상에 보편화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행정 선진일류화 및 지식재산 대중화로 국민소득 4만불시대 연다", 2012.8.27., <자료원: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atmenu=m02\\_01\\_01\\_02](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atmenu=m02_01_01_02)>.

## 2) 산업재산권 교육

산업재산권 교육에 관한 조문으로, 제6조 제5호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 제1호는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산업재산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6조 제2항 제2호는 특허청장이 사용자등의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되고 있다.

제6조는 발명에 대한 인식향상과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되고 있는데, 동조 제5호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명시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다.<sup>159)</sup>

제7조 제3항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대중화 촉진 정책이 일반 국민에 대하여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을 인지하고, 학생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 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8조는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 개발 및 활용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배경<sup>160)</sup>을 토대로 2002년 신설되어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의 개발과 여성발명인력의

159)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34면.

160) 정부에서 직업훈련보다 높은수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또는 지원과 관련해 시행한 초기 정책 중 하나가 '여자대학교 연구기반 확충사업'이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네트워크 취약, 인프라 부족 등으로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자원 획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자대학교의 상황개선을 목표로 했다. 즉 연구비지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여자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연구활동참가경험을 쌓게 하자는 것이다. 여성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여러형태의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9~2000년이다. 이 시기에 여성특위 운영, 여성발전기금조성 등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여러시도가 이루어진것이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촉진한 배경이 되었다.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교육, 이공계 여학생 장학금 지급, 여성의 IT능력 향상, 여성연구자들만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2항 제1호는 지원시책에 여성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제23조는 지역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 도모 등 지역의 지체권 창출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sup>161)</sup>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중 하나로서, 동조 제2항 제2호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제26조는 연구소 및 기업 등이 특허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특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동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 수립 시,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53조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동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기타 관련 법규

### 1) 지식재산 기본법

위한 연구기금 설치, 멘토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WISE 프로그램 도입 등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업은 현재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하나로 통합된 체계를 이루었다기보다 산발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정책간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고 종합기획에 따른 정책실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침내 2002년 12월에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은경,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여성정책포럼」 Vol.04, 2003.12.15., <출처: <https://www.kwzri.re.kr/plfrmpbtnView.kw?jssessionid=grTSLMkjeUAlOpCAUWNJY1dRm8JdEsW9vgHZJuKx7D3n0PErQowzn2RsqAgAaNbU?currPg=24&sg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2&cmsCd=CM0015&pnum=6&cnum=6&src=&srcTemp=&ntNo=108>>.

161)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162면.

「지식재산 기본법」은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된 법으로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16조, 제29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두고 있다.

제16조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해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9조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에 지식재산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33조는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 교육 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지식재산 특성화 학교 육성 및 관련 학과 또는 강좌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34조는 정부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되고 있다.

## 2)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 제정된 법으로서, 발명영재 교육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동법 제1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 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특허청은 발명영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II. 교육 관련 사업의 현황

### 1. 개요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지원, 지식재산 융합교육, 지식재산교수 T3 프로그램, 로스쿨 IP 실무 클리닉, 발명(영재)교육의 문화 조성, 발명교원 육성, 지식재산 스마트교육사업(국가지식재산교육 포털), IP-Campus,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발명·특허 특성화고,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발명교육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 2.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지원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지원 사업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발명진흥법」 제6조 제5호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부 및 대학원에 지식재산 강좌개설·운영을 지원하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식재산 강좌개설 및 운영을 희망하는 대학(원)<sup>162)</sup>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전문강사의 오프라인 강의,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등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도 609개의 지식재산 강좌를 운영하여 지식재산 교육의 확산 및 전공지식에 지식재산 역량을 겸비한 지식재산 창출인력을 양성하였다.<sup>163)</sup>

표 4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지원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강좌	108개	131개	165개	207개	266개	383개	609개

표 5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적 및 내용
창의적 사고 · 창의적 기초설계	이공계 공통 교과목(창의적 사고, 창의적 기초설계)에 지식재산 개요 등 일반적인 교육내용을 포함 · 운영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저작권) 개요 및 특허정보조사, 특허명세서의 이론 · 실습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을 이해하는 능력 함양

162)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

163) 발명진흥회 사업담당 부서 확인(2015.3.26.).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분석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프로젝트를 통한 실무능력 배양
창업과 지식재산	기술 창업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작성 등 실전전략 수립능력 함양
특허관점의 R&D 전략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제품을 특허의 집합체로 인식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IP-R&D 전략수립 방법론 교육
스마트폰 앱과 지식재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보호, 침해사례 등 교육
건축과 지식재산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교육
의약·생명공학과 지식재산	의약·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특허동향, 특허정보검색 및 분석방법, 특허명세서 작성 등 교육
경영과 지식재산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력인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예술과 지식재산	지재권 이론 교육과 상표·디자인 검색·분석 등의 실무지식을 교육하여 예술 창작물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전략적 활용능력 함양
지식재산 특강	학습내용과 강의지원 주치는 담당교수와 협의를 통해 운영

### 3. 지식재산 융합교육

지식재산 융합교육 사업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발명진흥법」 제6조 제5호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은 학제 간 교류 정도가 낮고 이론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학제 간 벽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특허출원·조사분석 등 단편적 실무기술 획득 외에 복합적 상황(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육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지식재산 중심의 다학제 간 융합교육을 지원하여 신사업 창출 등 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공학계열을 포함하여 최소 4개 이상의 다학제 융합교육이 가능한 4년제 대학(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 운영을 지원한다. 2014년도 64개 대학 188개 강좌에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포함한 강좌 지

원 및 표준교육과정 교재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경희대, 금오공대, 인하대 등 3개 대학 융합교육을 추진하여 우수 결과물을 창조경제타운(creativekorea.or.kr)에 연계한 바 있다.<sup>164)</sup>

표 6 대학 융합교육 예



### 4. 지식재산교수 T3 프로그램

지식재산교수 T3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발명진흥법」 제6조 제5호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식재산권 창출의 핵심인력인 대학 교수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별 자립형 지식재산 강의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단기집중 교육과정, 찾아가는 교육과정, 주요학회 학술대회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단기집중 교육과정은 수준별 집체교육으로 연 4회, 8개 세부과정으로 운영되며, 찾아가는 교육과정은 대학 방문교육으로 2개 대학을 선정하여 최대 16시간 교육을 지원한다. 주요학회 학술대회 지원은 5개 학술대회를 선정하여 지식재산 세션 운영을 지원한다. 신규 참여교수 확보를 위한 대외홍보 강화로 참여 대학이 2013년도 64개 대학에서 2014년도 88개 대학으로 증가하였고, 효과 및 참여도 높은 교육 중심의 과정 개편으로 단기집중 교육 수료 교수가 2013년도 268명에서 2014년도 303명으로 증가하였다.<sup>165)</sup>

표 7 단기집중 교육과정 연간일정

단계	과정명	프로그램
초급	지식재산권 초급	창의적 연구개발 기법(Triz) 및 지식재산권(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입문 * 직무발명제도, 영업비밀, IP R&D 내용 포함

164) 발명진흥회, 2014년 사업실적보고서, 2015.2.23., 10면.

165) 발명진흥회 사업담당 부서 확인(2015.3.26.).

중급	유망 지식재산권 창출전략	강한 특허 창출 전략, 회피 설계 방안 소개 (팀 프로젝트: 청구항 비교 분석 표 작성)
중급	특허정보조사 · 분석	특허검색 DB 소개 및 활용 방법, 특허기술 검색식 작성 노하우, 특허 data 가공방법 및 특허 분석 방법 (개인 프로젝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고급	강한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특허요건, 명세서의 개요,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및 분석, 주요 거절이유 소개 및 대응방법(개인 프로젝트: 특허 청구범위 작성)
초급	지식재산권 초급	창의적 연구개발 기법(Triz) 및 지식재산권(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입문 * 직무발명제도, 영업비밀, IP R&D 내용 포함 (개인 프로젝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중급	해외 특허 제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특허제도
중급	특허기술 가치평가 및 라이선싱	특허기술 가치평가 방법 소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팀 프로젝트: 특허기술 가치평가) (개인 프로젝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고급	지식재산 마스터 과정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교수법 소개 (개인 프로젝트: 한 학기 분량 강의안 제작)

## 5. 로스쿨 IP 실무 클리닉

로스쿨 IP 실무 클리닉은 「발명진흥법」 제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로스쿨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고자, 로스쿨 IP 실무 클리닉 운영을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로스쿨 대학원생이 지재권 전문가의 지도하에 지재권 관련 자문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로스쿨 지식재산권 교육 활성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특허법원과 공동으로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20개 로스쿨 168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sup>166)</sup>

## 6. 발명(영재)교육의 문화 조성

발명(영재)교육의 문화 조성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발명영재 선발지원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1) 발명영재 선발지원

발명영재 선발지원은 시·도 교육청별 발명영재 선발전형 지원을 위해, 발명영재 특성요인에 기초한 선발도구의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으로, 발명영재인상 및 핵심요인 연구, 발명역량(학문적성) 검사 관련 문항 개발, 발명영재 관찰추천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개발·보급, 발명영재 지도교사를 위한 전달연수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필형 검사지 및 심층면접지를 개발완료 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급하였다.<sup>167)</sup>

### 2)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은 발명영재학급 및 발명교실 등에서 활용할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기법’ 교육을 위한 발명영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며, 트리즈 이론(40가지 아이디어 발상기법)에 따른 문제해결 중심의 콘텐츠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약 20여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명교육 교수학습지원센터(www.ip-edu.net)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166) 발명진흥회, 2014년 사업실적보고서, 2015.2.23., 10면.

167) 발명진흥회 사업담당 부서 확인(2015.3.26.).

## 7. 발명교원 육성

발명교원 육성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4대 권역에 발명교육 강좌를 운영 중인 교·사대 위주로 선정된 대학이 발명교원 육성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교사, 현직교사 대상 발명교육 강좌를 운영한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는 학기 중에 발명교육 정규교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며, 권역내 예비·현직교사 대상으로는 학기 또는 방학 중에 발명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교원연수를 위해 발명교원육성 거점대학 및 발명교육센터의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발명·특허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청 지정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당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발명교육 교수역량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발명·특허 특성화고 교원 31명 및 중소기업청 지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원 79명을 대상으로 총3회에 걸쳐, 특허정보조사분석, 직무발명 이론,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기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sup>168)</sup>

## 8. 지식재산 스마트교육사업(국가지식재산교육 포탈)

지식재산 스마트교육사업은 「발명진흥법」 제6조 제5호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 국민의 다양한 계층에게 발명 및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기업체, 연구소, 연구원, 초중고 학생, 발명교사, 대학생, 개인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지식재산 전문분야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약 46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sup>169)</sup> 제공되는 콘텐츠는 지식재산 권리화, 보호, 활용 형태로 단계별로 제공이 되며, 학점은행제 시스템 구축으로 2015년부터는 지식재산학 관련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을 오픈하여 원격학점 은행을 실시할 예정이다.<sup>170)</sup>

국가지식재산교육 포탈은 지식재산 교육 사업안내 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종합창구인 AD center, 지식재산 온라인 학습 공간 및 콘텐츠 제공 창구인 Learning

168) 발명진흥회, 2014년 사업실적보고서, 2015.2.23., 9면.

169) 발명진흥회, 2014년 사업실적보고서, 2015.2.23., 11면.

170) 발명진흥회, 2014년 사업실적보고서, 2015.2.23., 11면.

Center, 지식재산관련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 서비스인 Story center로 구성되어, e-러닝을 통해 지식재산 맞춤형 인재육성 및 전 국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9. IP-Campus

IP-Campus 사업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4조 제4항 및 「발명진흥법」 제6조 제5호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내기업 및 연구소의 지재권 교육이 필요한 특허담당자, 기술개발자, 연구원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역량 증가에 기여를 목적으로, 집중교육, 특별교육, 국제교육, 전문교육, IP강사 양성교육, 기업단체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2014년도에 34개 지식재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현안과제 등에 대해 지식재산 전문가의 밀착형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인 IP경영 Level-up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기업경영진의 지식재산 경영 마인드 제고를 통한 지식재산 경영기반 구축 및 강화를 위해 지역 CEO 세미나를 8회 운영하였다.<sup>171)</sup>

표 8 IP-Campus 교육프로그램(기업·일반)

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내용
집중교육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지재권 제도 기초에서부터 심화교육까지의 다양한 최신사례 위주, 실무 위주의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 과정
특별교육	최근 IP 이슈 및 현안 등을 주제로 지식재산권 담당자에게 넓은 시야와 안목을 주는 단기 특별과정
국제교육	해외연수 과정으로, 세계화 시대의 국제적 감각 및 자질을 겸비한 글로벌 IP인재 양성 과정
전문교육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적이고 심도있게 다루는 최소 10일 이상의 장기교육과정
IP강사 양성교육	지재권 분야 강사들의 프리젠테이션 스킬 향상 및 IP트렌드 파악에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

171) 발명진흥회 사업담당 부서 확인(2015.3.26.).

기업단체 위탁교육	해당 기업(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서비스로 고객사에 직접 찾아가는 특화 과정
-----------	--

## 10.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은 「발명진흥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을 육성하고자,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원(KAIST, POSTECH, 영재교육연구원)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sup>172)</sup> 교육원 연합집합교육을 실시하여<sup>173)</sup>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 발달과 함께 미래 글로벌 기업인으로서의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11. 발명·특허 특성화고

발명·특허 특성화고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10),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발명특허 교육과 전공 기술교육의 융합 교육 및 다양한 실습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발명품 설계·제작, 자신이 발명한 아이디어를 직접 특허로 출원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적 직무발명 산업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교과 과정으로는 필수 과목으로 발명특허기초, 발명과 문제해결, 특허정보 조사 분석이 있으며, 선택 과목으로 발명과 디자인, 특허명세서 일반이 있다. 이외에도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명품을 제작하는 직무발명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수 학생들은 기업에 취업을 연결하고 있다.

172) KAIST 교육원: IP-CEO Challenge Team, 128시간 (교육재학생 포함)

POSTECH 교육원: 대학과정, 48시간

영재교육연구원: 대학단계 수료생의 창업 열기 교육을 위한 프리스타팅 시범추진(2회).

173) 체험중심의 Team-building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 교육원간 상호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형성 및 자긍심을 부여하고 있다.

## 12.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7조 제2항 제5호 및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10),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발명 교육을 통해 「미래 기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명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제안과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으로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사업에는 금호전기, 녹십자, 동부대우전자, 르노삼성자동차, 모닝글로리,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위니아만도, KT, 포스코 등 1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당 6~7팀 범위에서 중·고등학생 2~3인 및 현직교사 1인으로 구성된 총 60팀을 선발하여 참여기업 및 번리기관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창출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및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시상한다.

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통한 기본 소양교육 및 캠프를 통해 선발팀간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학습, 참여기업 공장 및 연구소 등 현장 견학교육, 팀별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교육 등이 진행된다.

## 13. 발명교육센터 운영

발명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10),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변확대 및 체계적인 발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균형잡힌 발명교육과 현장 중심의 발명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5년부터 특허청, 교육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발명교실 설치회를 시작하여 2015년 현재 196개소를 운영 중이며, 전국 16개 시도별 발명인재육성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발명교육센터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III. 교육 관련 논의의 흐름

#### 1. 법규정 변화 흐름

1958년 제정되었던 발명보호법이 폐지되고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 관련 법조문에 대한 주요 개정은 2013년 7월 30일 단 한 차례 개정이 있었다. 동 개정에서는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학생 발명 활동의 지원시책에 학생발명 교육기관 등의 설치·운영 지원, 발명교육 전문교원 양성지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발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직접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제도적 기반 정비가 이루어졌다.

동 개정을 통해, 제7조 제1항에서 발명교육에 대한 정의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과 생활화를 증진시키는 교육”이라고 추가함으로써,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동조 제2항에서는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발명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 지원,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9조 ‘발명교실의 설치’ 조항을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으로 개정함으로써, 부설물 단위의 발명교실을 발명교육센터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9 2013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교육 관련 조문 신규대비표

발명진흥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11960호, 2013.7.30., 일부개정]
<b>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b> ①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	<b>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b> ① - - - - -

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의 생활화를 진작시키며 나아가 기술개발 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 - - - - 의욕과 생활화를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발명교육”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1. <u>각급학교에 학생 발명반의 설치·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u>	1. <u>발명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u>
2. <u>각급학교 학생 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 조치</u>	2. <u>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u>
3. <u>각급학교의 해당 학교 내 또는 각급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명촉진행사에 대한 지원</u>	3. <u>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 지원</u>
<신 설>	4. <u>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u>
<신 설>	5. <u>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u>
<신 설>	6. <u>그 밖에 발명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b>제9조(발명교실의 설치)</b> ①정부는 학생, 청소년 및 국민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등의 시설물에 부설하여 발명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b>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발명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발명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논의의 흐름

### 1) 교육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기본적으로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과 관련된 정부 사업은 발명에 대한 대국민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 촉진을 위해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규정한 「발명진흥법」 제6조 제5호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를 비롯하여 「발명진흥법」 제7조에서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발명 교육에 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규정의 개정 빈도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발명 교육에 관한 규정이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행 「발명진흥법」에서 발명 교육 관련 규정이 갖는 포괄성이 최근의 발명교육 지원법(안)의 제정 이유에서와 같이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내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하여 논란이 다소 존재하는데, 앞서 살펴본 발명 교육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만으로는 발명교육, 산업재산권교육 및 지식재산교육은 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의 양적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비하여, 현행 법률에 있어서 용어의 혼재(가령, 지식재산교육에 산업재산교육 및 발명교육의 포섭 여부), 교육 관련 법체계의 통합과 상호 보완문제(가령, 「발명진흥법」 일부 관련 내용의 지식재산기본법 포섭 여부), 인력양성을 위한 명확한 방안 및 기준 제시(가령, 「발명진흥법」상의 발명교육센터와 같은 명확성) 등의 문제는 미흡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발명진흥법」상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sup>174)</sup>

첫째, 「발명진흥법」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내용에는 관련 인력양성 항목이 누락됨으로서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시책마련과 시행의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의 경우를 준용하여 동법 혹은 시행령에 근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명진흥법」 제7조에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교육의 시행근거는 비록 마련되어 있으나, 이들 학생을 가르치는 초·중등교원 및 대학교 교수에 대한 교육이 발명교사교육센터, 지식재산교수교육 등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발명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교수교육 시행 및 중장기적인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식재산에 의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대 국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초·중등 발명교육을 살펴보면 「발명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에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통한 학생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학생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그 제도는 잘 마련되어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교육 등 현재기준의 발명교육센터 이외의 제도권 교육 및 관련 발명대회를 통한 발명교육은 이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발명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sup>175)</sup>

### 2) 발명 교육 분야의 분법화

최근에는 발명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7조와 제9조를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2014년 11월 21일 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은 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발명진흥법」상의 발명 교육 관련 내용을 분법화하고자 하였다. 이 법안은 발명 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174)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1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5.20.

175)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1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5.20.

발상과 발명을 이끌어 내는 교육 분야로서 무한기술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창출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발명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명 교육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기술강국 및 창조발명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4조에서는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발명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발명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7조에서는 정부가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발명 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명 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12조에서는 특허청장이 대학의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발명교육단체가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발명교육 지원법안은 교육부의 영재교육 진흥법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영재교육 진흥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sup>176)</sup> 및 제19조<sup>177)</sup>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바 있다. 반면, 발명교육 지원법안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176)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증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7)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계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명교육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안 제9조에서 추가적으로 발명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영재교육 진흥법 상의 영재교육과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영재교육 진흥법 상의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는 반면, 발명교육 지원법안 상의 ‘발명영재’는 발명에 대해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영재와 발명영재를 용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영재에 대한 정의가 발명영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석상 영재 교육에 있어서는 발명교육 지원법안으로 인하여 기존의 영재교육 진흥법의 영역이 줄어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영재교육 진흥법과 발명교육 지원법안 간 법적 효력범위 및 양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

표 10 발명교육 지원법안 조문

발명교육 지원법안	
[의안번호: 12624, 발의연월일: 2014.11.21., 발의자: 김삼훈강은희홍지만부좌현유승우이찬열정희수이원영서상기강석호주호영송영근함진규 의원(13인)]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li> <li>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계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li> <li>3. “발명영재”란 제1호에 따른 발명에 대해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li> <li>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li> <li>5. “발명영재학교”란 발명영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li> <li>6. “발명영재학급”이란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발명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li> </ol>

급을 말한다.

7. “발명영재교육원”이란 발명영재를 교육하기 위해 대학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8.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이란 발명영재를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9. “발명교육단체”란 발명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4. 발명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

육의 실시,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발명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발명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등) ① 발명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발명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발명교육 관련 공무원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명교육의 정책방향 설정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 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기술개발 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 지원

3.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발명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발명영재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발명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발명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에 발명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영재교육원에 대하여 발명영재를 교육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발명영재교육 관련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발명영재학교, 제3항에 따른 발명영재학급, 제4항에 따른 발명영재교육원의 설치 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른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의 업무, 설치기준과 조직·운영, 경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발명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발명교육 관련 교육과정 이수 또는 발명교육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원의 자격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교육시설,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에 대해 발명교원의 연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대학지식재산인력에 대한 양성 및 활동의 촉진) ① 특허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발명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 각급학교의 장과 학교법인의 장은 발명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발명교육단체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발명교육단체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및 교육감
2.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2절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법체계 논의

### I. 정보 관련 규정 현황

#### 1.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상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은 제2조 제7호와 제8호의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대한 정의 규정과 제2장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 제7호 및 제8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절은 9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며, 주요내용은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특허기술정보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20조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문이다.<sup>178)</sup> 동 조는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의무를 특허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조문으로,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에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등에 관

178)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12., 133면.

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특허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에는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방향,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20조의2는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한한 범위 내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통하여 축적된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키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정보의 제공은 자칫 권리자 등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되, 그 범위 등을 제한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균형을 맞추고 있다.<sup>179)</sup>

제20조의3에서는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특허청이 직접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sup>180)</sup>

동조에서의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및 특허청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관리 또는 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산업재산권정보를 전기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④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용자 교육,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규직 근로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 ⑤ 수수료 징수·사용·정산 절차, 정보제공절차, 정보보안관리 대책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⑥ 정보제공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자가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산업

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사업계획 및 운용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제공전문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 ② 제3조의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2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에서는 정부가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통한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는 IT 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이러한 서비스 인프라적 요소에 대한 지원 의무를 정부가 부담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181)</sup> 동조에서의 주체가 특허청장이 아닌 정부로 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차원에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로 연구개발의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sup>182)</sup>

제20조의5에서는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질 등)가 민간 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예산 및 노력의 투입으로 발생한 연구개발 성과는 공익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성과가 많은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결과 산출된 연구성과 등을 적절히 민간에 이양하여 활용될 수 있

179)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137면.

180)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141면.

181)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144면.

182) 김시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458면.

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83)</sup> 동조에서 ‘연구개발 성과’란 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품 등 이들 모두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또한 노력의 주체는 제20조의4와 동일하게 정부로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성과가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하는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다.<sup>184)</sup>

제20조의6에서는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3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지원,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도모 등 지역의 지체권 창출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sup>185)</sup>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인력 및 시설장비 명세서 등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이 된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은 동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담실 및 사무공간을 갖춘 것,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정보 검색, 전자출원 및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

함한다)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혹시라도 모를 일반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충당을 위하여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장은 매년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청장은 해당 평가를 통해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24조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말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이 말소되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 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 2. 기타 관련 법규

### 1)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상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은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정부가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보완 등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지식재산 정보의

183)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146면.

184)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147면.

185)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162면.

관리·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2) 특허법

「특허법」상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은 선행기술의 조사에 관한 제58조, 특허권의 출원공개에 따른 특허공보 게재에 관한 제64조, 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제221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58조는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으로,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4조는 특허권의 출원공개에 따른 특허공보 게재에 관한 조항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원인의 성명·주소 및 출원번호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등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제221조는 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조항으로, 특허공보는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은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제3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조 제6항에 의하면,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4)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초고속 정보망 구축기획단의 시범사업 채택에 협조하여<sup>186)</sup> 공공응용서비스 개발지원금에서 7억 8백만 원을 지원받아 특허정보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바 있다.<sup>187)</sup>

## II.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사업의 현황

### 1. 지식재산정보 활용촉진

#### 1)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

186) 한국특허정보원, KIPPI 10년사, 2005., 47면.

187) 한국특허정보원, KIPPI 10년사, 2005., 61면.

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이를 개인, 변리사, 중소기업·벤처·대기업 종사자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이다. 키프리스는 단순한 화면구성으로 초보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항목별 검색으로 구분하여 제공되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국내 지식재산권 정보 및 미국, 유럽, 일본 등 12개 국가 해외 특허정보가 제공되고, 나의 관심 특허서비스, 찾아가는 특허서비스, 특허검색틀바, 마이폴더, 유사 검색식 보기, 동의어 사전, 인기검색어, 온라인 다운로드, 검색식 저장, 내 검색식 보기 등 부가기능이 제공된다.<sup>188)</sup>

## 2) 데이터관리센터

데이터관리센터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20조의4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허청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KIPOnet)의 근간이 되는 특허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정비를 통하여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데이터관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신속·정확한 특허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특허정보 전자데이터의 오류 수정, 오류 패턴 분석 및 발생 방지, 해외특허 전자데이터 수집,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업데이트, 해외특허청 및 국내기관에 지식재산권 전자데이터 보급, 인터넷 공보 발간 등이 이루어진다.<sup>189)</sup>

## 3) 한국특허영문초록 DB구축

한국특허영문초록 DB구축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20조의4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특허영문초록(KPA: Korean Patent Abstracts)은 한국특허공보 요약서에 대한 영문번역자료로서 국내 특허기술 보호 강화 및 글로벌 지재권 분쟁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특허청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고품질의 KPA DB를 구축하여 해외 특허청 및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sup>190)</sup>

188)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khome/kipris/kipris.jsp>), 최종방문일:2015.4.6.

189)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ipi.or.kr/dataManage.do>), 최종방문일:2015.4.6.

190)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ipi.or.kr/englishAbstract.do>), 최종방문일:2015.4.6.

## 2. 특허행정 정보화 및 업무지원

### 1) 특허넷 기반시스템 운영

특허넷 기반시스템 운영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20조의4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허청의 출원·접수·심사·등록·심판 업무를 자동화한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KIPOnet)의 전산자원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보안 및 사용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넷 기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전산자원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신속한 장애 예방·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장애예방·복구 등이 가능하도록 특허넷 전산자원 유지보수의 세부 업무기준 마련과 기술 및 교육을 지원하며, 24시간 특허넷 서비스관제 조직 구성과 체계적인 서비스 관제체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허넷 기반운영 안정화를 위해, 중대 위험 및 이슈상황 대응을 위한 특허넷 위기 대응반 구성·운영하고, 특허넷 기반 시스템을 대상으로 재난 복구, 이중화 훈련 등의 장애 대응 모의 훈련을 강화하며, SBC 구성 전산자원의 전산자원 통합성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운영업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환경 변화와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및 매뉴얼 제정의 등 통합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허넷 기반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노하우 관리·공유를 위한 온라인 특허넷 기술지원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관리 활동으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sup>191)</sup>

###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20조의4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되는 모든 산업재산권 서면서류를 특허넷에서 활용 가능도록 전자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심사·심판의 기반을 제공하며, 특허정보 취약계층에

191)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ipi.or.kr/kiponetBase.do>), 최종방문일:2015.4.6.

대한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실시를 통해 특허정보 활용확산 및 전자출원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출원서, 중간서류, 이의신청서, 등록서류 등 서면으로 제출되는 모든 문서의 서지사항 및 명세서가 전자화되며, 서면으로 제출되는 전체 서류의 이미지 스캐닝으로 디지털 원본이 제작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서 작성 교육, 출원지원실 운영 등이 지원된다.<sup>192)</sup>

### 3. 지식재산정보 산업육성

####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보급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보급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학·연이 요구하는 다양한 IP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을 통해 지식재산 정보 활용 활성화 및 산업육성 지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업무로는 지식재산정보 공유서비스와 지식재산정보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지원, 지식재산 정보 보급 및 유통체계 구축·운영이 있다.

지식재산정보 공유서비스(KIPRIS PLUS)는 특허청이 개방중인 모든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수 있는 BULK DATA<sup>193)</sup>, OPEN API<sup>194)</sup>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 선택적 조합·활용으로 맞춤형 업무시스템 개발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형식(XML)의 데이터 제공으로 모든 작업 환경에서 추가 작업 없이 활용이 가능하며, 특허청 DB와 연계되어 최신 정보 실시간 입수가 가능하고, 별도의 자체 DB 구축이 필요 없어 정보시스템 개발기간 단축 및 구축·운영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진다.<sup>195)</sup>

192)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ipi.or.kr/paperElectron.do>), 최종방문일:2015.4.6.

193) 특허정보를 전자매체나 FTP등을 통하여 자체 DB로 대용량 일괄 다운로드 하는 방식이다.

194) 특허청 DB와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응답 받아 자체 DB구축 없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195) KIPRIS PLUS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4>), <최종방문일:2015.4.7.>

그림 1 KIPRIS PLUS 서비스 개요



지식재산정보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지원은 지식재산정보 표준 정립, 수집·정비·가공, 품질관리, 상품개발, 활용촉진 정책지원 등 지식재산정보의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중소기업, 특허사무소 등 KIPRIS PLUS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IP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제공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196)</sup>

지식재산정보 보급 및 유통체계 구축·운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등록사항 및 해외특허(미국, 유럽, PCT 등)를 보급하기 위해, 지식재산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지식재산정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sup>197)</sup>

## III. 법체계 등에 관한 논의의 동향

### 1. 법규정 변화 흐름

#### 1) 발명진흥법 개정 동향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법조문에 대한 주요 사항은 2001년 7월 1일 및 2010년 7월 28일 자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2013년 7월 30일 및 2015년 5월 18일 자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한 바 있다.

196)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ipi.or.kr/intelProInfoService.do>), 최종방문일:2015.4.7.

197)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ipi.or.kr/intelProInfoService.do>), 최종방문일:2015.4.7.

먼저 2001년 개정에서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범위를 삭제하고, 수익사업의 내용을 사업연도가 개시된 날부터 1월 전까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허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17조의2에 신설하였다. 또한, 동조에서 지역정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산업재산권에 관한 홍보,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센터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 밖에도 지역정보센터의 설립과 등록기준, 등록말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표 11 2001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 신구대비표

발명진흥법 [법률 제6024호, 1999.9.7., 타법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6422호, 2001.2.3., 일부개정]
<b>제16조(특허기술정보센터) ① ~ ④ (생략)</b>	<b>제16조(특허기술정보센터) ① ~ ④ (현행과 같음)</b>
⑤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 - - - -
⑥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 - - 수익사업 - - - - -
⑦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 - - - -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보센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날부터 1월 전까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⑦ 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

<신설>	<p>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7조의2(특허정보지원센터)</b> ①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지원센터(이하 “지역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지역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li> <li>2.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li> <li>3. 산업재산권에 관한 홍보</li> <li>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사업</li> </ol> <p>③ 지역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전산장비, 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⑤ 지역정보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설>	<p><b>제17조의3(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b></p> <p>제17조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호중 “제16조제2항”은 “제17조의2제2항”으로, 동조제3호중 “제16조제4항”은 “제17조의2제4항”으로 본다.</p>

다음으로 2007년 「발명진흥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었으며, 해당 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된 조문인 제15조를 제20조로, 제16조에서 제21조로, 제17조를 제22조로, 제17조의 2를 제23조, 제17조의3을 제24조로 조문을 이전하고, 조문 제목의 명칭을 수정하였다.

2010년 개정에서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활용 촉진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특히 제20조에서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이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으로 수정됨에 따라 정보화사업계획의 초점이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사용자에 제공에서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촉진 및 정보산업의 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정보화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산업재산권 정보산업과 관련하여,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산업재산권 정보’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정보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확대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의 야기를 방지하였다.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 진흥 활동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창업사례 및 우수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사업자의 발굴 및 포상, 창업박람회 개최 및 우수 기술·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20조의4에서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20조의5에서는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

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품 등을 말한다)가 민간부문에 이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12 2010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 신규대비표

발명진흥법 [법률 제9685호, 2009.5.21., 타법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9986호, 2010.1.27., 일부개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b>제2조(정의)</b> - - - - -</p> <p>-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p> <p>8.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이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 또는 가공하여 새로운 제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p>
<p><b>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등)</b>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그 합리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사용자등이나 국민에 대한 국내의 정보 제공 실적 및 연차별 추진 계획</p> <p>2. 산업재산권 정보검색에 대한 외부 용역 계획</p> <p>3.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용자등에 대한 지원 계획</p> <p>4. 산업재산권 전산화사업의 전년도 실적 평가와 연차별 추진 계획</p> <p>5.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p>	<p><b>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b> ① - - - - - 연구개발의 효율성 - - - - - 성과의 - - - - -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 - - - - .</p> <p>② <u>추진계획</u> - - - - - .</p> <p>1.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p> <p>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p> <p>3.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육성</p> <p>4.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p> <p>5. - - - - - 산업재산권 - - - - -</p>



<p>②특허기술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 4. (생략)</p> <p>③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 ⑨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특허기술정보센터"라 한다)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특허기술정보센터 - - - - -</p> <p>- .</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p><b>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b> ① (생략)</p> <p>②지역지식재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p> <p>2. ~ 4. (생략)</p> <p>③ (생략)</p> <p>④제3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⑤ ~ ⑧ (생략)</p>	<p><b>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b>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 - - - - -</p> <p>1. 산업재산권 - -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따라 - - - - -</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2013년 개정에서는 산업재산권 정보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보급하기 위해,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선행기술정보의 분석·제공 사업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정보의 생산·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의 정의 및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확대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의 야기를 방지하였다. 제20조 제1항에서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 이를 설명하던 문구를 대체하였다. 제20조의3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 제공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21조에서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업무 범위를 산업재산권 관련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보급뿐만 아니라 생산 및 관리를 추가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특허기술정보센

터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23조 제10항에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였고, 제24조에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대한 정의(제2조), 진흥활동(제20조의6), 경쟁력 강화(제20조의7) 등의 규정을 신설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지원내용에 통합·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제20조 제2항 제3호의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을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으로 수정하였고, 제20조의2 제1항의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서비스사업자’로 수정하였다.

표 13 2013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 신규대비표

발명진흥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11960호, 2013.7.30., 일부개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이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 또는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p>	<p><b>제2조(정의)</b>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p>
<p><b>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b> ① 특허청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생략)</p> <p>3.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육성</p> <p>4.·5. (생략)</p> <p>③·④ (생략)</p>	<p><b>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b> ① - - - - -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 - - - -</p> <p>②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 정보서비스업 - - -</p> <p>4.·5.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b>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b> ① 특허</p>	<p><b>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b> ① - -</p>

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신청하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서비스사업자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b>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b>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b>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b>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b>제20조의6(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진흥 활동)</b>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2. 창업사례 및 우수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사업자의 발굴 및 포상 3. 창업박람회 개최 및 우수 기술·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시회 개최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삭제>
<b>제20조의7(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b>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2.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b>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b>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先行技術)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특허기술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략) 2.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생략) 4.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③ ~ ⑨ (생략)	<b>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b> ① ----- ----- ----- 생산 및 보급하기 ----- -----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생산·관리·분석 ----- ----- 3. (현행과 같음) 4. ----- 생산 및 보급 ----- ③ ~ ⑨ (현행과 같음)
<b>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b> (생략) <신설>	<b>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b>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b> ① ~ ⑨ (생략)	<b>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b>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특허청장은 매년 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⑩ - - - - - - - - - - - - - - - .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b>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b> (생략) <신설>	<b>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b>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015년 5월 18일 개정에서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0조에서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에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21조 및 제22조의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제20조의3의 제목을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산업재산권 정보화기관을 지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제20조의2 제1항에서 “서비스사업자 등이 신청하면”을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신청인”을 “정보이용자”로 개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를 확대하였으며, 제20조의6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3조 제4항 중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을 “전문인력 및 시설”로 개정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설립 요건을 완화하였다.

표 14 2015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문 신규대비표

발명진흥법 [법률 제11960호, 2013.7.30.,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13309호, 2015.5.18., 일부개정]
<b>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b> ① (생략)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신설> 3. ~ 5. (생략) ③·④ (생략)	<b>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b>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b>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b>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 등이 신청하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b>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b> ① - - - - -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 ② - - - - - 정보이용자 - - - - -
<b>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b> ① 특허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	<b>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b> ① - - - - -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 - - - - - - - - - - . <후단 삭제> ② - - - - - 정보화전문기관을 - - - - - - - - - - . ③ - - - - - 정보화전문기관 - - - - -

<p>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p> <p>-----</p> <p>-----</p> <p>④ 정보화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b>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 조사)</b>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b>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先行技術)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특허기술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p> <p>2. 선행기술정보의 생산·관리·분석 및 제공</p>	<p>&lt;삭 제&gt;</p>

<p>3. 외부 용역에 따른 선행기술의 검색</p> <p>4.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업</p> <p>③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⑤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⑥ 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⑧ 정부는 특허기술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p> <p>⑨ 제8항에 따른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b>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b> ①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p> <p>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p>	<p>&lt;삭 제&gt;</p>

<p>3.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p> <p>4. 제21조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 ③ (생략)</b></p> <p>④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⑤ ~ ⑪ (생략)</p>	<p><b>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b></p> <p>④ - - - - -</p> <p>- - - - -</p> <p>- - - - - 전문인력 및 시설 - - -</p> <p>- - - - -</p> <p>⑤ ~ ⑪ (현행과 같음)</p>

## 2. 논의의 흐름

### 1) 정보 관련 사업의 변화와 발명진흥법과의 관계

1990년대 이후 산업재산권의 출원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방대한 자료의 축적과 활용 등에 있어 개별 기업으로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지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에는 한계가 있었다.<sup>198)</sup> 또한, 방대한 양의 산업재산권 정보를 개별기업마다 각각 투자를 할 경우 중복투자가 되고 국가적으로 인적·물적 낭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특허청은 1994년 대통령의 주문에 특허기술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운용·관리하는 조직 또는 기관의 설립을 구상하였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일본특허정보기관인 JAPIO를 벤치마킹하여, 특허정보를 DB화하여 보급하는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94년 발명보호법이 폐지되고 「발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사업계획, 특허기술정보센터에 관한 규정만 있을

198) 특허정보는 고도의 전문성과 혁신성, 탄력성, 신속성, 자율성을 필요로 하며, 정부조직은 인력, 예산 팽창에 한계가 있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KIPRIS 10년사, 2005., 42면.

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여 한국발명진흥회가 일을 주관하고 특허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를 1995년 7월 설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발명진흥법」 상의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된 규정은 1995년 7월 한국발명진흥회의 부설기관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되고, 1996년 7월 KIPRIS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동년 10월에는 KIPRIS 서비스가 ‘정보화 우수 수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KIPRIS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2년 후, 1998년 무렵부터 국내에서도 인터넷붐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더니 사회적으로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강한 요구가 발생하였고, 인터넷 상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8년 8월 1일 KIPRIS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 1월부터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KIPRIS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서비스 무료 이후 이용자가 전년 대비 28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특허정보의 단순조회나 서비스는 무료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인한 수입감소로, 외적인 성장과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설립초기의 차입투자자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기관 및 부설기관으로서의 한계를 탈피하고 21세기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지식정보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1년 「발명진흥법」이 개정되어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익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1년 12월 특허기술정보센터가 한국특허정보원으로 독립하여 법인화되었다.<sup>199)</sup>

이후 특허전쟁으로 대변되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은 산업재산권 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된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발명진흥법」은 최근 5년 동안 3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사업의 법적근거를 뒷받침하였다. 특히 2010년의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11월 한국특허정보원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13년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하여는 산업재산권 정보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보급하기 위해,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선행기술정보의 분석·제공 사업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정보의 생산·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5년 5월 18일자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산업

199) 한국특허정보원, KIPRIS 10년사, 2005., 38-94면.

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을 두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정보 관련 분법화 동향

최근 산업재산권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응용 및 개발단계의 연구개발일 경우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점차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 정보를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의 지속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중인 사업들은 민간부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민간부분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 등 공공부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등도 비판이 있다. 아울러 현재의 「발명진흥법」은 권리화 이전 단계에 속하는 발명을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사항을 본 법에 규정하는 것은 본 법의 목적과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산업재산권 정보 사업의 법적 근거를 현행과 같이 「발명진흥법」을 통하여 확장할 경우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발명진흥과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의 촉진은 별개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발명진흥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된 사업수행 주체 및 역할 등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명진흥법」의 현 체계 하에서는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 및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제공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산업의 민간부문 수준 향상과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관련 민간시장의 형성 및 글로벌화, 개방화에 맞는 경쟁력 보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전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도 제기된 바 있었다.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지원기준, 전담기구 등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점차 확장해가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산업재산권 정보 사업을 국내외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정보시장 확대와 시장 참여자의 다양화에 따른 시장주체간 이해관계 조정 및 공정한 산업 시장 질서유지에 관한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현재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 활용 정책의 제도화·체계화 및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향후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정책의 변화·발전에 대비하며 각 부처별 책임소재 부여 및 분담을 통해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정책의 법적기준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정책목적 달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셋째, 법적인 측면에서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산업재산권 정보 사업의 지원 및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산업재산권 정보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사업 관련 법적 근거가 관련성이 미흡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바로잡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간의 체계상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sup>200)</sup>

200) 김시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171-172면.

### 제3절 산업재산권 서비스 관련 법체계 논의

#### I. 서비스 관련 규정 현황

##### 1.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상 산업재산권 서비스에 관한 조문으로는 제2조 제9호와 제10호의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및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과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장이 있다.

제2조 제9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말하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 구축하는 업(業), 둘째, 「변리사법」 제2조에서 말하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업, 셋째, 산업재산권을 경제적 가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넷째,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성하는 업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포함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은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상담(商談)·자문·홍보업,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그리고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통계업이 있다. 한편 제1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sup>201)</sup>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장은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협회 설립·운영,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발명진흥법」 제4장의2는 2013년 신설된 장으로써 산업재산권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주요산업업

201)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18면.

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이 본 장의 신설 원인이다. 특히 제40조의2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육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육성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sup>202)</sup> 동조에서는 특허청장이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육성시책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40조의3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수행할 수 있는 각종의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첫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양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대부분 산업재산권 관련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sup>203)</sup>이므로, 인력양성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간의 국제경쟁이 본격화되어감에 따라 국내 산업재산권서비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그 밖의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업무는 앞서 언급한 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04)</sup>

제40조의4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한 근거로서,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

202)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45면.

203) 특허출원 경쟁이 있는 기업 중 지식재산 전문 인력 보유 기업은 27.4%, 전담조직 보유 기업은 7.8%에 그치고 있다., 김홍석,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정립 및 육성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3.12., 78-79면.

204)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50면.

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0조의5에서는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내용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인력 현황 및 매출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산업의 추이 및 정책적 요구를 확인하고 적기에 관련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sup>205)</sup>

제40조의6에서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를 설립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건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조에서 협회설립의 근거를 두는 이유는 시장의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up>206)</sup>

제40조의7에서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를 특허청장이 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에서는 정부가 지정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 2. 기타 관련 법규

205)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55면.

206)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58면.

## 1)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상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조문은 제26조에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정부가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 II. 서비스 관련 사업의 현황

### 1. 협회 운영

「발명진흥법」 제40조의6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를 설립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건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분과위원회 및 포럼 운영, IP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IP서비스 전문 자격검정제도 운영, IP서비스 활용 촉진 및 인식 확산 지원, IP서비스 관련 연구회 운영 및 지원, IP전문 도서관 운영, 해외 전시·참관단 파견 및 홍보부스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sup>207)</sup>

## 2. 인력 양성

「발명진흥법」 제40조의3 제1항 제1호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IP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IP번역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공개 포럼, IP정보 조사·분석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IP정보검색사 자격검정시험, IP정보분석사 자격검정시험, IP번역사 자격검정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IP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은 약 4주간 집합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법 기초, IP 선행 기술 조사, IP 분석, IP 무효자료/분쟁대응자료 조사 및 분석, IP 거래·IP 번역·IP 컨설팅, 직장 및 비즈니스 매너·IP분야 국가사업 제안 실무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을 한 후, IP서비스 기업 및 특허법인(사무소), 기업 특허팀 등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sup>208)</sup>

IP정보 조사·분석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IP정보검색사 양성교육과 IP정보분석사 양성교육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IP정보검색사 양성교육은 초급 교육은 2일, 중·고급 교육은 5일 동안 IP정보 조사·분석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IP정보검색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IP정보분석사 양성교육은 중·고급 교육 과정만 2일 동안 진행되며, IP정보 조사·분석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IP정보분석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sup>209)</sup>

IP번역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공개포럼은 IP번역사 양성 초·중급 교육 2일, IP번역 공개 포럼 1일, IP번역 채용연계 실무교육이 진행되며, IP번역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IP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sup>210)</sup>

IP정보검색사 자격검정시험은 IP정보 조사·분석 분야 우수인력 식별 및 양성을 위해 운영되는 등록 민간 자격제도이며, IP정보검색사 자격검정시험은 IP정보 조사·분석 분야 우수인력 식별 및 양성을 위해 운영되는 등록 민간 자격제도이고, IP번

207)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5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5.2, 2면.

208)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5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5.2, 44면.

209)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5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5.2, 44-45면.

210)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5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5.2, 45면.

역사 자격검정시험은 IP번역 분야 우수인력 식별 및 양성을 위해 운영되는 등록 민간 자격제도이다. 상기의 자격검정시험은 IP정보 조사·분석 업계 전문가 및 IP번역 업계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추진되며,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운영된다.<sup>211)</sup>

## 3. 해외진출 촉진

「발명진흥법」 제40조의3 제1항 제2호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해외 전시·참관단 파견 및 홍보부스 참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5월에는 중국 상해 IP PORT 전시회 전시참관단 파견 및 기업 부스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2015년 11월에는 일본 특허정보 페어&컨퍼런스 전시·참관단 파견 및 전시부스 참가 및 발표를 지원할 예정이다.<sup>212)</sup>

## 4. 인식 제고

「발명진흥법」 제40조의4 제1호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IP DB&솔루션 컨퍼런스 개최, IP서비스기업 고객 IP·기술정보 보호전략 세미나 개최, IP프로젝트 투자 활성화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업종별/산업별/IP 전시회 전시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sup>213)</sup>

## 5.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 선정 및 포상

211)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5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5.2, 46-47면.

212)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5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5.2, 50면.

213)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5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5.2, 48면.

「발명진흥법」 제40조의4 제3호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IP서비스산업 육성 및 진흥에 모범이 된 산업인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동 사업은 IP서비스업계 임직원의 추천으로 후보를 선발하여,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시상자를 선정한 후, 특허청장상 1인과 협회장상 3인에 대하여 시상을 진행한다.<sup>214)</sup>

## 6. 기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발명진흥법」 제40조의4 제4호는 기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우수 IP번역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한국지식재산번역(IPT)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동 컨소시엄은 해외 특허 출원 시 특허명세서 등 지식재산번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 범위의 축소, 권리의 불인정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오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철저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우수 지식재산번역 전문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번역품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sup>215)</sup>

## III. 서비스 관련 논의의 흐름

### 1. 법규정 변화 흐름

산업재산권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30일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동 개정에서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sup>216)</sup> 그 법적 근거

214)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5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5.2. 45면.

215)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국내 최고 특허번역기업들이 참여하는 IP번역 컨소시엄, <http://kaips.or.kr/com.do?method=c02G&bbsno=473&bmgcd=B201100001>, 최종방문일: 2015.3.19.

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9호 및 제10호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및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산업재산권서비스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 규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 규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추이 및 정책적 요구를 확인하고 적기에 관련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표 15 2013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조문 신규대비표

발명진흥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11960호, 2013.7.30., 일부개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lt;신설&gt;</p>	<p><b>제2조(정의)</b> - - - - -</p> <p>- - - - - .</p> <p>1. ~ 8. (생략)</p> <p>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p> <p>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p> <p>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p> <p>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p> <p>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p>

216) (美) 특허 라이선스 시장 규모 : 약 65억 불 ('07년, 美 통계국), (日)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서비스 시장 규모 : 약 980억 엔 ('09년, 日 특허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012.6., 2면.

<p>&lt;신 설&gt;</p>	<p>개·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lt;신 설&gt;</p>	<p><b>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b> 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lt;신 설&gt;</p>	<p><b>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b>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p>

<p>&lt;신 설&gt;</p>	<p>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b>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b>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p>
<p>&lt;신 설&gt;</p>	<p><b>제40조의5(실태조사)</b>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p><b>제40조의6(협회의 설립·운영 등)</b>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p> <p>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p> <p>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p> <p>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p> <p>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p> <p>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	---

2015년 5월 18일 개정에서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제40조의5의 제목인 “실태조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로 명확히 하고, 제40조의7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표 16 2015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조문 신규대비표

발명진흥법 [법률 제11960호, 2013.7.30.,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13309호, 2015.5.18., 일부개정]
<b>제40조의5(실태조사) ① ~ ③ (생략)</b>	<b>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b>
<신설>	<b>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b> <u>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u>

	<p>있다.</p> <p>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p> <p>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2. 논의의 흐름

### 1) 서비스 관련 제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만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sup>217)</sup>이 발표되어 왔으나,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서비스업 관련 정책은

217) ① 2007년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아시아 지식서비스 허브화 추진을 목표로 유망 지식서비스업종의 선정 및 전략적 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대화·전문화 등을 중심으로 지식서비스기업의 전문화·과학화 및 혁신 역량 강화, 제조업과 동반성장 가능한 신사업분야 발굴·육성,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시장 확대 등이 포함된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다. 뒤이어 2008년에 향후 5년간 33만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식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발표하였고, ② 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 창업 지원, 세제지원 확대, 전문자격제도 도입, 각종 지원정책에 필요한 통계 DB 구축, “연구개발서비스협회” 구성 유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2007년 재정경제부 외 16개의 정부부처가 참여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및 연이어 2008년 발표된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과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I) (2008.9)」 등이 계속하여 발표되었고, 특히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I) (2008.9)」은 전문 자격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수준 높은 서비스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8년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 인력 양성 종합계획”에서 지식재산 서비스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방안을 언급하기 이전까지 관련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었다.<sup>218)</sup> 한편,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서비스업 관련 단체를 통한 수요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표준산업분류에 독립분류로 지식재산서비스업 추가,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과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인력 관련 자격제도 도입, 전문인력 고용 지원, 관련 법·제도 보완 등이 요구되고 있었다.<sup>219)</sup>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2008년 5월 설립되어,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및 관련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조사분석·연구·자료수집, 지식재산 정보 유통, 간행물 발간·보급·출판, 지식재산 번역·통역, 지식재산 평가·가치분석·거래·라이선싱, 지식재산 경영컨설팅,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식재산 서비스인증제 운영·관리, 지식재산 자격제도 운영·관리, 지식재산 전문인력 보급관리, 지식재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해외 지식재산정보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추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등 그 활동에 제약이 존재하여, 위의 협회를 비롯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진흥 관련 시책 수립 및 지원 활동 수행 시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대상 및 범위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 등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 2) 서비스 관련 법적 기반의 마련

2011년 5월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동 법에서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는데, 동법에서는 정부가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218) 서경, 「지식재산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11., 33-34면.

219) 서경, 「지식재산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11., 68-69면; 이성상,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의 현황 연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2.8., 70면.

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 작업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행되었다.

한편, 「발명진흥법」 상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규정의 신설은 2013년 7월 30일 개정에 앞서 2011년 10월 14일 정부안을 발의되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 및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2012년 5월 29일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現,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소관위원회 검토를 통해 수정된 사안들이 2013년 개정에 반영된 점을 고려한다면 2011년 개정안과 2013년 개정법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하나로 2011년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관련 사항을 대리하거나 감정하는 업”(제2조 제9호 나목)을 정의하였는데, 이는 변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2013년 개정법에서는 이를 새롭게 정의하기 보다 현행 「변리사법」을 준용하도록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으로 수정하였다.<sup>220)</sup> 그리고 2011년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반면, 2013년 개정법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가 조사주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3년의 범위내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sup>221)</sup> 또한, 협회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2011년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협회를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2013년 개정법에서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 제1항<sup>222)</sup>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협회가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

220) 지식경제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11., 15면.

221) 지식경제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11., 19면.

22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여 설립되는 것임을 추가하였다.<sup>223)</sup>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변리업이 특정 업무를 독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형 전문가격인 변리사 자격 소지자의 고유 사업 영역으로, 지식재산 기본계획(1차)에서도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산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업재산권 관련 사항을 대리하거나 감정하는 업”(제2조 제9호 나목)을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으로 수정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적 측면의 입법 취지와 다소 다른 방향으로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산업 구조 상 변리업의 발전이 변리업을 제외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sup>224)</sup>

표 17 2013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조문 신규대비표

발명진흥법 [의안번호 13445, 제출연월일: 2011.10.14., 제출자: 정부]	발명진흥법 [법률 제11960호, 2013.7.30., 일부개정]
<p><b>제2조(정의)</b> - - - - -</p> <p>1. ~ 8. (생략)</p> <p>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업을 말한다.</p> <p>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변역을 포함한다)·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하는 업(이하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p> <p>나.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사항을 대리(代理)하거나 감정(鑑定)하는 업</p> <p>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p> <p>라. 산업재산권에 대한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p>	<p><b>제2조(정의)</b> - - - - -</p> <p>1. ~ 8. (생략)</p> <p>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u>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u>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p> <p>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u>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u>(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p> <p>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p> <p>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p> <p>라. <u>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u>개·알선하는 업</p> <p>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p>

223) 지식경제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11., 21-22면.

224)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1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5.20.

<p>개·알선하는 업</p> <p>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p> <p>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b>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b> 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기술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p> <p>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p> <p>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p> <p>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의 수립·시행(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b> 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p> <p>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p> <p>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p> <p>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b>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b>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p>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p> <p>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p> <p>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p> <p>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b>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b>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p>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p> <p>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p> <p>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p> <p>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p>

	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b>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b>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창업정보의 제공 및 상담, 박람회 및 우수 기술·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시회 등 행사와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 및 우수 창업사례에 대한 선정·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b>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b>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u>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u>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u>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u>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전시회 등</u>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u>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u>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b>제40조의5(실태조사)</b>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하여 인력 현황,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實態)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와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제40조의5(실태조사)</b>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u>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u>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u>인력 현황·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u>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u>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제40조의6(협회의 설립·운영 등)</b>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b>제40조의6(협회의 설립·운영 등)</b>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u>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u>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이 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특허청장이 <u>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u> 관하여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b>제40조의7(다른 법률과의 관계)</b>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 3) 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의 미비점에 대한 논의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과 최근의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법적 근거가 대체로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첫째,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러한 사항을 「발명진흥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차료 관리 업무 등의 지식재산 유지·관리업의 경우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주요한 예이다. 둘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를 보면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상담(商談)·자문·홍보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상담”이라는 용어는 상담(相談, counseling)의 의미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데, 본 법 시행령에서는 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商談”이라는 한자 병기를 통해 정의를 함에 따라, 본 용어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뜻하는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225)</sup> 셋째,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대부분의 사업을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0조의6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225)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1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5.20.

이에 해당하는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sup>226)</sup> 그러나, 2013년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40조의6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대해 특허청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에 의하면<sup>227)</sup>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뿐 아니라 대한변리사회와 한국특허정보협회도 특허청으로부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대한 주체를 한국 지식재산서비스협회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226)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1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5.20.  
227)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012.6., 3면.

## 제4절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련 법체계 논의

### I. 조정 관련 규정 현황

#### 1.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에 관한 조문으로는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의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제41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제41조의2, 조정부에 관한 제42조, 조정의 신청에 관한 제43조, 조정신청자에 관한 제43조의2,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관한 제44조, 출석의 요구에 관한 제45조, 조정의 성립에 관한 제4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제46조의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제47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제48조, 경비 보조에 관한 제49조,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제49조의2 등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59조에서 위원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41조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228)</sup> 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은 ①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②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③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⑥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나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위원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궐

228)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64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러나 위원  
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1조의2는 조정위원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조정을 할 의무가 있는데, 위원이 자  
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조정위  
원을 해당 조정절차로부터 배제시켜 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회  
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sup>229)</sup>

동조 제1항은 제척에 관한 조항으로, 제척은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법률  
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  
터 제외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열거규정이므로, 유추확대해서는 안된다.<sup>230)</sup> 조정위  
원은 ①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사  
건에 관해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  
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 심사, 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④ 위원이 해당사건에 관해 당사자 증인, 감정인 또는 대  
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⑤ 위원이 해당사건에 관해 직접 이해관계  
를 가진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심의와 조정에서 제척된다.

동조 제2항은 기피에 관한 조항으로, 제척 사유 이외에 심의·조정 공정성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sup>231)</sup> “심의·조정 공정성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sup>232)</sup>

동조 제3항은 회피에 관한 조항으로, 조정위원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위원이 제척·기피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42조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조

229)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70면.

230)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71면.

231)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73면.

232) 대법원 1992. 12. 30. 선고 92마783 결정.

정부에 대한 구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sup>233)</sup>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  
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제43조는 조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함으로써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효  
율적이고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sup>234)</sup> 분쟁의 조정  
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  
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부에 의해 조  
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1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의2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즉 당사자 적격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을 방지 및 이를 통한  
분쟁조정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sup>235)</sup> 산업재산권 출원인, 권  
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가,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및 그 밖에 해당 권리  
의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  
는 많은 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  
청이 가능하다.

제44조는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조정의 효과적  
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sup>236)</sup>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다.

제45조는 조정기일예의 출석과 관련하여 명확한 절차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효

233)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77면.

234)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79면.

235)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83면.

236) 분쟁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특성상 법원 및 심판원의 판단이 전제가 되어  
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게 되면 법적안  
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86면.

율적이고 공정한 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sup>237)</sup>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는 조정조서 기재사항에 관한 법적 성질 등에 대해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으로,<sup>238)</sup>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때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제한된다.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함은 동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제46조의2는 실익 없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으로,<sup>239)</sup> 위원회는 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는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③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조항으로, 조정에 있어 시효중단은 민사조정법 제35조<sup>240)</sup>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산업재산권의 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237) 분쟁관계에 있는 당사자 등을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기일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의 시작에 해당하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88면.

238) 분쟁조정 of 궁극적인 결과는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온전하게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의 법적 효과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90면.

239) 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이는 양자간 자율적 의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조정에 응하는 것 역시 피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은 조정절차 진행이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도록 할 수 있다.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93면.

240) 민사조정법 제35조 (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될 때
2.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된다.<sup>241)</sup>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립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174조<sup>242)</sup>에서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조에서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사유로 보고 있다. 이는 신속한 분쟁상태의 종식을 기본 가치로 하는 조정절차임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불확정한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절치 않다는 점이 그 원인이란 견해가 있다.<sup>243)</sup>

제48조는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49조는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9조의2는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정보 등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sup>244)</sup>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제59조는 산업재산권이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요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공무원 아닌 위원은 별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특허기술정보센터·특허

241) 시효제도는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균형 속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하지 않지만,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시효를 중단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조정에 있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면 분쟁의 조정 과정에서 시효의 완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조정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익이 높지 않을 것이다.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96면.

242) 민법 제174조 (퇴고와 시효중단) 퇴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43)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12., 298면.

244) 소송이 아닌 조정을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모든 절차를 비용개로 진행하여 기업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에서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을 신뢰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결국 조정절차 이용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12., 305면.

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2. 기타 관련 법규

### 1)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은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된 법으로서, 제22조에서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조는 정부가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II. 조정 관련 현황

### 1. 운영 현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1995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접수된 총 107건 중 조정이 성립한 것은 26건에 불과하며 조정의 성립률이 약 24%에 불과한 상황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2001년 7월, 2007년 8월, 2010년 12월 3차례의 「발명진흥법」 개정을 하였으나, 2002년 15건의 조정 신청을 정점으로 2013년까지 매년 5건 이하의 저조한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다.

표 18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신청	4	2	13	15	7	5	3	15	5	5	5	5	5	4	4	3	2	2	3	107
성립	2	-	7	4	3	-	-	2	1	1	-	1	1	-	1	-	-	2	1	26
불성립	2	2	6	11	4	5	3	13	4	4	5	4	4	4	3	3	2	-	1	80
성립률(%)	50	0	53.8	26.7	42.9	0	0	13.3	20	20	0	20	20	0	25	0	0	100	33.3	24.3
진행중	-	-	-	-	-	-	-	-	-	-	-	-	-	-	-	-	-	-	1	1

## 2. 문제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관료화된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임명, 조정부 구성 등의 체계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sup>245)</sup> 전문성 부족, 신뢰성 및 접근성 부족, 법적 강제력 부족,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부재 등의 이용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246)</sup>

## III. 조정 관련 논의의 흐름

### 1. 법규정 변화 흐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법조문의 주요 사항은 2001년 7월, 2007년 8월, 2010년 12월 개정을 통해 신설되거나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1년 7월 개정에서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산업재산권 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공정

245) 손경한,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방안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 79면.

246) 손경한,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방안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 83-87면.

한 해결을 위하여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동 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에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 제29조에서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의 지명 및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9까지 신설하여 조정부, 조정의 신청,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출석의 요구, 조정의 성립, 소멸시효의 중단, 위원회의 구성, 경비보조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표 19 2001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련 조문 신규대비표

발명진흥법 [법률 제6024호, 1999.9.7., 타법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6422호, 2001.2.3., 일부개정]
<p><b>제29조(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b>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하여 당해 당사자가 이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해를 목적으로 한 알선·조정을 할 수 있다.</p> <p>1.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2.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3.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4.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p> <p>③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b>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p> <p>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p>

<신 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b>제29조의2(조정부)</b> 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중 1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신 설>	<b>제29조의3(조정 신청 등)</b>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b>제29조의4(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b> 분쟁중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 설>	<b>제29조의5(출석의 요구)</b> ① 위원회는 분쟁의

	<p>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신 설>	<p><b>제29조의6(조정 성립 등)</b> ①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신 설>	<p><b>제29조의7(소멸시효의 중단 등)</b>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p> <p>②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p>
<신 설>	<p><b>제29조의8(위원회의 구성 등)</b>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 설>	<p><b>제29조의9(경비보조)</b>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2007년 4월 개정에서는 산업재산권이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제적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요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공무원 아닌 위원은 별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49조의2를 신설하고, 제59조 중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특허기술정보센터”로 개정하였다.

표 20 2007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련 조문 신규대비표

발명진흥법 [법률 제8357호, 2007.4.11., 전부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8601호, 2007.8.3., 일부개정]
<신 설>	<b>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b>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제59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b>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b>제59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b>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특허기술정보센터- -

한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월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개정에서는 제41조의2와 제43조의2, 제46조의2를 신설하여, 특허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분쟁조정 거부 또는 중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표 21 2010년 발명진흥법 개정법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련 조문 신규대비표

발명진흥법 [법률 제9986호, 2010.1.27.,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법률 제10357호, 2010.6.8., 일부개정]
<b>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b>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b>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b> ① - - - - - - - - - - - -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 -
②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 - - - - - - - - - - - - - - - - - -





<p>1. 권리자 2. 실시권자 3. 사용권자 4. 직무발명자 5.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 (생 략)</p>	<p>-----</p> <p>1. 산업재산권 출원인 2. 권리자 3. 실시권자 4. 사용권자 5. 직무발명자</p> <p>6.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보유한 자</p> <p>7.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p> <p>② (현행과 같음)</p>
--	--

## 2. 논의의 흐름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은 통상의 재판절차보다 ADR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sup>247)</sup> 대한상사중재원에 매년 10건 내외의 지식재산 관련 중재 사건이 접수되고,<sup>248)</sup> 저작권 분쟁조정인 경우 2013년 기준 연 101건의 조정 사건이 접수<sup>249)</sup>되고 있는 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매년 3건 내외의 지식재산 조정 사건이 접수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산업재산권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체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sup>250)</sup>

247)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법원에 의한 소송절차가 아니고, ADR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ADR의 활용은 당사자들의 요구와 각각의 규모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화할 수 있다. 둘째, 조정된 해결조건이나 중재판정은 비공개 합의에 의해서 중립의 범위를 정하여 비밀이 유지될 수 있다. 셋째, 법원의 소송은 그 준거법과 절차에 익숙한 일방 당사자가 전략상 우위에 있어 일반당사자는 자국법원의 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 ADR은 양당사자의 법률, 언어, 관습에 대해 중립적이다. 넷째, 소송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1년 반에서 20년 이상 걸리는 반면, ADR 구조는 시간적으로 조속히 종료된다. 다섯째,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서 절차비용이 저렴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분쟁에서는 국가 재판에서의 신뢰성 부족, 외국법에 대한 생소함, 비용 및 장기간에 걸친 법정 절차, 예측불가능하고 일관성 없는 결과, 그리고 외국판결의 집행곤란 등의 문제로 ADR을 선호한다., 김상찬외1, “지적재산권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법학연구』 제47호, 한국법학회, 2012.8., 101-102면.

248) 안건형, “지식재산 관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전문가 좌담회)”, 『지식재산정책』 제14권,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3.3., 14면.

249)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저작권 백서』, 2014, 281면.

2000년대 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회의 전문화·효율화 방안으로 조정위원의 위촉방법 개선,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강화, 조정위원의 대우개선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산업재산권 분쟁이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특정지역으로 조정회의 참가에 부담을 고려하여 지방 상공회의소에 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동종업종 간 발생하는 분쟁을 고려하여 업종단체별로 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권장하여, 분쟁조정 관련 자료 제공 및 조정위원 추천 등을 지원이 요구되었다. 이밖에도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방안 및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보장을 위해 기술전문분야별로 조정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 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 또는 조정연구관을 두는 방안 등이 제시된 바 있다.<sup>251)</sup>

아울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의 접근성 개선 및 상설기관화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기도 하였으나,<sup>252)</sup> 2001년 7월 「발명진흥법」 개정에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동 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쳤다. 이후 2007년 4월 동법 개정에서는 산업재산권이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요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조정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데 그쳤으며, 2010년 1월 동법 개정에서도 특허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 등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sup>253)</sup>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타 분쟁해결기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시한다.<sup>254)</sup>

첫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에 관하여 법원과 경쟁

250) 손경한,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방안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 79-87면.

251) 정병호,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재판외분쟁해결제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명특허』, 한국발명진흥회, 2000.7, 48-51면.

252) 하홍준, “지식재산 관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전문가 좌담회)”, 『지식재산정책』 제14권,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2013.3., 13면.

253) 손경한,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방안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 89-118면.

254)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른 조정 전문가의 의견과 큰 차이가 없다., 김상찬 외1, “지적재산권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법학연구』 제47호, 한국법학회, 2012.8., 110-115면.

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 인적 구성을 개선하는 일이다. 그 일련의 방법으로 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허청 내 기관성의 탈피, ② 조정위원으로 산업재산권에 전문지식을 가진 변리사나 기술전문가 외에 특히 조정능력과 경험이 많은 분쟁해결전문가로 지식재산전문가이자 분쟁해결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참여,<sup>255)</sup> ③ 조정위원 재임의 장기화를 통하여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성 심화, ④ 조정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교육 실시, ⑤ 조정위원의 조정을 보좌하고 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조사관 제도 도입. ⑥ 산업재산권의 무효 또는 취소,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사항도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그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도록 조정 대상의 확대<sup>256)</sup> 등이 있다.

둘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일이다. 그 일련의 방법으로 ① 조정절차대리권의 적격범위를 넓혀서 현행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제17조 제2항을 개정하여 변호사에게도 대리인 자격 부여,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조정부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 ③ 현재와 같이 조정장소를 대전으로 하면 당사자와 대리인이 불편하여 조정제도의 이용을 기피하므로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서울에서 진행하도록 변경, ④ 조정에서의 진술의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의 원용금지과 절차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금지 강조, ⑤ 온라인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절차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⑥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의 보수 현실화, ⑦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상담과 알선을 하게 함으로써 분쟁 조정 유도 등이 있다.

셋째, 조정전치제도 및 대리인의 ADR 고지의무제도의 도입이다. 조정에 적합한 직무발명분쟁 등과 같은 지식재산분쟁을 먼저 조정에 회부하는 제도인 조정전치제도를 일반화하여, 표준 직무발명규정 등의 표준사규나 표준 특허권실시허락계약서 등 표준 산업재산권관련계약서에 조정전치규정을 포함시키고 이를 사규제정이나 계약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미의 ADR 이용

자기약속(Pledge)제도인 대리인의 ADR고지의무제도를 도입하여 변호사, 변리사에게 소송이나 심판외에 조정 또는 중재제도의 존재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식재산 ADR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이 지식재산조정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큰 이유이므로 지식재산 ADR 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 일련의 방법으로 ①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전문가 단체에서 의무연수시간에 강의를 통한 홍보, ②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관련 단체가 주도하여 그 회원기업으로 하여금 ADR 활용자기약속(ADR Pledge)을 하게 하는 운동 전개, ③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상에서 상담과 알선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도입, ④ 지식재산분쟁 특히 대기업이 관련된 지식재산분쟁사건이 조정 또는 중재에 회부된 경우 이를 널리 보도하는 등 지식재산 ADR 제도를 언론에 노출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시켜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당히 지속되고 있으나, 제도적 개선은 학계 및 시장의 요구사항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55) 독일중립발명명상 중재판정부의 의장은 판사자격을 가지도록 하고 있고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의 조정부가 변호사 1인과 변리사 1인의 총 2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256) 산업재산권분쟁의 대부분은 산업재산권의 무효, 취소 또는 권리범위확인과 연계되므로 이러한 분쟁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산업재산권분쟁은 조정에 부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산업재산권의 무효 또는 취소,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사항도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그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도록 한다. 이에는 미국 「특허법」 제294조와 유럽연합의 USC협약(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과 RoP규정(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안의 내용이 참조가 되며 법원에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남용을 근거로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손경환,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방안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 120면.

## 제5절 소결

그 동안의 「발명진흥법」 개정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에 관한 개선 논의는 주로 각 사업의 법적 근거를 얼마나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명진흥법」에 사업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는 것이 논의의 주요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이 갖는 법적 체계에 관하여는 그 동안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발명교육 등과 같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만들고자 하는 분법의 논의와 일부 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의문 등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논의는 제도 개선의 효과에 비하여 오히려 체계상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같이 최근 「발명진흥법」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은 결국 「발명진흥법」의 역할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 것인지, 또한 「발명진흥법」의 법적 규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어야 할 것인지 등 법적 체계의 정합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그 해결이 가능하다. 「발명진흥법」의 내용적 개선과 체계적 개선이 모두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내용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법률로서 이루어진 「발명진흥법」을 법이라는 본질을 간과하여 다루면 결국 각 규정되어 있는 조문들 간 유기적인 작용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률로서의 생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률로서의 「발명진흥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발명진흥법」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발명진흥법」이 담고 있는 각 제도와 사업 수행의 안정성, 그리고 법률로서의 체계적 정합성이다. 「발명진흥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라면 전자의 요소를 그리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발명진흥법」은 상당한 정도의 제도와 사업을 규율하고 있음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체계 정비로 인하여 제도 및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충실히 고려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발명진흥법」의 체계 개선에는 현실과의 조화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5장 발명진흥법 법체계의 쟁점별 해결 기준 설정

### 제1절 사업근거법으로서 발명진흥법 존재의 당위성 문제

#### I. 문제의 소재

「발명진흥법」은 약 20년 가량 발명의 진흥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포괄하는 역할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처음 「발명진흥법」을 제정할 당시에 비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이 매우 많이 달라져 있으며, 관련된 법률의 구성 역시 상이해진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발명진흥법」의 적용대상이 기존 제정 당시와 달리 산업재산권 등에 까지 미치고 있어, 규율 내용이 법의 제정목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해외 주요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발명진흥법」과 같이 발명의 진흥 및 산업재산권의 활용 등을 위한 단일의 법률을 두고 각종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발명진흥법」이 더 이상 존재의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부가 「발명진흥법」과 같은 유형의 근거법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책의 일관된 추진 및 유기적 체계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를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되지 않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 역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과 투명성 등의 비판이 존재할 수 있어 제도적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시장실패의 일반적 원인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적 집행에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지닌 민간부분에 비하여 아직 정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케인즈 주의(Keynesianism)의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sup>257)</sup> 「발명진흥법」과 같은 사업의 근거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발명진흥법」 존재의 당위성에 관한 논란은 「발명진흥법」이 여러 환경적 현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의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II.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위한 입법 사례

### 1. 지식기반 경제의 확대와 산업적 열악성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즉, 경제 패러다임이 기존의 자산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 체제에서는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므로, 지식산업과 지식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지식의 생성 및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혁신이 일어난다.<sup>258)</sup>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 역시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GDP에서 전통산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한편,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산업에는 첨단산업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제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빠르게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현대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259)</sup> 세계 각국도 이와 같은 현상은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가진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기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무역 협정 및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국제협약 등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자 외교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특허 침해를 근거로 수출입 금지를 취하는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sup>260)</sup>

257) 임정민,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향”,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년 4월호, 84-87면; 진승범, “조정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한국조정 기고문, 2014. 6. 7.

258) 강현규, “지식 서비스 산업 미래육성전략”, 「주간기술동향」 1500호 특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6. 17., 66면.

259) 이동원외4, “미래 지식서비스 개요 및 발전방향”, 「정보과학회지」 제27권 제7호, 한국정보과학회, 2009. 7., 18면.

260) 이상상 외1,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ISSUE PAPER 2011-15, 2011.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19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양적인 면에서는 IP5로서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 창출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질적인 면, 즉 지식재산권의 창출이 산업적 역량으로 이어져 성과를 만드는 면에서는 해외 주요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sup>261)</sup> 즉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표면적 대응 외에 본질적인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특히 기술무역 수치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ISO, IEC, ITC 등 주요 국제표준 화기구에 선언된 표준특허 중 우리나라 특허는 4.3% 수준에 그칠 정도로 미국(27.4%), 일본(17.8%), 핀란드(16.6%), 프랑스(14.3%)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sup>262)</sup> 그 외에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의 발전 역시 미국 및 일본 등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산업 관련 정책을 관하여는 복수의 현상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양적인 성과의 고려와 질적인 부족의 고려가 그것인데, 이들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큰 영역에 해당하거나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요구되는 영역이어서 정부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 2. 지식재산 관련 법체계의 변동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관련 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 기본법」 자체가 법체계상 우월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우월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발명진흥법」 역시 이러한 법체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독자적인 법률로서 그 지위를 갖던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 이후 그 집행 법적 성격을 담아야 한다는 요구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기본법」이 담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대응하여 집행을 위한 중심이 되는 법률의 역할을 「발명진흥법」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법률 중 지식재산에 관련된 법률은 「영상진흥기본법」, 「방송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인쇄문화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발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

26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한국, 표준특허 보유 5년 연속 세계 6위”, 보도자료, 2015. 3. 26.

262)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한국, 표준특허 보유 5년 연속 세계 6위”, 보도자료, 2015. 3. 26.

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다양하게 존재하나, 이들은 규정하는 내용 상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이 이미 발명의 진흥 및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다양한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 기본법」의 주요한 집행법으로서 요구가 큰 것이다.

### 3. 환경변화에 대응한 진흥법 입법 사례

#### 1)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분야의 관리법규를 규제 중심에서 진흥 위주로 전환하고, 세분화된 건설기술 업역 및 건설기술 인력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1987년 법 제정 이래 필요에 따라 땀질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던 「건설기술관리법」의 체계 및 내용을 2013년 전부개정된 법률이다.<sup>263)</sup> 「건설기술관리법」은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등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동력자원부가 1987년 2월 건설공사 제도 개선 및 부실대책을 발표하면서 동년 10월 건설기술연구개발 촉진, 건설기술수준 향상, 공공복리 증진, 국민경제 발전기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후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수시장이 정체를 보이고 향후 시장전망도 불투명한 상태<sup>264)</sup>에서 건설산업계가 해외시장 진출을 새로운 활로로 모

263) 허태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토해양위원회, 2013. 2., 15면.

264)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규모는 국내 건설경기의 둔화로 인해 6~8조원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2012년 시장 분야를 포함한 전체 건설수주액이 649억불, 세계 순위 7위권으로 올라서는 등 지속적인 진출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수주액은 12억불 수준으로,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0.5%, 순위는 세계 11위권에 불과하여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는 그간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단순 도급형 수주에 집중되어 부가가치가 낮고 지역별로도 중동지역에만 편중되어 유가 변동 등의 리스크에 취약하여, 건설분야의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시장의 육성 및 해외진출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허태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토해양위원회, 2013. 2., 16면.

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기술경쟁력 및 역량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미흡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하여 국내 경쟁력이 해외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기술용역분야에 특화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sup>265)</sup>

####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정책 시행 및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개정하였으나, 건축서비스산업은 시공을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에 종속된 분야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산업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성질상 유사한 전문지식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산업 및 디자인 산업 등에 대해서는 각종 진흥법 도입을 통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또는 전략적인 지원이 미흡하여<sup>266)</sup> 건축서비스 시장이 낙후되었다.

특히,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은 업체당 매출실적 규모가 OECD국가 27개국 중 21위로, 국가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며 미국과 일본 대비 생산성도 50% 수준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의 결과물인 건축물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격(國格) 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일자리창출과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2013년 제정하였다.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1973년 제정된 「기술용역육성법」이 1992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되고, 이후 2010년 현재의 법률로 전면개정되었다. 「기

265) 박환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5. 3.

266) 임병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검토보고, 국토해양위원회, 2012. 11., 6면.

「술용역육성법」은 국내용역업체에 대한 육성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내용역의 기술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외국용역업자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계류 국산화 촉진에 의한 기계공업육성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용역비의 해외유출방지과 국내용역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후 개방화·국제화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사항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을 확대하며, 엔지니어링 활동 관련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엔지니어링산업은 건설, 정보통신, 환경, 플랜트 등 전 산업을 포괄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고, 인적활동 위주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며 세계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유망 산업<sup>267)</sup>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은 효율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인 환경의 미흡, 설계·원천기술 부재 및 업계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성장기반이 취약하고, 기술력이 선진국의 60~70%수준에 머무르는 등 외국 선진회사에 비하여 경쟁력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부처가 33개 법령을 통해 다양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영역(15개 기술부문 93개 전문분야)을 규율함에 따라 동 산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기능의 부재 및 중복된 관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진흥·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동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정비가 요청되어 왔다.<sup>268)</sup>

이에 엔지니어링 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2010년 전면개정을 실시하였다.

267) <지식경제부 자료>

- 부가가치율 : 엔지니어링 59%, SW 48.3%, 제조업 22%, 건설업 33%
- 취업유발계수 : 엔지니어링 19%, SW 16.5%, 자동차 10.8%, 조선 9.9%, 반도체 6.2%
- 플랜트수출시 외화가득기여도: 엔지니어링 79%, 조달 54%, 시공 15%
- 녹색분야 수요증가, 신흥 경제국 4국(BRICs) 발주가 급증하면서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은 연평균 15%이상 성장세 지속('08년 : 526억불)

268) 권대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2010. 2., 4-5면.

####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국가 전체적인 정보화 확산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역할이, 향후 민·관 협력이 중시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그 유용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 육성기능), 행정안전부(국가정보화, 정보보호기능), 방송통신위원회(통신관련 규제기능) 및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 분야)로 각각 이관하였다.<sup>269)</sup>

이에 따라 구 정보통신부 소관법령이었던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4개의 법률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공동 소관이 되었으나,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sup>270)</sup>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2009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을 제정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은 2002년 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2007년 분법되어 각각 제정된 법률이다.

「출판및인쇄진흥법」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 행정절차 및 규제중심의 법률이므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법체

269)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2009. 2., 7-8면.

270) 권대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2009. 4., 4-5면.

계를 미래지향적인 종합지원법으로 일원화가 필요하고, 출판계가 인터넷서점, 전자출판물(e-book)의 등장 등 시스템상의 변화와 함께 중소형 서점의 잇따른 도산과 도매상의 부도 및 지나친 할인경쟁 등과 같은 현안문제를 안고 있어서 출판 유통의 원칙이 새롭게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sup>271)</sup> 2002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인쇄문화산업은 문화와 지식정보의 시대인 21세기를 이끌 핵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산업을 지원하는 하부산업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전문인력의 부족, 기업의 영세성 및 연구개발 투자의 미흡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는 ‘인쇄’를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sup>272)</sup>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쇄에서 간행물 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캘린더와 카달로그 등 상업인쇄물, 특수인쇄물(산업제품 로고 등의 인쇄) 등 나머지 70% 정도의 다양한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인쇄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직접적인 예산 지원규모(용자지원 제외)가 3억 원에 불과하여 출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sup>273)</sup>

이에 문화와 정보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인쇄사 신고제도 등 인쇄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쇄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분리되어 별도의 법으로 제정되었다. 한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기존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인쇄에 관한 사항이 분리됨에 따라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명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였다.

271) 천호진, 출판및인쇄진흥법 검토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2001. 11., 4면.

272)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인쇄에 관한 사항 및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인쇄”라 함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생 략)
4. “인쇄사”라 함은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6. ~ 9. (생 략)
10. “인쇄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11. (생 략)

273) 최민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 9., 5-6면.

### Ⅲ. 검토

「발명진흥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많은 환경적 변화가 있었으며 동법이 규정하는 내용의 변화도 상당하여 법률 자체에도 변화가 존재하였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발명진흥법」이 여전히 유효한 존재의 의의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산업이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질적 발전은 외형적 발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지식재산 산업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속화될 분야는 시장실패 등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라는 점, 특정 법률의 제반 환경이 변화한 경우 법률의 탄력적 대응을 통하여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였던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발명진흥법」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변화하는 환경에 어느 정도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타 법률의 사례를 살펴볼 때 「발명진흥법」 역시 이러한 대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존재의 당위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 제2절 발명진흥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법률 명칭 및 목적의 개선 문제

### I. 문제의 소재

「발명진흥법」은 1994년 제정된 무렵에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명진흥시책 수립·시행 및 학생들의 발명·혁신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등 주로 발명의 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28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당시 산업재산권 관련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주가 많이 변화되었다. 이에 초기의 ‘진흥’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발명의 ‘보호’, ‘산업재산권의 진흥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면서 「발명진흥법」의 적용 범주의 상당한 확대가 이루어졌다.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의 조기종식을 도모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두었고, 산업재산권의 보호 관련 사업의 근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존에는 「특허법」에서 규정하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까지 「발명진흥법」으로 이관되기도 하였다. 즉, 최근의 「발명진흥법」은 발명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발명과 산업재산권 모두를 포괄하는 범주를 갖으며, 더군다나 진흥 뿐 아니라 그 보호 및 인프라에 대한 사항까지 포괄하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발명진흥법」의 내용상 범주 확대는 발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이라는 의미의 법률 명칭과 그 규정대상의 실질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었다. 발명이 대상이 아니라 발명과 산업재산권이 모두 대상이라는 점, 진흥에 관한 것이 내용이 아니라 진흥과 보호 등에 관한 것이 모두 내용에 속한다는 점은 「발명진흥법」이라는 법률 명칭이 그 내용을 적절히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행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발명진흥법」이 다루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목적 규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즉, 실제의 법규정을 목적규정이 적절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지적과 달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의 법률 명칭 및 목적 규정의 포함범위가 실제 법규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발명진흥

법」 자체가 갖는 존재의 의의 및 제정 당시의 입법 의도 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결국 「발명진흥법」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률 명칭 및 목적 규정의 변경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일단 현재 「발명진흥법」의 실질적 내용의 범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 입법 체계 안에서 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 II. 발명진흥법의 실질적 내용 확대 현황

#### 1. 제정당시 발명진흥법의 실질적 내용 범위

「발명진흥법」은 제정당시 발명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수행, 학생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발명공학교실의 설치·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명의 진흥’,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시책과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관리비용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명의 권리화 지원’,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과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및 세금지원 등을 하는 ‘발명의 사업화 촉진’,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 2. 발명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강화

2001년 개정(법률 제6422호, 2001. 2. 3., 일부개정)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통해 산업재산권 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동 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제29조인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신설하고 조정성립,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정 요건 등을 신설하였다.

2006년 개정(법률 제7869호, 2006. 3. 3., 일부개정)을 통해 발명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에 신설된 제29조의6의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개정하였다.

2010년 개정(법률 제9986호, 2010. 1. 27., 일부개정)에서는 국내외에서 발명에 대한 권리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예방 및 효율적 해결에 대한 지원을 높여 발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고,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발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기존의 “15명 이상 20명”에서 “15명 이상 40명”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추가하였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50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에 정부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제50조의3을 통해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설립하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외산업재산권센터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영업비밀보호 지원,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보호 관련 제도·통계·수요 조사 및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0. 1. 27.자로 이루어진 개정에 이어서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개정(법률 제10357호, 2010. 6. 8., 일부개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분쟁조정 거부 또는 중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를 규정한 제41조의2를 신설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에게 심의·조정 중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등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분쟁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i)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ii)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는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iii)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5년 개정(법률 제13309호, 2015. 5. 18., 일부개정)은 제41조와 43조의2에 산업재산권 출원과 직무발명 그리고 영업비밀을 명시하여,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 그리고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도 심의 및 조정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렇게 2015년 개정에서는 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하여 직무발명, 영업비밀을 심의·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을 확대하여 발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 3. 산업재산권에 관한 규정의 확대

1999년 개정(법률 제5790호, 1999. 2. 5., 일부개정)은 특허정보의 원활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설립을 허가 또는 지정하던 것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개정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정보화를 보편화하였다. 기존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았어야 하지만,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을 통해 설립 등록을 받아야만 특허기술정보센터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발명 중심보다는 산업재산권인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의 보급에 중점을 둔 개정이 되었다.

2010년 개정(법률 제9986호, 2010. 1. 27., 일부개정)에서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먼저,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산업재산권의 정보를 신청하면 특허청장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외하고 신청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 제공

을 위해 제20조의3에서는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20조의4를 통해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산업재산권의 정보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20조의6을 신설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창업사례 및 우수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사업자의 발굴 및 포상, 창업박람회 개최 및 우수 기술·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20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육성 중심으로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2010. 1. 27.자로 이루어진 개정에 이어서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개정(법률 제 10357호, 2010. 6. 8., 일부개정)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서비스의 지원,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26의2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산권의 창출기반을 확대하였다.

2013년 개정(법률 제11960호, 2013. 7. 30., 일부개정)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주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정의 및 육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가 관련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개정 전 제20조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 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그 목적을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로 확대 적용하였다. 또한 제20조의6(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진흥 활동), 제20조의7(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삭제하는 대신에,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

행),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의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는 등 「발명진흥법」의 적용범위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여 명확히 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제21조에서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先行技術)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보의 생산도 포함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선행기술정보의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정보의 생산·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개정(법률 제13309호, 2015. 5. 18., 일부개정)은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 및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제20조의 개정과 제20조의3의 신설을 통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제21조, 제22조를 삭제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폐지하였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을 추가하고(제26조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며,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제40조의7).

### III.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타 법률 개선 사례

「발명진흥법」과 같이 본래 해당 법률이 규율의 범위로 하던 것이 점차 확장되어 감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등의 사례는 다수의 타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최근에 그러한 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개정에서 법률의 명칭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한 바 있다.

본래 「건설기술관리법」은 1987년 건설기술연구개발 촉진, 건설기술수준 향상, 공공복리 증진, 국민경제 발전기여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의 제정 당시의 상황은 건설산업이 국제화, 개방화되고 기술의 고도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정부 및 건설업계의 인식 및 관심부족,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의 부족 등으로 기술수준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건설업체의 연구개발비는 타산업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였고, 기술용역분야도 업체가 영세하고 고급인력이 부족하여 설계, 사업관리, 감리 등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낮으며 시공분야에 있어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경험과 기술축적으로 노동집약형 토목·건축기술 수준은 우위에 있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형 복합건설공사는 경험과 기술축적이 일천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이를 통한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한 것이다.<sup>274)</sup>

그러나 이후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부실시공이 원인이 된 일련의 사고들에 대한 대비차원, 건설공사의 정보화 추진, 시공의 청렴성 및 책임감 제고 등 건설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건설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개정은 새로운 정책적 필요에 따른 제도 도입 등이 주요한 이유가 되어왔다. 이런 변화는 「발명진흥법」에서의 논의와 유사하게 법률의 명칭 등이 실제 변화된 법률이 규율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가져오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건설기술 수준의 비약적 향상 및 건설산업 시장의 국제화·개방화 등 건설산업계를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부주도형 건설기술 규제·관리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민·관협력형 건설기술 진흥법 체제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음을 자각하는 견해가 있었으

274) 박영도, 건설기술 관련 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관리법령 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20-21면.

며<sup>275)</sup>, 제정 이후 다수의 개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건설기술 진흥 및 육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당시 정부의 ‘건설기술용역 선진화 방안’ 취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법률의 규정 내용의 성격 변화에 맞추어 그 제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였다.

이에 2013년 개정에서는 동 법의 제명을 기존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아울러 법률 제명의 변과 함께 법률의 목적 또한 제명 변경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변경하였다.

표 23 건설기술 진흥법의 주요 개정

구분	개정내용
법률 제3934호, 1987. 10. 24., 제정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이를 통한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
법률 제4921호, 1995. 1. 5., 일부개정	건설부조리와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설계 등 용역업자, 시공업자,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고 제재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법률 제5140호, 1995. 12. 30., 일부개정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사업주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법인의 대표자, 법인, 개인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사를 부실하게 할 경우 현행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처벌규정을 상향조정
법률 제5287호, 1997. 1. 13., 일부개정	정부가 건설시장개방을 앞두고 대외적으로는 선진외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부실이라는 전근

275) 박영도, 건설기술 관련 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관리법령 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77면.

	대적 관행을 척결해야 하는 시대적 관행을 안고 있어,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건설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부 및 학계·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동 기획단에서 마련된 종합대책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을 목적
법률 제6369호, 2001. 1. 16., 일부개정	건설공사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손해보증제도를 손해보험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손해배상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대규모의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법률 제8969호, 2008. 3. 21., 일부개정	건설공사 참여자의 성실시공과 청렴성 및 책임감의 제고를 위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과 부패행위 발생 시 건설기술자,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신설,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확보를 의무화하려는 목적
법률 제11056호, 2011. 9. 16., 일부개정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부과 시 해당 업체의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수요예측을 일반적인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진행
법률 제11794호, 2013.5.22., 전부개정	제명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목적을 개정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본이 1934년 3월에 제정 공포한 「부정경쟁방지법」을 의용 하도록 한 「조선부정경쟁방지령」이다.<sup>276)</sup> 이를 1961년 입법근대화를 위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과 함께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한 것이다. 당시 제정된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법률은 당시 사실상 사문화 상태에 있었으므로,<sup>277)</sup> 제정법의 내용 중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비·보완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벌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원리에 의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상표사용이나 상표거래 등으로 인한 국제간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국제신의를 높이기 위하여 1986년 전면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점차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업비밀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법의 목적을 기존의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으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과 함께 1998년 반도체국의 유출사건을 계기로 핵심기술의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증가가 우려되는 등에 의하여 점차 동 법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 법이 규율하는 내용의 실체와 법률 명칭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8년 개정에서 법률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표 2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구분	개정내용
법률 제911호, 1961. 12. 30., 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법률 제3897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법의 내용 중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비·보완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276)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업무 해설서」, 2004.

277) 하홍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허청, 2011, 11면.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벌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원리에 의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상표사용이나 상표거래 등으로 인한 국제간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국제신의를 높이기 위한 개정
법률 제4478호, 1991. 12. 31., 일부개정	당시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기술혁신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정보인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WTO/TRIPS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동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 및 목적의 개정
법률 제5621호, 1998. 12. 31., 일부개정	법률의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 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전직 임직원이 제3 자에게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교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까지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기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사회 상황은 10대 초반의 청소년까지 유흥업소 등에 고용되어 자신의 성(性)을 파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그 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출 청소년 또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청소년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속칭 원조교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부당한 성적 착취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

체적인 차원에서도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사회악으로써,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성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동 법은 이후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 확대,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리 명확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의 처리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기존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차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 까지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피해가 미치게 되어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법의 적용 대상을 아동까지 넓혀 아동 또한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본 법률의 적용대상이 됨을 규정하는 개정이 2009년 이루어졌다. 이러한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본 법률 명칭 역시 기존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법 목적 또한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으로 개정하였다.

표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구분	개정내용
법률 제6261호, 2000. 2. 3., 제정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그리고 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

	<p>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하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p>
<p>법률 제7801호, 2005. 12. 29., 일부개정</p>	<p>지금까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은 삽입행위가 전제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청소년에 대한 비접촉 성적 착취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추가 개정. 이에 삽입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을 높임. 성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나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적절한 조치 없이 단순 훈방되어 가해 청소년에 대한 선도가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한 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에 대하여 선도를 강화</p> <p>청소년에 대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억제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 등록 및 열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p>
<p>법률 제8634호, 2007. 8. 3., 전부개정</p>	<p>친부 등에 의한 성범죄는 지속성을 특성으로 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기에 피해 청소년을 확대 보호하고 보호 강화하는 규정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민사손해배상으로 전락시켜서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로 막고 있기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p> <p>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강화하여, 등록 제도를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열람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p>
<p>법률 제9765호, 2009. 6. 9., 전부개정</p>	<p>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한 규정에서 유사성교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에는 성을 사는 행위만을 규제하였는데,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p>

<p>하서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p> <p>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법의 보호대상이 청소년에서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의 목적도 그에 맞게 변경</p>
--

#### IV. 검토

「발명진흥법」은 제정 당시 발명의 진흥, 특히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나, 이후 개정을 통하여 점차 본래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발명진흥법」에 포함 되어왔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의 장려 외에 발명의 권리화가 포함되고, 산업재산권 영역이 포함되면서 산업재산권을 이용한 사업화 촉진 및 정보화, 그리고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산업재산권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규정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관련된 사항이 「발명진흥법」의 규정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기존의 「발명진흥법」과는 상당히 상이한 실질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은 최초 제정 당시의 법률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 목적 역시 크게 변경되지 않아오에 따라 법률이 규정하는 실질과 범명과 목적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타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법률 명칭과 그 목적 규정을 법의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법률의 본질이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며, 당시 시대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임을 생각해볼 때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 내용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축약적으로 제시하는 법률 명칭과 그 법률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인 목적 규정이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에 관하여 어떻게 「발명진흥법」상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을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생각건대 앞서 살펴본 사례 중에서 현 「발명진흥법」의 변화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내용적으로 완

전히 구분되는 복수의 대상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발명진흥법」이 유사함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명칭의 방식을 참조하여, 「발명진흥법」을 「발명진흥 및 산업재산권활용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목적 규정 역시 이러한 사항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3절 지식재산 기본법과의 조화 문제

#### I. 문제의 소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에 대한 법체계 논란을 가중시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임은 틀림없다.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의 의의를 갖고 있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이 일정한 기준과 방침에 적용을 받는 지위에 속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법 체계를 법체계상 인정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법체계상으로 「발명진흥법」 등에 대해 우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실질적 측면에서 까지 우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현행 「발명진흥법」은 이 문제에 대해 그 규정에서 어떠한 사항도 담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 법률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아울러 양 법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발명진흥법」의 체계를 정비할 때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지식재산 기본법」의 실질적 우월성을 인정하여 「발명진흥법」이 이를 따르게 된다면 「발명진흥법」의 체계 역시 최대한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지식재산 기본법」의 실질적 우월성을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본다면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기본법」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발명진흥법」 자체의 존재 목적만을 고려하여 체계를 정비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발명진흥법」의 법체계에 대한 정비 기준을 살펴볼 때 「지식재산 기본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논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생각한다.

다만, 앞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보았으므로, 본 절에서는 그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어느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대략의 체계정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 발명진흥법과 지식재산 기본법의 관계

### 1. 발명진흥법과 지식재산 기본법 구성의 비교

현행 「발명진흥법」은 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된 것이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으나 최근 개정된 것은 2015. 5. 18. 법률 제13309호(시행 2015. 11. 19.)로서, 총 9장 6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 제2장은 발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장은 발명의 권리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장은 발명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에 관한 사항, 제6장은 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한 사항, 제7장과 제8장은 보칙과 벌칙 규정이다. 이에 관하여 각 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제4조(발명장려 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발명의 날)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발명의 진흥이라는 제목 하에 총 3개 절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2절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발명의 권리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5조(선행기술조사)에서 산업재산권 출원에 따른 심사에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관련 분야의 선행기술 조사에 관한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 등이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하여 회적 약자에 대한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의 근거 및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가 있다.

제4장은 발명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발명에 대한 사업화 지원에 관한 규정,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등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이다. 본 장은 평가

기관 등에 관한 부분 즉,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와 이외에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이 있다. 그리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일환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해서도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40조(세제 지원)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2013년에 신설된 제4장의2에서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규정하고 있다.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제40조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제40조의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제40조의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제40조의5), 협회의 설립·운영(제40조의6)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제40조의7)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심의 및 조정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와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기술공유 촉진을 위한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지식재산권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은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2조(조정부), 제43조(조정 신청 등),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45조(출석의 요구), 제46조(조정 성립 등), 제46조의2(조정 거부 및 중지),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경비보조),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조의 2(산업재산권의 보호),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은 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제53조(사업), 제54조(지도·감독), 제55조(기금의 조성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7장은 보칙으로 제56조에서는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57조에서는 청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8장은 벌칙으로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과태료)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지식재산 기본법」은 5개의 장과 4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 제2장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제3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5장은 보칙

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5개의 조항이 있다.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서는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3조(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 제14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연차보고서) 등 10개의 조항이 있다. 본 장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보호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식재산 법체계를 벗어나 지식재산 인프라의 구축에서 창출, 그리고 보호를 거쳐 활용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의 국가지식재산의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법령의 마련을 위한 내용이다. 본 장은 총 3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에 관한 내용으로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제2절은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절은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내용으로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체계 확립 등),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은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의 조성,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련 규범의 국제화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지식재산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다. 본 장은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제32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칙인 제5장은 위원회 업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유지,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으

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0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비교해보면, 「발명진흥법」은 발명의 진흥과 권리화의 지원 그리고 사업화 촉진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서비스업의 육성을 중요하게 규정하고 하고 있는 반면,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 정책의 계획과 창출 촉진·보호 강화·활용 촉진 및 이를 위한 기반조성 등을 중심으로 체계를 잡고 법을 구성하고 있다.

## 2. 지식재산 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의의

첫째,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 목적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의 적용 대상을 ‘지식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라고 정책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sup>278)</sup>

둘째,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헌장으로서의 이념적 선언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 및 정책에 대한 조정수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총괄 규범인 법적 성격을 갖는다.<sup>279)</sup> 특히 총괄 규범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에 따른 다수 행정기관의 역할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 3. 양 법률 간 관계 검토

「발명진흥법」과 「지식재산 기본법」의 관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 기

278) 김시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2., 21면.

279) 특허청,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재개정방안, 특허청, 2010, 16면.

본법」이 「발명진흥법」에 우월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법체계상의 우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측면에서 우월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비하여 법의 시행일이 앞선다. 기본법의 본질상 그 우월성은 단순히 기본법의 제정 이후 만들어지는 법률에 한할 것은 아니며, 해당 기본법 이전에 만들어진 법률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신법우선의 원칙에 적용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이 「발명진흥법」에 우선하는 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80)</sup>

다만, 「발명진흥법」을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을 위한 대표성있는 법률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발명진흥법」이 발명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산업재산권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적으로는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데 이러한 지원 사업이 주요한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점만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의 대표성있는 집행법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생각한다. 즉,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에 대하여 발명의 진흥 및 산업재산권의 활용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규정을 두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다만, 우월적 관계에 따라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의 이념 및 정책적 방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을 것은 당연히 요구된다.

### III. 다른 법률에서의 정비 사례

우리나라는 최근 기본법의 제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10월 현재 63개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각 분야를 규율하고 있다. 그 중 최근에 제정된 「문화기본법」<sup>281)</su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sup>282)</sup>, 「협동조합 기본법」<sup>283)</sup> 등은 각 분야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개별법들 보다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서 현재 「발명진흥법」과 「지식재산 기본법」의 관계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거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참고하고자 한다.

280) 박정훈,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조」제58권 제12호, 법조협회, 2009, 300면.

281) 법률 제12134호, 2013.12.30., 제정.

282) 법률 제9931호, 2010.1.13., 제정.

283)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

첫째, 「문화기본법」과 그 개별법과의 정비 사례이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 제정되었다. 제정 배경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문화의 위상 강화 및 관련 시책 마련이 필요하였고, 아이TEM 개발 및 사업 시행 중심의 문화정책을 종합화, 체계화하여 국가와 사회 전반의 문화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문화정책 추진 체계도 필요하였으며, 정부 국정 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책 중심의 협의의 ‘문화행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의의 ‘문화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문화기본법을 제정<sup>284)</sup>하여 실효적 정책수단의 근거를 확보하고 문화융성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sup>285)</sup> 당시 사회는 급속한 문화적 변혁기에 있었고, 구체적으로도 문화정책성과 다양성, 문화와 국가경쟁력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등 문화정책 영역이 확장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사회문화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및 법률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므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문화 현실을 반영하여 문화진흥의 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286)</sup>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률과의 체계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우월성을 부여하고 있다.<sup>287)</sup> 이에 문화기본법에 관련된 개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은 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의 날’과 동법의 규정이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는 동법 제10조를 삭제한 바 있다.

284) 본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85) 박영정, 문화 기본법 제정안의 내용 체계와 그 의미,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융성” 토론회 자료집, 2013.

286) 전광렬,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94-95면 참조.

287) 이러한 방식의 우월성 부여는 해당 기본법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타 법에도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단순히 상징적 의미만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개별법과의 정비 사례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에 제정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당시 세계 각국은 경제침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위기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대응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부조직 개편과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국제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표방하게 되었다. 이에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한 것이다.<sup>288)</sup>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존의 환경의 발전과 관련된 법과의 조화가 문제되게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우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사용 의무화’(제12조 제2항),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등(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8까지)에 관련된 조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신설한 바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조항(제12조)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288) 최두선; 김기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이해,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제6권 제2호 (2011. 6.),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13면.

셋째, 「협동조합 기본법」과 그 개별법과의 정비 사례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관련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생산자 또는 소비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며,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2년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인 2012년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해였으며<sup>289)</sup>, 국제 금융위기 시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상화 등으로 경제안정에 기여하여, 윤리경영 및 상생번영 등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 분야가 제한되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내에서도 유연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이와 관련된 8개 개별법<sup>290)</sup>과의 조화가 문제되게 되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우월성을 부여하고 있다.

## IV. 검토

기본법에 법체계의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 기

289) 강현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53면.

290)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본법」이 「발명진흥법」에 실질적 측면에서만 우월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앞서 살펴본 바이다. 이에 「발명진흥법」도 「지식재산 기본법」의 이념과 정책 방향에 일관성을 갖도록 고려하여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양 법률의 목적규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기본법」은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발명진흥법」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교해보면,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을 통한 국민 및 국가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중 ‘경제 발전’을 위한 측면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존재 유형 중, ‘발명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발명진흥법」에서 구체화된 사항을 규정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집행적 성격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타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의 개별법을 기본법에 맞추어 일부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개정의 정도는 기본법이 등장하였다고 하여 그에 전체를 맞추어 새롭게 개별법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 법률의 적용 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하는 선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생각건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나 기본법의 법체계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법도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발명진흥법」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면 분명 「지식재산 기본법」이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우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발명진흥법」 역시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과 의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점이 고려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의 체계정비와 관련하여 일부 논의되던 「지식재산 기본법」의 체계와 동일한 구성을 이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 제4절 발명진흥법 구성내용의 분류기준에 관한 문제

### I. 문제의 소재

「발명진흥법」은 총 9개의 장과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장의 구분은 총칙을 비롯하여, 발명의 진흥, 발명의 권리화 지원, 발명의 사업화 촉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한국발명진흥회, 보칙 및 별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절은 제2장 발명의 진흥에 하위 구성으로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직무발명의 활성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의 가장 작은 구분단위인 조문은 각 장 및 절의 하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각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발명진흥법」의 각 조문 및 장과 절의 구분은 연혁적으로 특징을 갖고 있다. 「발명진흥법」의 잦은 개정과정의 주요한 원인은 「발명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사업 등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체로서 하나의 유기적 체계를 갖는 보통의 법률과는 다소 달리 「발명진흥법」은 각 구성부분이 각자 독립된 역할<sup>291)</sup>을 할 수 있도록 분리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발명진흥법」의 각 구성요소의 모듈화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명진흥법」의 내부적 구분, 즉 장과 절, 그리고 각 조문의 분류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적 중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을 들 수 있다. 제5장은 제41조 내지 제49조의2까지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는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즉 산업재산권의 이용 확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50조의2는 산업재산권의 보호, 제50조의3은 산업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등을 모두 아우르는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설립 관련 규정이다. 그리고 제51조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설립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본 장은 분쟁조정 관련 규정 13개, 산업재산권 이용 관련 규정 1개,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 1개, 이용 및 보호

291) 이는 법률 체계상 별도의 단일한 법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규정이 내용적으로 그 자체로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등을 포괄하는 규정 1개, 연구 인프라 관련 규정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체계는 각 내용이 서로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진흥과 보호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사항을 단일의 장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이들 규정을 단일한 장에 두는 의미가 명확치 않게 되었다고 비판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를 형성하게 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본래 「발명진흥법」의 제정 당시에는 본 장의 내용이 총 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산업재산권 공유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적재산권 연구소에 관한 규정으로 묶어서 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이라는 장으로 한 것이다. 즉, 공통적 맥락을 갖는 조문을 장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조문들을 묶은 장이 제5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한 개정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등 각 조문의 내용이 점차 개정을 통하여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 양적 팽창의 정도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부분에서 매우 크게 나타난 것에 반하여 다른 사항들은 그렇지 못하는 등 변화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다수의 개정 과정에서 장의 구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점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 전혀 관련성이 없는 조문이 끼어들어간 것과 같은 현재의 인상을 주는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발명진흥법」의 제정 이후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본 법의 장과 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외에도 정책적 사항을 법률의 내용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이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역시 「발명진흥법」의 내용구분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즉, 법률상 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과 하위규범으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이 적절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II. 법률내용의 구분기준 검토

법률상 구분이 복잡하고 많은 조문수를 가진 긴 법령에 있어서 내용이 공통되는 여러 개의 조문을 한데 묶어 장(章)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절(節)로 묶어서 구분한다.<sup>292)</sup> 법제처 법제교육포털에 제시되어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

292) 절을 더 세분화할 때에는 관(款), 목(目)의 순으로 구분하며, 민법 및 형법 등 대법전에 있어서는 장의 상위 단계로 편(編)을 설치하기도 한다.

르면, 입법실무상 장으로 구분을 두는 법령 본칙의 조문 수는 통상 30조 이상으로 기준을 삼고 있으며, 장 등의 구분은 그 규정내용의 성질에 따라 기준을 정한다.<sup>293)</sup> 아울러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비록 조문의 수가 적더라도 독립된 장 등으로 두어 법령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장 등의 구분은 본칙에서만 적용하며, 부칙에서는 하지 않는다. 특히 총칙·보칙 및 별칙은 대개 그 용어를 그대로 장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구분은 최근 법령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한다는 관점에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입법실무적으로 이러한 분류를 권장하고 있다.<sup>294)</sup> 이는 현대시대에서 법령정보의 수가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법령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법령 내 각 조문간 관계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어느 법령의 한 두 조문만을 가지고는 복잡해진 사회 및 경제환경에서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게 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그 관계 등을 손쉽게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up>295)</sup>

아울러 정책은 법률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형상을 갖게 되며 양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과정에 있다는 관계상 특징이 있다.<sup>296)</sup> 그런데 정책이 법률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에 담을 내용, 대통령령에 담을 내용, 부령에 담을 내용, 훈령이나 예규 및 고시에 담을 내용으로 총 4가지 단계로 구분된다.<sup>297)</sup>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부분으로서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의 견지에서 국회가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담도록 하여야 한다.<sup>298)</sup> 즉, 중요한 정책의 본질,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부분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된다. 그 외에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항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내부직원들이 지켜야 할 지침, 기준 등은 훈령과 예규로 규정할 수 있다.<sup>299)</sup> 이러한 기준 내에서 정책이 법률의 형태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93) 법제처 법제교육포털 법령입안심사기준 참조.

294) 박윤훈, 법제실무강좌,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295) 고문현, 「법령정보제공 선진화방안연구」, 법제처, 2012, 68면.

296) 류준모,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2012년도 공공기관 법제업무담당자 과정」, 법제처, 2012, 21면.

297) 류준모,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2012년도 공공기관 법제업무담당자 과정」, 법제처, 2012, 22면.

298) 류준모,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2012년도 공공기관 법제업무담당자 과정」, 법제처, 2012, 23면.

299) 류준모,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2012년도 공공기관 법제업무담당자 과정」, 법제처, 2012, 23면.

### Ⅲ. 유사성격 법률의 장절체계

법률의 목적과 성격은 체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 일종의 진흥법으로서 성격을 갖는 「발명진흥법」은 그와 유사한 성격, 즉 유사한 목적을 갖는 법률의 체계와 연관성을 갖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발명진흥법」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체계를 비교해보았다.

「건설기술 진흥법」은 총 8개의 장과 9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목적 및 정의, 건설기술 관련 기본계획 및 중요 정책의 조정, 관련 위원회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인재 육성, 건설공사의 관리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6장은 관련 단체 및 공제조합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7장과 제8장은 각각 보칙과 벌칙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총 7개의 장과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기본계획, 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및 진흥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5장은 관련 기관 및 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보칙과 벌칙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총 7개의 장과 4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자의 신고, 사업의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5장은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보칙과 벌칙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총 6개의 장과 5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2장은 관련 산업의 진흥 계획 및 관련 기술의 진흥, 기반 조성, 지원시책,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3장은 지

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4장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5장과 제6장은 각각 보칙과 벌칙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총 7개의 장과 3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2장부터 제3장까지는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5장은 관련 기관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6장은 간행물의 유통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7장은 벌칙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 Ⅳ. 검토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성 체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계획,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진흥 및 기반조성에 해당하는 장에서는 기본계획 등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 인력양성,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반조성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에 관한 장에서는 관련 기관의 설립 및 재원, 사업, 지도·감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칙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 청문,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비밀 엄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벌칙에 관한 장에서는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발명진흥법」의 기본적인 체계 구성 자체가 이들과 달리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발명진흥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혁적 측면에서 각 조문의 구체적 구성이 상위의 분류와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게 변경되어 왔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거시적 측면에서의 체계개편보다는 다소 미시적 측면에서 체계개편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발명진흥법」에 포함되는 내용이 발명에 관한 것 외에도 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까지 확장되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명칭에도 이를 구분하여 병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발명진흥법」의 형식적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역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례가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발명진흥법」의 각 조문들이 서로 구분되어 모듈화된 특성을

갖는점을 고려할 때, 규율의 성격과 대상이 상이한 조문을 분리하여 발명의 진흥에 관한 규정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체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발명진흥법」의 구체적인 규율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용이하게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정을 집행할 경우에도 여러 부분에 흩어진 조문을 모아서 적용하지 않고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조문들만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예상된다.

아울러 법률의 규정 수준에 대해서도 「발명진흥법」은 상당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책을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내용이 과연 법률상 규정될 사항의 것인지, 혹은 법률상 규정으로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등에 존재함으로써 적절한 근거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형식적 체계에 대하여 거시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도출을 범위로 하고 있는데, 규정수준의 검토는 법률의 각 조문의 실질적 검토가 필연적이다. 또한 이러한 검토는 반드시 해당 규정의 집행 주체와 적절한 논의가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법률 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이러한 점을 간과하는 것도 적절한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다소 광범위한 형태로나마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개편안에서 이를 제시하기로 한다.

## 제5절 분법화 요인에 대한 대응

### I. 문제의 소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은 현재 발명교육 등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법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입법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발명교육 지원법(안)」을 비롯하여,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의 시장 규모와 그 수요를 고려할 때 「발명진흥법」 내 일부 규정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분법이 논의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 등이 논의의 대상이다. 이와 같은 해당 분야의 분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분법이 진행될 시 기존 「발명진흥법」은 법률로서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II. 발명진흥법의 구조적 특징과 분법의 영향

#### 1. 발명진흥법의 구조적 특징

총 8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발명진흥법」은 발명 등에 관한 사업의 근거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구성이 각각의 사업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장 혹은 절로 구분되어 있다. 발명의 교육(인식향상)에 관한 규정이 제2장 제1절에서 기술되고 있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제2장 제2절,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아울러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규정은 제3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규정은 제4장의2에서 기술한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제5장에서,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근거 및 그 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제6장에서 기술하며, 보칙과 벌칙을 각각 제7장, 제8장에서 기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이 그 규정의 세부적 내용에 까지 정확히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 큰 틀에서의 구분에서 조문 단위의 이질적 사항

이 일부 포함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즉, 「발명진흥법」은 각각의 사업 등의 주요 단위를 기준으로 모듈화(modulization)된 형태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그 모듈화된 부분은 「발명진흥법」 내에서 병렬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각 모듈화된 부분 간 법체계상 연관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 2. 분법의 필요성과 기준

정책을 법제화할 당시에는 법률마다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법률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법률이 많아지고 국민과 기업을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관성이 없게 되면 법률의 체계 정당성에 맞지 않게 되고 법률이 복잡화됨에 따라 법률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진다. 따라서 법률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여 법률의 적용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sup>300)</sup>

특히, 단일 법률에 지나치게 방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내용이 복잡하여 오히려 법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하나의 분야라도 내용이나 성질이 다른 경우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다면 오히려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종전에는 단일한 법률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사회가 복잡화, 분업화 되면서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로 발전된 경우<sup>301)</sup>나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sup>302)</sup>, 특정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경우<sup>303)</sup> 등에도 기존의 법률을 분법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sup>304)</sup>

법률을 분법하는 경우에는 분법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 분법 수와 분법 시 내용의 관련성 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성이나 관련성이 있는 내용, 분야, 기능 등으로 분법이 되도록 하고, 법률 간의 관계가 복잡해

300)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분류" 참조(<http://edu.klaw.go.kr/StdInfnfoR.do?astSeq=7&astClsCd=700101>).

301) 소방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소방법」 하나로 규정하던 것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302) 축산업 중 말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하여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였다.

303)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별도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30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분류" 참조(<http://edu.klaw.go.kr/StdInfnfoR.do?astSeq=7&astClsCd=700101>).

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sup>305)</sup> 아울러 분법 시에 지나치게 세분하여 분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법이나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분법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일반법이나 기본법에 골격만 남게 되는 입법이 되지 않도록 실제적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sup>306)</sup>

## 3. 분법의 형태 및 발명진흥법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발명교육 지원법(안)」은 가장 대표적인 「발명진흥법」에서의 분법 논의 대상이다. 「발명교육 지원법(안)」은 기본적으로는 「발명진흥법」의 발명교육에 대한 사항을 기초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지원 확대와 국가적 차원에서 발명교육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현행 「발명진흥법」의 발명 교육에 관한 규정인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와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가 중요한 분법의 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발명교육 지원법(안)」은 부칙 제2조에서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명진흥법」과 관련 규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발명진흥법」 전반에 발명 교육에 관한 규정이 다수 녹아있는 것이 현재 「발명진흥법」 체계의 현실이다. 특히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 촉진을 위한 특허청의 사업을 명시한 「발명진흥법」 제6조<sup>307)</sup>의 내용 중 제5호에서 명시하는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의 사항이 발명 교육에 대한 사항을 분법화 함에 따라 본 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 제53조 제1항<sup>308)</sup>에서 발명교육과 관련된 동조 제

30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분류" 참조(<http://edu.klaw.go.kr/StdInfnfoR.do?astSeq=7&astClsCd=700101>).

306)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분류" 참조(<http://edu.klaw.go.kr/StdInfnfoR.do?astSeq=7&astClsCd=700101>).

307)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08) 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4호의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이 「발명진흥법」의 발명 교육 관련 분법에 대응하여 법체계 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규정도 대표적인 분법화 논의의 대상이다.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하여 제2장 제3절에서 집중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및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발명진흥법」 제2장 제3절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은 관련 분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새로운 법률의 주요한 내용으로 작용될 것이어서 분법 시 「발명진흥법」에서는 삭제될 부분이다. 다만, 제20조의6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규정이며, 제23조 및 제24조는 기존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근거였으나 현재는 동 규정의 역할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 지역의 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적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부가된 규정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발명진흥법」 제2장 제3절의 규정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정보와 정보화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제2조 제7호와 제8호,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장에서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된 ‘정보화전문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에서의 ‘정보화전문기관’이라는 용어 관련 사항 역시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분법 시 「발명진흥법」에서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명진흥법」에서 분법이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인 문제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발명교육 지원법(안)」의 입법 발의 건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동 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발명진흥법」에서 발명 교육에 관하여 근거가 되는 조문을 분리하여 「발명교육 지원법(안)」에 옮겨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법률상 요건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항들은 「발명교육 지원법(안)」에 유사하게 규정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을 두되 「발명진흥법」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분법의 핵심적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으니 분법에 모듈화된 부분을 옮기지만, 그 이외에 법체계상 부수적으로 규정되는 부분은 기존과 유사한 형태로 이를 분법에도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볼 때, 「발명진흥법」에서 특정한 부분이 분법된다고 하더라도 각 규정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모듈화된 부분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그 상호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구조인 「발명진흥법」의 특성상 법체계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Ⅲ. 검토

「발명교육 지원법(안)」의 입법 발의가 실제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논의상으로도 존재하던 「발명진흥법」의 분법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법체계상의 문제로 논의되는 것은 분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분법이 법체계적 정합성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분법으로 인하여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갈라져나가는 사항들로 인하여 「발명진흥법」의 법체계적 정합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발명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는 각기 그 시장으로서의 규모가 확대되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별도의 근거를 갖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분법이라는 논의는 결국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양한 규정 부문이 점차 분법으로 인하여 「발명진흥법」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발명진흥법」 역시 법률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발명진흥법」은 각 규정되는 영역의 내용이 병렬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규정 간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부 규정이 「발명진흥법」에서 이탈하더라도 법체계상 받는 영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즉, 기본적으로 장과 절 단위로 관련 정책 및 제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분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과 절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모듈화된 부분에 속하는 규정이 아니라 신규 제도의 도입 및 정책사업의 확대 및 폐지 등에 의하여 특정의 장과 절의 성격과 다른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sup>309)</sup> 즉 예를 들면, 발명교육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제6조의 처리 문

제와 같이 그 외 조문에 녹아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총칙과 보칙, 벌칙 등의 조항에 관하여는 신중하게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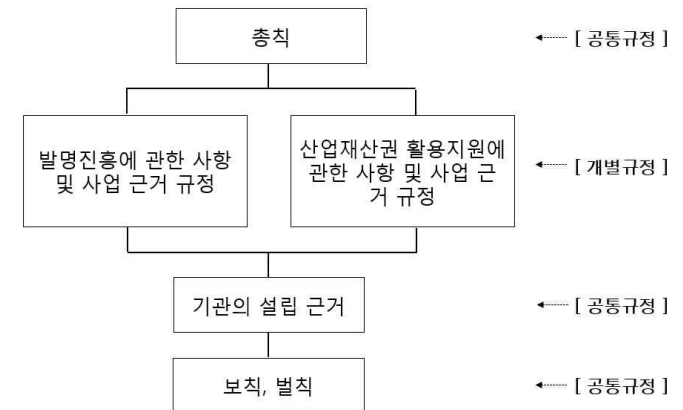
## 제6장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방안

### 제1절 현행 발명진흥법 체계의 개편 방안

#### I. 개요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의 체계 개편은 발명의 진흥을 위한 사항과 그 외 산업재산권 활용 등을 위한 사항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법률의 명칭을 「발명진흥 및 산업재산권활용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규정 등은 발명의 진흥에 관한 사항과 산업재산권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양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총칙, 기관설립, 보칙 및 벌칙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 발명진흥법 개편(안)의 전체 구조



309) 2006년 3월 3일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보지원센터를 관련 정책 사업의 확대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 지역 기업을 위한 특허청 정책 사업의 장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지식재산센터로 명칭 변경 및 사업을 확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즉 「발명진흥 및 산업재산권활용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편(안) 제1장은 총칙으로 본 법의 입법목적은 제1조에서 명시하고, 이때는 기존의 발명진흥법의 목적에서 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조는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규정이며, 제3조 및 제4조는 타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한다. 또한 제5조에서는 발명의 날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한다.

개편(안) 제2장은 발명의 진흥이라는 내용으로 총 3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제1절에서는 발명에 대한 인식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발명종합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에서는 우수 발명의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우수한 발명을 지원함으로써 발명활동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발명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등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하였다. 제3절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종업원 등의 특허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보유 및 공무원에 대한 특칙 등이 명시되도록 하며,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직무발명의 장려가 가능하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개편(안) 제3장은 발명의 진흥 이외에 산업재산권 활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각 내용에 따라 이를 총 5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제1절에서는 산업재산권 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해외산업재산권센터 등 산업재산권 활용 등에 대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에서는 산업재산권의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추진계획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항들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및 제4절에서는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러한 활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계획의 수립, 각각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업전문회사 설립 등의 세부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제5절에서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적으로는 조정의 대상 및 방법, 조정성립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개편(안) 제4장은 현행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법

정확한 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설립 및 사업근거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규정된 각 사업 등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본 법에 특정한 기관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통적 규정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 외 개편(안) 제5장은 보칙으로서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및 세제지원,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6장은 벌칙으로서 벌칙과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 제,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개편(안)의 각 장과 절, 그리고 조문내용의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현행 발명진흥법과 동법 체계 개편안의 구성 비교

현행 발명진흥법 (법률 제13309호, 2015.5.18., 일부개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b>제1장 총칙</b>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발명의 날)	제5조(발명의 날)
<b>제2장 발명의 진흥</b>	<b>제2장 발명의 진흥</b>
<b>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b>	<b>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b>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6조(발명진흥종합계획)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7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9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제11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b>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b>	<b>제2절 우수 발명의 지원</b>
제10조(직무발명)	제13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4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5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6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제17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8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9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20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1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b>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b>	<b>제3절 직무발명의 활성화</b>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직무발명)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제23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제24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25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제26조(승계 여부의 통지)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7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20조의7 삭제 <2013.7.30>	제28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21조 삭제 <2015.5.18.>	제29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22조 삭제 <2015.5.18.>	제30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31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32조(비밀유지의 의무)
<b>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b>	<b>제3장 산업재산권의 활용 지원 등</b>
제25조(선행기술 조사)	<b>제1절 산업재산권 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b>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33조(산업재산권 활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34조(선행기술 조사)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35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36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37조(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38조(산업재산권의 보호사업)
	제39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40조(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41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b>제2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b>
	제4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제44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제45조(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46조(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b>제3절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촉진</b>
	제47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제48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b>제4절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b>
	제50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51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52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53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54조(협회의 설립·운영 등)
	제55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p><b>제5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b></p> <p>제56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p> <p>제5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제58조(조정부)</p> <p>제59조(조정 신청 등)</p> <p>제60조(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p> <p>제61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p> <p>제62조(출석의 요구)</p> <p>제63조(조정 성립 등)</p> <p>제64조(조정 거부 및 중지)</p> <p>제65조(소멸시효의 중단 등)</p> <p>제66조(위원회의 구성 등)</p> <p>제67조(경비 보조)</p> <p>제68조(비밀누설의 금지)</p>
<p><b>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b></p> <p>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p> <p>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p> <p>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p> <p>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p> <p>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p> <p>제33조 삭제 &lt;2009.3.18&gt;</p> <p>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p> <p>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p> <p>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p> <p>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p> <p>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p> <p>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p> <p>제40조(세제 지원)</p>	<p><b>다른 장으로 재구성</b></p>

<p><b>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b></p> <p>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p> <p>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p> <p>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p> <p>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p> <p>제40조의6(협회의 설립·운영 등)</p> <p>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p>	<p><b>다른 장으로 재구성</b></p>
<p><b>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b></p> <p>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p> <p>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제42조(조정부)</p> <p>제43조(조정 신청 등)</p> <p>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p> <p>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p> <p>제45조(출석의 요구)</p> <p>제46조(조정 성립 등)</p> <p>제46조의2(조정 거부 및 중지)</p> <p>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p> <p>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p> <p>제49조(경비 보조)</p> <p>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p> <p>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p> <p>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p> <p>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p> <p>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p>	<p><b>다른 장으로 재구성</b></p>
<p><b>제6장 한국발명진흥회</b></p>	<p><b>제4장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b></p>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제53조(사업) 제54조(지도·감독)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제69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제70조(업무) 제71조(기금의 조성 등) 제72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설립) 제73조(업무) 제74조(지도·감독)
<b>제7장 보칙</b>	<b>제5장 보칙</b>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제57조(청문)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7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제75조(세제 지원)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제77조(청문) 제78조(규제의 재검토)
<b>제8장 벌칙</b>	<b>제6장 벌칙</b>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과태료)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1조(과태료)

## II. 총칙

표 27 발명진흥법 제1장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신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발명의 날)	→ 제5조(발명의 날)

「발명진흥법」 제1장 총칙에서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목적' 및 '발명의 날' 규정

의 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의 신설, 그리고 '발명진흥 종합시책' 및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의 규정을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등 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현행 「발명진흥법」이 발명의 장려,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 및 사업화 촉진, 산업재산의 지원 및 보호 등을 위한 수 많은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 명칭의 변경과 더불어 동법의 목적 규정의 개정이 그에 맞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발명진흥법」 제5조에서 '발명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타 법률의 제개정 사례를 보면 '정부'라는 표현보다는 규정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동조의 경우 '발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주체는 실제 특허청장이지만, '발명의 날'과 같은 기념일을 지정하는 주체는 국가로 보아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동법 제5조에서 '발명의 날' 관련 규정의 주체를 기존의 '정부'에서 '국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기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변리사법」 등 다른 법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발명진흥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는다. 물론 「발명진흥법」에 본 사항을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효력이 「발명진흥법」내에만 미치게 되는 것이며, 타 법과의 외부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는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안) 제3조를 추가하였다.

넷째, 현행 「발명진흥법」은 국가의 지원 시책에 관한 규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책에 따른 국가의 책무가 규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지원, 공무원의 직무발명,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다를 경우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율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확히 규율하는 조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개편(안) 제4조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입법 시 '발명진흥종합시책'과 같이 국가적 시책은 총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장에서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구성은 시책의 내용 및 절차로 한다. 또한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역시 보칙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발명진흥법」에서

발명진흥종합시책에 관한 제3조는 제2장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에 관한 장에서 규율하고,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제4조는 제5장의 ‘보칙’에서 다루도록 그 위치를 이전하였다.

그 외에도 기존 정의에 관한 제2조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용어를 법률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라 하여 시행령에 그 특징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지만, 법체계상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어 이를 법률 수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sup>310)</sup>

### III. 발명의 진흥

#### 1.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표 28 발명진흥법 제2장 제1절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 제6조(발명진흥종합계획)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 제7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 제8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 제9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 제10조(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9조(발명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 제11조(발명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 제12조(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개편(안) 제2장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에서는 발명의 진흥을 위해 기

310)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5.20.

초가 되는 조항인 발명진흥종합계획, 발명의 인식향상과 활동의 촉진, 학생·여성·사회적 약자의 지원, 발명교육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명확하게 직접적인 주체를 명시하는 최근 입법추세에 따라 주체를 ‘정부’라는 표현 보다는 ‘특허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편(안) 제6조의 발명진흥종합계획에 관하여 현행 「발명진흥법」은 총칙에서 이를 규정하면서,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시책 등을 함께 다루고 있으나, 본 개편(안)에서는 제3장과 의 중복을 고려하여 본 조에서의 대상을 산업재산권이 아닌 발명 진흥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입법 시에 일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목적 또는 수립·시행을 위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나, 현행 「발명진흥법」은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는다. 이에 관한 시행 목적 또는 자세한 세부 근거를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타 법률의 제개정 사례를 보면 ‘시책’이라는 표현보다 ‘계획’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개편(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발명진흥종합시책에서 발명진흥종합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그 외 ‘발명의 인식과 활동의 촉진’, ‘학생·여성·사회적 약자의 지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연구노트의 활용 촉진’은 현행 「발명진흥법」에서와 같이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그대로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현행 「발명진흥법」 제6조인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규정에 관하여 그 시행령은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권한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이나 보조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와 달리 위탁대상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본 조의 경우 위탁내용을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sup>311)</sup>

넷째, 현행 「발명진흥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하는 ‘연구노트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취소는 행정청의 최종적인

311)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제수단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령이 별표에서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업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취소사유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sup>312)</sup>

## 2. 우수 발명의 지원

표 29 발명진흥법 제2장 제2절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 제13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4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 제15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 제16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 제17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 제18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 제19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 제20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 제21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개편(안) 제2장 제2절 ‘우수 발명의 지원’은 발명의 진흥을 이끌어내기 위해 발명의 창출 시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현행 「발명진흥법」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에서 포함하고 있던 규정 중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규정인 동법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와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312)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제40조(세계지연) 등은 발명의 진흥과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개편(안)의 본 절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발명진흥법」 제28조의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및 업무범위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을 두었으며, 이때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의 요건과 절차, 사업내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발명진흥법」 제31조의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동법 제29조의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동법 제30조의 평가수수료의 지원에 관하여 개편(안)의 제2장 제2절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편(안) 제13조 내지 제16조의 내용은 현행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제4장에서 평가기관의 등록,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평가수수료의 지원, 지정 취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편(안)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을 지정받은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을 먼저 구성하고, 그 외의 지원에 대한 사항인 평가기관 지원, 평가수수료 지원 등의 규정은 그 뒷부분에 구성하여, 다음에 이어 명시되는 시작품의 제작 지원,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등과 함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묶어서 구성하였다.

개편(안) 제13조 및 제14조의 내용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 이후에는 발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현행 「발명진흥법」 제29조의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시작으로, 발명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일련의 사업순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구성하였다. 이에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에게 지원하는 ‘평가수수료의 지원’, ‘시작품의 제작 지원’,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등의 순으로 하였다.

또한, 우수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을 배치하였으며, 권리화된 발명을 통한 제품화가 사업적 활성화로 이어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와 같은 규정을 함께 구성하였다.

그런데 법률의 위임체계와 관련하여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

개편(안) 제14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31조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취소는 행정청의 최종적인 제수단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한다고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은 별표에서 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업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위임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취소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지정취소의 사유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sup>313)</sup>

개편(안) 제15조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29조는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법 시행령은 ①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②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③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④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⑤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5호의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포괄적 재위임의 우려가 있으며, 재위임에 관한 내용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sup>314)</sup>

개편(안) 제19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27조는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다.”라고 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부령 등 하위 법령에 그대로 재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은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위임체계가 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에 법률에서 명시한 표현인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② 재위임시에도 전부를 재위임할 것이 아니라 특정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sup>315)</sup>

313)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314)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315)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 3. 직무발명의 활성화

표 30 발명진흥법 제2장 제3절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10조(직무발명)	➔ 제22조(직무발명)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 제23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 제24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 제25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 제26조(승계 여부의 통지)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 제27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제28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 제29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30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 제31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 제32조(비밀유지의 의무)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직무발명의 역할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직무발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발명진흥법」은 제2장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이를 제2장 제3절로 편성하였으며, 그 명칭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sup>316)</sup>

다만, 개편(안) 중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에 관한 제23조 제3항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제24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제31조 제5항 상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기존의 ‘정부’에서

316) 직무발명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의 진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구성 또한 2006년에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된 내용이므로 개편(안)에서도 조항의 변동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허청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편(안) 제24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11조의2는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의 경우 지급주체, 대상사업, 용도 및 지급방식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동조에서의 신청 및 지급방식을 제외한 선정기준이나 지원내용은 법률에서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sup>317)</sup>

## IV. 산업재산권의 활용 지원 등

### 1. 산업재산권 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

표 31 발명진흥법 제3장 제1절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33조(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5조(선행기술 조사)	→ 제34조(선행기술 조사)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 제35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 제36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제37조(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 제38조(산업재산권의 보호사업)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 제39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 제40조(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 제41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317)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개편(안) 제3장은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2장과 달리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개편(안) 제3장 제1절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발명진흥법」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재산의 권리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과 산업재산권 활용에 관한 사항을 묶어 구성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현행 「발명진흥법」 제20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개편(안) 제33조로 두어 산업재산권 등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동 조항은 기존에 제2장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태조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규정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의 형태이다. 이에 본 개편(안)에서도 제2장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중 발명진흥종합계획과 함께 구성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발명진흥종합계획은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발명 활동의 진작 및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우수 발명 이전의 알선과 사업화 촉진과 같은 발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 반면에, 본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발명진흥종합계획의 내용을 위한 조사라기보다는 그와 별도로 산업재산권 등과 관련한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어서 양자를 분리하여 본 절에서 규정하도록 배치하였다.

둘째, 산업재산권 출원 및 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개편(안) 제34조에서 선행기술 조사 규정을 두었다. 이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에서 규정하던 것이었으나, 본 조의 내용이 발명을 권리화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조사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업무로 하도록 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이의 등록말소에 관한 규정을 배치하였다. 이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2장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서 규정하던 것이었으나, 해당 조문의 내용이 산업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등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이를 본 절에 배치하였다.

셋째, 개편(안) 제37조에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개편(안) 제39조에서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배치하여, 공익변리사로 구성된 특허상담센터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담과 같은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허관리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여 특허관리 능력을 높이고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현행 「발명진흥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던, 개편(안) 제38조의 산업재산권 보호사업, 개편(안) 제40조 해외산업재산권센터 및 개편(안) 제41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본 절에 포함하였다. 특히 개편(안) 제38조의 산업재산권 보호사업 규정은 기존에 산업재산권의 보호라는 명칭으로 현행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에서 존재하던 것이었으나, 본 규정이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산업재산권의 보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기존의 명칭이 내용에 대한 혼동을 주던 것을 수정하여 조문의 명칭을 산업재산권의 ‘보호사업’으로 변경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편(안) 제40조의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와 이의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용자 등이 다른 사용자 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법률의 위임체계와 관련하여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

개편(안) 제37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26조의2는 상담센터의 업무를 특정함에 있어서 시행령에서 이를 일부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제3항<sup>318)</sup>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존재하지만, 동조 제1항 및 제2항<sup>319)</sup>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법률에 적절한

318) 제9조의4(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생략)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319) 제9조의4(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위임근거를 마련하거나 동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sup>320)</sup>

개편(안) 제38조 ‘산업재산권의 보호사업’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50조의2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체계상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보호사업의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sup>321)</sup>

아울러, 각 규정에서 그 주체를 기존의 ‘정부’에서 ‘특허청장’으로 변경하여 그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표 32 발명진흥법 제3장 제2절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 제4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 제43조(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 제44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 제45조(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 제46조(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개편(안) 제3장 제2절은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적 조치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발명진흥법」에서도 본 사항을 독자적인 절로 구성하고 있었기 때

2. 제1호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생략)

320)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321)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문에 개편(안) 역시 이를 반영하여 동일한 구성을 유지하였다. 다만, 개편(안)의 본질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상이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20조의6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동법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동법 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규정은 개편(안)의 다른 절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sup>322)</sup>

법률의 위임체계와 관련하여서, 개편(안) 제44조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9조의2 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취소는 행정청의 최종적인 제재수단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한다고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은 별표에서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업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위임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취소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지정취소의 사유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sup>323)</sup>

한편,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에 관한 개편(안) 제44조 제5항,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에 관한 동법 제45조,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에 관한 동법 제46조에서 기존의 규정은 각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이유에 따라 이를 기존의 ‘정부’에서 ‘특허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촉진

표 33 발명진흥법 제3장 제3절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제47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322) 이에 본 개편(안) 제3장 제1절에서 이들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323)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 제48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개편(안) 제3장 제3절은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편(안) 제47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업재산권의 실시 및 사용권 허락의 알선,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개편(안) 제48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둬으로써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법률의 위임체계와 관련하여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

개편(안) 제47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34조는 본 알선센터의 사업범위를 「발명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발명진흥법」이 출연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동법 시행령에서는 출연금의 사용을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 보급과 산업재산권 알선업무에 관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출연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라면 시행령보다는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sup>324)</sup>

개편(안) 제49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37조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취소는 행정청의 최종적인 제재수단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한다고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은 별표에서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업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지정

324)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위임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취소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지정취소의 사유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sup>325)</sup>

#### 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표 34 발명진흥법 제3장 제4절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제50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 제51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 제52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 제53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6(협회의 설립·운영 등)	→ 제54조(협회의 설립·운영 등)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 제55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개편(안) 제3장 제4절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는 수집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며, 그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4장의2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개편(안)에서도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다만, 개편(안) 제50조에 대하여 현행 「발명진흥법」은 그 명칭을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의 타 규정과의 표기상 균형을 위하

325)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여<sup>326)</sup> 개편(안)에서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시책의 수립 등’으로 변경하였다.

개편(안) 제53조에서의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앞서 개편(안) 제33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개편(안) 제50조의 육성시책 부분과 함께 본 절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법률의 위임체계와 관련하여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

개편(안) 제50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시책의 수립 등’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40조의2는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시책에는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②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③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④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체계상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sup>327)</sup>

개편(안) 제52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40조의4는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②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③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④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한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이나 보조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와 달리 위탁대상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본 조의 경우 위탁내용을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sup>328)</sup>

326) 현행 「발명진흥법」 제20조에서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기가 그 내용을 상대적으로 충실히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327)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328)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 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표 35 발명진흥법 제3장 제5절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제56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5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2조(조정부)	→ 제58조(조정부)
제43조(조정 신청 등)	→ 제59조(조정 신청 등)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제60조(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제61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45조(출석의 요구)	→ 제62조(출석의 요구)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 제63조(조정의 성립 등)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6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 제65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6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경비 보조)	→ 제67조(경비 보조)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 제68조(비밀누설의 금지)

개편(안) 제3장 제5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본 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제도를 운영 및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발명진흥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제5장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이라는 명칭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발명진흥법」의 관련 장은 연혁적 이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구성이 본래의 의도

와 상당히 달라졌음에도 해당 장에 대한 구성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개편(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구성하고, 현행 규정에서 함께 포함되어 있던 ‘산업재산권의 보호’, ‘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의 규정은 다른 장 혹은 절에서 규정하도록 그 위치를 이전하였다. 아울러 본 절의 명칭을 기존의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본 절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편(안) 제67조 경비 보조 조항에서 경비를 보조해주는 주체를 기존의 ‘정부’에서 ‘국가’으로 변경하여 그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의 위임체계와 관련하여, 개편(안) 제56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하는 현행 「발명진흥법」 제41조에서 특별한 위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은 제20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조항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령의 사항을 법률로 이동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법률 차원에서 적절한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sup>329)</sup>

## V.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표 36 발명진흥법 제4장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 제69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제53조(사업)	→ 제70조(업무)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 제71조(기금의 조성 등)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제72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설립)
[신설]	→ 제73조(업무)
제54조(지도·감독)	→ 제74조(지도·감독)

329)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개편(안) 제4장은 현행 「발명진흥법」에서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에 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현행 「발명진흥법」에서는 연혁적 또는 법률 구조적 이유로 각 기관간 법체계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개선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개편(안) 제69조 내지 제71조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개편(안) 제72조 및 제73조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개편(안) 제74조에서 양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는 현행 「발명진흥법」과 동일한 구성과 내용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개편(안) 제70조에서 기존 ‘사업’으로 되어 있던 조문 명칭을 「발명진흥법」 개편(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업무’로 변경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관하여는 현행 「발명진흥법」에서 설립근거와 그 업무를 함께 명시하고 있는 것을 분리하여 양 기관의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였다.<sup>330)</sup> 한편, 규정 적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양 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아울러 개편(안) 제70조 제3항, 제72조 제1항 및 제4항에서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부’에서 ‘특허청장’으로 이를 변경하였다.

## VI. 보칙

표 37 발명진흥법 제5장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 제7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제40조(세제 지원)	→ 제75조(세제 지원)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제57조(청문)	→ 제77조(청문)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78조(규제의 재검토)

330)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개편(안) 제5장은 보칙으로서 입법론적으로 법률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본적으로는 현행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의 위임, 청문, 규제의 재검토 등의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현행 「발명진흥법」 제1장 총칙규정에서 규정하던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의 사항은 사실 보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이 그러하듯이 입법론적으로 적절할 것이어서 개편(안)에서는 이를 보칙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본 조항에서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선언적 사항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조치의 정당성을 지지한다.

한편, 개편(안)은 현행 「발명진흥법」 제40조 ‘세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칙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발명의 진흥이나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행 「발명진흥법」과 같이 발명의 사업화 촉진에 대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으나, 타 법률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칙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의 위임체계와 관련하여서, 개편(안) 제74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은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의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주체, 대상사업, 용도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법률에 흡수시키고 지급방식에 관한 동법 시행령 제3조 ‘보조금의 지급신청’의 내용만 시행령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31)</sup> 또한, 개편(안)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위탁대상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경우 권한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이나 보조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와 달리 위탁대상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본 조의 경우 위탁내용을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sup>332)</sup>

## VII. 벌칙

331)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332)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 관련 제5차 전문가 회의” 내용 발췌, 2015.10.26.

표 38 발명진흥법 제6장 체계의 개편(안)

현행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체계 개편(안)
제58조(벌칙)	→ 제79조(벌칙)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과태료)	→ 제81조(과태료)

개편(안) 제6장은 벌칙으로서, 현행 「발명진흥법」의 구성을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 제2절 분법화에 대한 대응 방안

### I. 대응의 기본방향

앞서 제5장 제5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발명진흥법의 주요 내용 중 발명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입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분법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 발명진흥법의 입법 목적 및 연혁, 법체계의 정합성 등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발명교육 지원법(안)」과 같은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분법이 진행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발명진흥법」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와 분법에 따른 개정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발명진흥법」은 각각의 사업 등의 주요 단위를 기준으로 모듈화(module化)된 형태로 구조를 이루고 있어, 그 모듈화된 부분은 「발명진흥법」 내에서 병렬적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모듈화된 부분 간 법체계상 연관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을 구성하는 내용 중 일부 규정이 「발명진흥법」에서 이탈하더라도 법체계상 받는 영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개편(안)을 기반으로, 제4장 제1절 및 제2절, 제5장 제5절에서의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II. 발명 교육 관련 분법 대응방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발명교육 지원법(안)」은 기본적으로는 현행 「발명진흥법」의 발명 교육에 관한 규정인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와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가 중요한 분법의 대상으로, 부칙 제2조에서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발명진흥법」과 관련 규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발명진흥법」 제7조와 제9조 이외에도 제6조 제5호<sup>333)</sup>에서 명시하는 “발명

333) 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의 사항이 발명 교육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 제53조 제1항<sup>334</sup>에서 발명교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본법의 핵심적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지만, 그 이외에 법체계상 부수적으로 규정되는 부분은 기존과 유사한 형태로 이를 분법에도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발명진흥법」에 그대로 두기로 한다.

즉, 발명 교육과 관련된 법률인 「발명교육 지원법(안)」이 입법될 경우 이를 개편(안)에 적용하면 제2장 제1절에서 제8조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와 제11조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을 삭제하여야 한다.

표 39 개편(안)에서 발명 교육 분법에 따른 대응

개편(안)	발명 교육 분법에 따른 대응
제6조(발명진흥종합계획)	➡ 제6조(발명진흥종합계획)
제7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 제7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 삭제
제9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 제9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10조(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 제10조(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11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 삭제
제12조(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 제12조(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34) 제53조 (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Ⅲ.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분법 대응방안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규정도 대표적인 분법화 논의의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할 경우,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의 관련 조문과 제3장 제2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구성하고 있는 조항, 제5장 보칙과 제6장 벌칙에 관한 장에서의 관련 조문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발명진흥법」 제2장 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제20조의6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규정이며, 제23조 및 제24조는 기존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근거였으나 현재는 동 규정의 역할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 지역의 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적 장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부가된 규정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규정이 분법화되더라도 「발명진흥법」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즉, 제2조 정의 조항에서의 관련 조문인 제7호 산업재산권 정보와 제8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조문은 「발명진흥법」에서 삭제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의 제공에 관한 정책 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제3장 제2절은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므로,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분법이 이루어질 경우 「발명진흥법」에서 삭제한다. 또한,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장에서 산업재산권 정보와 관련된 ‘정보화전문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제77조, 제78조, 제81조에서의 ‘정보화전문기관’이라는 단어를 삭제한다.

표 40 개편(안)에서 산업재산권 정보화 분법에 따른 대응

개편(안)	산업재산권 정보화 분법에 따른 대응
제2조(정의)	➡ 제7호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제8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대한 정의 삭제
제4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 삭제
제43조(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 삭제
제44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 삭제

제45조(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 삭제
제46조(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 삭제
제77조(권한의 위임 등)	➡ 제2항에서 ‘정보화전문기관’ 삭제
제78조(청문)	➡ 제4호 삭제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항에서 ‘정보화전문기관’ 삭제

## 제7장 결론

흔히 「발명진흥법」의 잦은 개정을 현재 「발명진흥법」이 법체계적 문제를 갖고 있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나, 그 자체보다는 개정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의 근거가 들어갈 것인지 등과 같이 내용적인 관점에서 주로 고민을 할 뿐 법체계에 대한 고려를 깊이 하지 못하였던 것이 더욱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발명진흥법」을 둘러싼 최근 일련의 환경변화는 표면적으로는 크게 논의되지 않던 법체계에 대한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이끌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여러 환경변화의 대두는 중국에는 「발명진흥법」이 법으로서의 존재이유에 대한 재정립 뿐만 아니라 하나의 법률로서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히 발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에서 벗어나 이를 산업재산권화하고 또한 산업적 활용성을 높여 가치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발명진흥법」이 포괄하여야 하는 현실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을 정비한다는 것은 외적인 체계의 정비 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다. 외적인 법체계의 정합성 역시 중요하지만 그 내적인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의 정비 역시 하나의 법률이 적절하게 기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발명진흥법」 정비를 위한 연구의 시작으로 우선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적인 영역에 대한 정비를 연구 범위로 하고 있다. 이에 기본적으로는 주요 규정들의 분법화 현상에 대응하여 「발명진흥법」이 어떻게 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인지 및 기존에 다소 혼잡하게 구성된 현행 「발명진흥법」의 각 규정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인지를 중심으로 고민하였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존의 규정들을 본 연구의 범위 외에 있는 각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 분석 및 판단의 선행 없이 완전한 재창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 판단하여, 기존의 규정들의 재구성 및 일부의 경우 위임의 적절성 등을 판단<sup>335)</sup>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현행 「발명진흥법」의 실질을 유지하며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법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체계의 정합성 이외에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각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갖는 형식상의 한계이다. 이에 궁극적으로 「발명진흥법」의 정비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법에 구성되어 있

335) 위임입법 문제에 관하여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는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및 학계 뿐 아니라 각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법률 정비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현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고문현, 「법령정보제공 선진화방안연구」, 법제처, 2012
-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발명진흥법안 소관위 회의록」,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1994
-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발명진흥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1994
- 권대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2010
- 권대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2009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김두선, 「선진국 발명교육 사례의 연구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한국학교 발명협회, 2002
- 김승환, 「입법학에 관한 연구 -입법의 주체·원칙·기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김시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 김시열,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발명진흥법의 조문별 해설서 작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김홍석,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정립 및 육성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3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저작권 백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 박노형, 「유럽연합의 대체적분쟁해결(ADR)제도에 대한 연구」, 법제처, 2008
- 박영도, 「건설기술 관련 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관리법령 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박영도,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 박영도(역),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제도 -스위스의 이론과 실무」, 한국법제연구원, 2005
- 박환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2013

발명진흥회, 「2014년 사업실적보고서」, 발명진흥회, 2015

서 경, 「지식재산 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

서해애, 「공교육차원의 발명영재교육 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2

손경환,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방안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

송영식·이상정·이대희·김병일·박영규·신재호·황중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신지연, 「지식재산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안병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제처, 2010

양승우, 「과학기술 법령체계 현황 및 개편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엄부영, 「차세대 창의발명교육 모델구축 연구」, 한국지식재연구원, 2010

오승택, 「글로벌 IP 이러닝 센터 설립을 통한 IP 교육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2010

이길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제고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이병욱, 「창의발명인재 육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특허청, 2012

이상희,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제처, 2009

이성상,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연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2

이영희, 「법사회학」, 법문사, 2003

임병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검토보고」, 국토해양위원회, 2012

임중훈·박수철·임송학·박장호,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0

전광렬,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정성춘,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지식경제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2011

천호선, 「출판및인쇄진흥법 검토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2001

최민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업무 해설서」, 특허청, 2004

특허청,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제·개정방안」, 특허청, 2010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2012

하홍준,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하홍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허청, 2011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5 정기총회 회의자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5

한국특허정보원, 「KIPI 10년사」, 한국특허정보원, 2005

한기인, 「중소기업의 R&D인력 보상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9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200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허태수, 「건물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토해양위원회, 2013

강현구, “지식 서비스 산업 미래육성전략”, 주간기술동향, 1500호, 2011

김상찬, “일본의 ADR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2006

김상찬·이언화, “지적재산권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법학연구, 제47호, 2012

류준모,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2012년도 공공기관 법제업무담당자 과정」, 2012

박영도, “목적규정의 입법학적 고찰”, 법제논단, 2014

박영정, “문화 기본법 제정안의 내용 체계와 그 의미”,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융성 토론회 자료집」, 2013

박정훈,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조, 제58권 제12호, 2009

안건형, “지식재산 관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전문가 좌담회)”, 지식재산정책, 제14권, 2013

양동수,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입법쟁점”,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 서울 공청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2014

오세혁,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세창출판사, 2013

유시창, “한국에서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방안”, 경희 법학, 제47권 제4호, 2012

이동원·김재정·정방철·이태익·조동호, “미래 지식서비스 개요 및 발전방향”, 정보 과학회지, 제27권 제7호, 2009

이성상·한유진,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ISSUE PAPER, 2011-15, 2011

이은경,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여성정책포럼, Vol.04, 2003

임정민,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향”,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년 4월호, 2014

임중수, “입법원칙과 규범통제”, 법률행정논총, 제21집 제1호, 2001

전원배, “법률안의 입안원칙”, 국회보, 411호, 2001

정병호,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재판외분쟁해결제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명특허, 2000

최두선·김기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이해”,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제6권 제2호, 2011

하홍준, “지식재산 관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전문가 좌담회)”, 지식재산정책, 제14권, 2013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2006

홍준형,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상)”, 고시연구, 제24권, 1997

황도연, “보충성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 고시연구, 1995

菊井康郎, 「基本法の法制上の位置づけ」, 法律時報, 1973

長谷川正安, 「憲法體系と基本法」, 法律時報, 1973

Blessing, Marc, “Arbitr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12 No. 2 (1996)

David Switzer,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Georgetown University* (2003)

Rüdiger Breur, “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 durch Programm und Plangesetze”, *DVBL* (1970)

[붙임1] 발명진흥법 (법률 제13309호, 2015.5.18., 일부개정)

## 발명진흥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 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

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업”이라 한다)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제2장 발명의 진흥

###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과 생활화를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발명교육”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기술개발 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 지원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5.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한 교육
3.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 연구노트의 시스템 구축 지원
4.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와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 2의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3.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
- 4.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 ③ 특허청장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정보화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정부는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질 등을 말한다)가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

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7 삭제

## 제21조 삭제

## 제22조 삭제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특허청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특허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들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발명평가 기법의 연구
3. 발명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 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다.

- ②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5.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정부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④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제40조(세계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협회의 설립·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3조(조정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출원인
2. 권리자
3. 실시권자
4. 사용권자
5. 직무발명자
6.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보유한 자
7.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5조(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조정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2(조정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통계·수요 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4. 정부·국내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특허청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지도·감독)** 특허청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 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辦理)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장 보칙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 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4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015년 1월 1일

##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

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삭제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상담(商談)·자문·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통계업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허청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 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중앙행정기관(특허청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2. 발명교육센터의 설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5. 그 밖의 행정 지원
- ② 삭제
- ③ 삭제

**제6조의2(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 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의3(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발명교육을 받은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6조의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노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추는 것
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을 갖추는 것

②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6조의5(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사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심의·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허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

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3.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5(자문위원의 파견)**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신청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제한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한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8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0조의3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제공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제공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장비,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정보제공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의4(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5(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 현황 명세서
- ②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6(특허기술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인력 및 시설장비 명세서
- ②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①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4(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2. 제1호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제9조의5(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의6(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1. 한국발명진흥회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제9조의7(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허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8(업무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특허기술정보센터와 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법 제21조제8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았으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 도입비 등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특허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다.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3. 삭제

- ③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제13조(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 ②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 ③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사업 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진단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 여부
3.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여부
4. 삭제

③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육성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춘 것
2.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업무공간을 갖춘 것
4.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춘 것

②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전용 업무공간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7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조사: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

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 2. 수시조사: 특허청장이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 ②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매출액,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요·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 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7(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6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조정절차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

부”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의2(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삭제

**제28조(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춘 것
  2.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산업재산권 보호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춘 것
- ②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 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②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의4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업무
2.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4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6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2015년 1월 1일
4. 제8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8조의5 및 별표 3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요건 및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8조의6 및 별표 4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9조의3 및 별표 6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12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9. 제14조 및 별표 7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10. 제19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11. 제19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19조의4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3. 제19조의5 및 별표 9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14. 제28조에 따른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5. 제28조의2 및 별표 10에 따른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16. 제30조 및 별표 11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